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마크 롤랜즈(Mark Rowlands)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류 기 련

마크 롤랜즈(Mark Rowlands)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지도교수 김 형 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류 기 련

류기련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김 병 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형 렬 _____ (인)

위 원 _____ 박 성 춘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롤랜즈(Mark Rowlands)가 계약론을 바탕으로 동물권을 주장하는 논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논증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롤랜즈의 동물윤리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저서,『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제시된 동물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롤랜즈의 계약론적 논증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롤랜즈는 근본적 도덕원리인 '평등'에 근거한 계약론을 지향한다. 평등의 의미를 '응분(desert)'으로 해석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계약장치를 마련한다. 따라서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을 도입하는 칸트식 계약론은 롤랜즈의 주장에 근간이 된다. 둘째, 논리적 모순 없이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 롤랜즈는 편견을 발견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점이 가지는 자동적 사고에 유의하고, 익숙한 관행을 반성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롤랜즈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존재하는 편견을 수정하여 새로운 관점을 구안한다. 셋째, 롤랜즈는 계약론에서 합리적 목적을 제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에게도 도덕적 행위를 제공한다. 즉,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s)와 도덕적 피동자(moral patients)의 개념을 구분하여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한다.

이상의 논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롤랜즈의 논변이 시사하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첫째, 도덕적 공동체를 확장한다. 비이성적 존재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제공해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움을 상호교환하는 타산적 동기의 행동을 도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공고히 하여, 계약론적 윤리설의 한계를 극복한다. 둘째, 익숙한 관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성찰하는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동시에, 도덕적 반성의 과정을 간소화한 장치를 통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

요컨대 롤랜즈의 주장은 동물이 의식을 가지는 정신적 주체이므로 일반 자연과 달리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을 정의의 대상으로 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랜즈의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동물 관련 내용은 인간중심적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 동물을 도덕적 공동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에서 제시되는 동물을 향한 도덕은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특히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단순하게 나열하여 논쟁적 주제의 특성을 교육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를 도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도덕 교과에서 '공평한 입장'을 활용한다. '공평한 입장'은 반성적 검토에 의해 타당성을 확보한 관점이다. 또 편견이 삭제되도록 강제한 판단의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성찰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으며, 편견 없이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아직 도덕적 판단이 미숙한 학습자에게 '공평한 입장'은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외계인의 침공' 사고 실험을 활용하는 논증을 구성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발달 수준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편견을 삭제하는 논증을 직접 구성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학습자의 논증구성을 돕기 위해 상상적 장치를 사고실험으로 마련한다.

셋째,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동물에 대한 대우방식'을 주제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윤리와 사상은 여러 가지 윤리 이론을 다루고 있으므로, 각 이론에서 동물에 대해 제시하는 관점을 조망하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채식은 각 윤리이론이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논쟁적 쟁점이다. 이론 간의 논쟁적 대립을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공리주의적, 권리론적, 덕윤리적 관점에 더하여 계약론적 관점을 포함시키면서 논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계약론이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에서 배제하는 기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진보적 태도는 도덕교육이 지향해야할 태도이다.

* 학번: 2018-24535
* 주요 용어: 롤랜즈, 계약론, 공평한 입장, 동물권, 평등, 윤리교육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문제 ····· 6

1. 연구의 구성 ····· 6

2. 연구 문제 ····· 11

제 2 장 동물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 ····· 12

제 1 절 동물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 13

제 2 절 동물윤리에 대한 권리론적 관점 ····· 17

제 3 절 동물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관점 ····· 23

제 3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 ····· 26

제 1 절 동물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의 한계 ····· 28

1.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 ····· 29

2. 권리론적 관점의 한계 ····· 32

3. 덕윤리적 관점의 한계 ····· 34

제 2 절 계약론과 도덕적 지위 ····· 37

1.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의 차이점 ····· 40

2. 동등한 도덕적 고려와 존중 ····· 49

제 3 절 계약론적 동물권 옹호 ····· 57

1.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직관적 평등논변과 사회계약논변 ····· 60

2. 원초적 입장의 확장으로서의 공평한 입장 ····· 69

제 4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에 대한 평가 ····· 79
제 1 절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의의 ····· 80
1. 주체성의 재해석과 도덕적 정의의 범위 확장 ····· 81
2. 롤스 계약론의 인간중심적 편견 탈피 ····· 86
3.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확립 ····· 93
제 2 절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한계 ····· 99
1. 도덕적 배려의 범위 제한 ····· 100
2. 계약의 안정성 약화 ····· 112
3. 상호성의 생략 ····· 119

제 5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 124
제 1 절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 126
1. 도덕적 공동체 개념의 확대 ····· 126
2. 반성적 검토를 통한 도덕적 성찰 및 실천 성향 함양 ····· 131
제 2 절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 ····· 134
1.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동물관련 내용의 실태 ····· 135
2.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의 실제 ····· 153

제 6 장 결론 ····· 175

참 고 문 헌 ····· 179

Abstract ····· 18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마크 롤랜즈(Mark Rowlands)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동물윤리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과 롤랜즈의 주장을 비교하여, 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동물권 논의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찾는다. 다음으로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이 도덕과 교육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과 교감하고, 동시에 동물을 이용하며 살아왔다. 동물과의 관계 혹은 동물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고민은 과거부터 있었다. 최근에 동물을 애호하는 것과 동물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철학적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롤린(Bernard E. Rollin)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의생명과학과 공장식 사육의 발전이 고의적인 동물 학대 행위보다 동물에게 더 큰 규모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에 의해 불가피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민감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포함된 지식인들이 설득력 있는 동물에 관한 새로운 윤리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Armstrong S, Botzler R., 2003; 유동미, 모효정, 2014: 333에서 재인용).

동물 윤리 이론은 1970년대에 피터싱어(Peter Singer)가 『동물해방』(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에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되었고, 톰 리건(Tom Regan)이『The case for animal rights』(2004)에서 동물의 도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물 윤리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을 윤리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전통적 관점과 동물윤리의 대립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토대의 동물복지론(animal

welfarism)과 의무론적 토대의 동물권(Animal rights)논의 역시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하며 얻는 경제적 효과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상황은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한다는 신념과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에 대한 무감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과도기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2015)에 따르면, 국내 동물보호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응답 비율이 71.7%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내 동물보호 수준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우선 필요한 부분이 '동물 학대 시 강력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상 동물 보호 교육 추가'라는 응답 비율이 16.7% 이었다. 이는 동물에 대한 대우를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행위에 강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해석된다. 현재 동물에 대한 교육은 '동물보호교육'의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적 시도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동물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부응하여, 동물 문제에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중 하나인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일상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

---

1) 동물윤리는 동물에 대한 윤리를 이른다. 동물을 도덕적 대상으로 보고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논의이다. 기존 패러다임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면서 동물을 도덕적 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동물윤리 이론은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한 즉, 도덕적 대우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증하는데 핵심이 있다. 대표적인 동물윤리 이론으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이 있다. 동물복지론에 따르면 동물은 쾌고감수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동물의 생활여건 개선을 요구한다. 반면, 동물권리론은 동물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로 인해 동물은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관습에 대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한다. 두 가지 입장은 구체적인 동물에 대한 대우방식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각 입장에 대한 설명은 본고 제2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에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동물윤리 관련 논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도덕적 민감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도덕적으로 탐구한 결과를 다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순환 구조의 도덕교육에 적합한 주제이다.

또한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또 다른 핵심역량으로는 '도덕적 사고능력'이 있다. 도덕적 사고 능력은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동물윤리 관련 논의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도덕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기에 적합한 주제이다. 다양한 철학 논변의 대립과 논쟁은 도덕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학 고유의 학문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동물윤리 논쟁은 도덕 교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현행 도덕교과는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의 대립 혹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견해와 리건의 권리론적 견해의 대립을 다루는 방식으로 동물윤리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킴리카(Will Kymlicka)는『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2011)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기존 동물권 논의가 싱어와 리건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협소한 논의에 한정되고 형이상학적 논의에만 매몰되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윤리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Will Kymlicka, 2011; 목광수, 2013: 175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마크 롤랜즈(Mark Rowlands)는『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2009)에서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 리건의 권리론적 접근만으로 동물권을 옹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윤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윤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도덕교육에서도 동물윤리에 대한 다각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 간의 대립을 검토하면서 윤리적 식견을 넓히고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덕적 사고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nimal Rights: All That Matters』(Rowlands, 2013)에서 드러난 롤

랜즈의 문제의식은 동물의 중요한 이익과 인간의 사소한 이익이 충돌할 때 인간의 사소한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다른 대우를 하려면 동물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으로 다른 대우를 제공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함부로 대우하는 인간의 관습적 사례를 비판한다.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에 대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잘 드러난 저작은 『Animal Right: Moral Theory and Practice』(Rowlands, 2009)이다. 이 저작에서 롤랜즈는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이론 중 계약론이 동물의 도덕적 권리 소유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특히 계약론이 적절히 이해된다면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한다. 그는 롤스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otion)'을 제안할 때 간과한 부분이 '생물학적 종(species)'이라고 주장한다. '생물학적 종'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속성으로 인해 상을 받거나 벌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직관적 평등논변으로서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 내포하는 평등에 대한 해석이다. 따라서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을 '공평한 입장(impartial position)'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롤랜즈가 제시한 '공평한 입장'은 직관적 사고가 갖는 무의식적 편향성을 검토하는 장치이다.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직관적 사고가 '성급한 어림짐작(heuristics)의 경향성', '편견', '확증편향'에 빠지게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이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Daniel Kahneman, 2018; 정창우, 2019: 10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정창우(2019)는 자기 사고의 직관적, 무의식적 편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성찰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 사고의 편향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성찰모드를 활용하여 인지적 편향을 예방해야 한다.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은 무지의 베일 뒤에 '생물학적 종(species)'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실제 생물학적 종 때문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지적 편향을 제거한다. 공평한 입장

은 인간이 아닌 상황에서 인간이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이 옳은지 성찰하게 하기 때문에 동물윤리 문제에 대해 더욱 타당한 판단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관점은 동물을 윤리적 논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칸트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것 역시, 동물에게 가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즉, 칸트를 비롯한 전통적 윤리학의 관심은 대체로 인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차별에 반대하여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토마스 테일러(Thomas Taylor)는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면 동물에게도 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의 권리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다(Thomas Taylor, 1792; Peter 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27-28에서 재인용). 동물에게 평등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동물의 권리주장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 혹은 동물 권리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도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만,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만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도덕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신념을 당연시하는 것은 비판적, 반성적 검토 없이 몸에 베인 대로 행동하려는 자동적 사고에 해당한다. 자동적 사고가 항상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도덕적 탐구역량과 윤리적 성찰역량을 기르고자하는 도덕교육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확증편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후설은 자신의 인식에 괄호를 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 전체를 총체적이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철학적 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정창우, 2019: 12). 롤랜즈가 주장한대로 생물학적 종(species)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 괄호를 친 '공평한 입장'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고하는 철학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인지적 편향의 개입을 막아 비판적 성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도덕적 공동체를 동물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를 제시해야한다. 도덕적 공동체를 인간에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과 식물과 생태계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거이다. 또한 호혜성이 제거된 계약이 개개인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계약이 개인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계약을 지키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계약은 안정화된다. 그러나 자기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계약론을 발견적 도구로 삼는 이론을 계약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 관점은 계약자 간 상호성이 전제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약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아내려 한다. 학생들이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고 반성적 판단을 도출하여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따라서 연구자는 네 가지 세부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첫째, 동물윤리에 대한 윤리학 논의에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 이해한다. 두 번째, 롤랜즈의 계약론적 주장이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논변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동물윤리 이론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이 가지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바탕으로 롤랜즈의 이론을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문제

1.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기존의 동물윤리 이론들을 살펴보고자한다. 롤랜즈의 이

론을 검토하기 전에, 동물윤리 분야에서 지배적이고 고전적인 이론인 싱어의 공리주의적 동물복지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덕윤리 이론으로도 동물권을 옹호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각 이론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이해하여, 롤랜즈가 다른 동물윤리 이론보다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근거를 발견하고자 한다. 싱어의 동물해방론은 공리주의적 기반을 가진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인 유용성을 정의하고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선(善)에 대해 논의한다.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싱어의 동물해방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리건의 권리론에서 출발점이 되는 개념인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와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리건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덕윤리적 접근이 동물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루톤(Roger Scruton, 2006)과 허스트하우스(Rosalind Hursthouse, 2000)가 여우 사냥의 관습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롤랜즈가 『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2009)에서 계약론적 도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한 동물권 옹호 주장을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론과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롤랜즈에 따르면, 두 가지 형태의 계약론을 적절히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이해이다. 따라서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칸트식 계약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롤랜즈의 주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홉스식 계약론은 계약론에 의해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도출하지만, 칸트식 계약론은 도덕률에 의해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결정한다. 칸트는 도덕률에서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의 대상에서 배제했기에 동물을 계약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비이성적 존재의 배제는 추가적인 논증이 요구된다. 이에 롤랜즈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증을 제시한다. 그는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자세히 분석하고, 차별 대우의 기준이 되는 속성들이 도덕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한다. 이 사고실험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외계인과 인간의 관계로 비유하기 때문

에 인간과 동물의 차별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롤랜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계약론자인 롤스의 논의에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한다. 롤스의 계약론은 사회적 협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정치적 권리를 분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롤랜즈는 롤스의 아이디어를 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롤랜즈는 롤스의 정의적 원칙이 직관적 평등논변과 사회 계약 논변의 두 가지 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두 논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그는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거하여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 하는 정보에 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공평한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한다. 여기까지 롤랜즈가 『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2009)[2]에서 구성한 계약론 논의이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옹호 주장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를 찾고자 한다.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동물에게 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이 동물에서 멈추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주의에서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랜즈가 동물과 식물의 구분지점으로 제시하는 “정신적 주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옹호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계약론적 정체성과 관련된다. 먼저 계약론을 발견적 도구로만 삼고, 상호성을 배제하는 설명이 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게다가 공평한 입장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공평한 입장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적 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계약론적 방법론이 고유하게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변문숙, 2013: 257).

또한, 롤랜즈의 계약론적 논변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롤랜즈의 이론은 도덕적 피동자를 계약의 수혜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론의 속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주체를 재해석하여 동물을 도덕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동물권 논의에 기여

2) 이하 AR로 표기한다.

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그는 응당 받아야 할 도덕적 대우를 도덕적 권리로 해석하고 이를 침해하는 문제가 정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또한 롤랜즈는 롤스의 계약론에 존재하는 두 가지 논변 중 직관적 평등 논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롤스의 계약론에서 주로 계약론적 논변을 다루는데, 롤랜즈는 롤스가 가진 평등주의적 통찰을 재확인하면서, 롤스가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지점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은 계약론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로써 공리주의 윤리, 의무론 윤리, 덕 윤리뿐만 아니라 계약론에서도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를 도덕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겠다. 롤랜즈는 도덕적 피동자를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하면서 범위를 확장한다. 롤랜즈의 이론은 '이기적 동기'가 아닌 '이타적 동기'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교육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의 이론은 반성적이면서도 자동적인 판단을 돕는 장치를 제안하므로 학습자의 도덕적 탐구 사고기능, 윤리적 성찰기능, 그리고 도덕적 실천기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은 아직 도덕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롤랜즈 이론이 비교적 최근 논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적 가치가 충분한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을 도덕과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로,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동물을 다루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하에 공통교육과정 '도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있다. 이 세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고,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을 각 교과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과정의 경우 내용체계와 내용요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과 교육방법을 구현한 교과서의 경우 동물 관련 내용이 도덕적 탐구 사고기능과 윤리적 성찰기능, 그리고 도덕적 실천기능 신장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동물윤리담론은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생활과 윤리’ 교과목의 동물윤리이론 내용 역시 싱어와 리건의 주장에 국한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주로 제시되는 동물에 대한 내용은 동물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동물 생명을 소중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동물윤리담론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동물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함께 살펴본다.

‘도덕’과 ‘윤리와 사상’에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을 교육내용으로 삽입하고, ‘생활과 윤리’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동물윤리가 보다 풍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도덕’의 경우 '공평한 입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편견을 극복하여 문제를 감지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실천하는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구체적 일상생활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활동이 되도록 한다.

또한 ‘생활과 윤리’에 포함시킬 내용으로 ‘외계인의 침공’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외계인이라는 소재에 학습자들은 흥미를 가지며, 외계인과 논리적 대결을 하는 상상 과정에 몰입하여 인간인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연역적으로 사고하여 논증을 구성할 것이다. 논증을 구성한 후 가상적 상황에서 인간을 변호하는 논증이 실제 상황에서 동물을 변호하는 논증으로 치환됨을 알려주면서 반성 활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윤리와 사상’에서는 ‘도덕’과 ‘생활과 윤리’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 윤리 이론을 종합하여 이해하고 조망하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 동물윤리이론의 논증을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구성한다. 학습주제로 동물윤리담론의 핵심 쟁점이면서 학생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채식’을 제안한다. 이 때 제안된 활동들은 모두 도덕적 탐구 사고기능과 윤리적 성찰기능, 그리고 도덕적 실천기능을 기르기 위한 목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 연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첫째,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가 동물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둘째,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에 대한 비판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특히, 롤랜즈의 논의를 도덕 교과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 2 장 동물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윤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moral status 또는 moral standing)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우리는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존재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다(최훈, 2019: 21).

동물에게 도덕적 고려 대상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서양윤리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념이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동식물을 사용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고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수직 관계가 정립되며, 신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데카르트(Descartes, 1637, 소두영 역, 2007)는 동물이 의식 없는 기계장치이므로 쾌고를 느낄 수 없다고 여겼다. 즉 동물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이성이 없고, 고통을 느낄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고력과 언어능력의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칸트(1997)는 인간이 실천이성을 가진 초월적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즉,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은 실천이성의 이성적 사유능력이 없는 현상계의 존재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단지 동물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도구적 가치만을 가진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은 동물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학자들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고, 돌멩이에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동물의 경우 돌멩이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데카르트나 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의 지위문제를 다루는 논의가 있다. 동물에게 직접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을 윤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동물 윤리(animal ethics)

이론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동물윤리 논의에서 고전적으로 논의되어 온 싱어의 '동물해방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후자는 권리론 관점에서 윤리이론을 전개한다. 동물윤리는 주로 공리주의 관점과 권리론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은 정식화된 도덕법칙에 따라 연역적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윤리학의 또 다른 계통으로 덕윤리를 제시할 수 있는데, 덕윤리 이론은 공리주의, 권리론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판단하는 귀납적 성격이 강하다. 즉, 덕윤리는 "구체적인 상황의 도덕적 실제와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을 통한 도덕 판단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다(노영란, 2012: 354-355). 공리주의와 권리론뿐만 아니라 덕윤리 이론을 통해서도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를 논의할 수 있다. 덕윤리 이론에 의한 동물윤리 논쟁의 대표적인 예로 허스트하우스(2000)와 스크루톤(2006)이 '사냥' 관습에 대해 논쟁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동물윤리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싱어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잘못인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동물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왜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물은 다음에 그 이유를 동물에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최훈, 2019: 21).

따라서 동물과 인간을 차별대우하는 우리의 관습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인간들 사이에 차별을 반대하는 '평등'의 원리에 대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적 기술(description)이 아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도덕 능력,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평등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즉, '평등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 평등에 기초하지 않는다. 싱어는 인간 평등의 원리가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아니”며,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prescription)이”라고 말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33). 평등의 원리는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지적·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각 개인의 IQ에 측정 가능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Q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실제 각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필요와 이익을 서로 다른 정도로 배려하는 대우는 정당하지 않다.

이 때 ‘평등’은 두 집단 간 동등한 대우나 평등한 처우, 동일한 권리[3]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평등’의 원리는 ‘평등하게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여자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남자에게도 낙태할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평등한 배려’는 각 존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우(treatment)’하고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도록 요구한다. 각 존재에게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려의 내용이 달라질 뿐,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근본 전제로 여긴다.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34). 즉, 어떤 존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기본요소는 모든 존재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그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든 그것이 권리의 척도가 아니다(Thomas Jefferson, 1905; 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34에서 재인용).”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착취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가 호소해야하는 원리이다.

성차별주의(sexism)나 인종차별주의(racism)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

3) 공리주의자인 싱어의 ‘권리’는 받아야할 도덕적 보호라는 의미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정치적 약어이다. 권리주의자의 ‘권리’와는 달리 자연적이고 절대적 가치에 근거한 권리가 아니다. 공리주의자의 권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정당화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38).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은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인간은 개인적이고 파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Singer, 1993, 황경식 외 역, 1997: 43). 이는 ‘동일한 이익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X가 백인이고, Y가 흑인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X와 Y의 동일한 이익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싱어(1997, 2012)는 더 나아가 이 원칙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역시 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벤담(Bentham, 1789, 고정식 역, 2011)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기준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자의 이익은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평등하게 배려 받아야 한다.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벤담은 동물의 이익을 무단으로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익을 가지는 존재인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평등 개념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는 동물과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야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가 아니라 동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의 ‘서로 다른 이익’은 서로 다르게, ‘서로 같은 이익’은 서로 같게 취급해야 한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동물은 동물의 본성에 따라 알맞게 대우해주는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동물이 갖지 못하는 자의식, 추상적인 사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는 행위는 동물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생명이나 고통과는 관계없다. 생존 욕구와 고통 회피욕구는 인간과 동물이 공통으로 가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것과 동물의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면 부당한 차별이다. 즉,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동물 또한 같은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에서 벗어날 이익’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X와 Y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해 X가 인간이고 Y가 동물이라는 이유로 상이한 비중을 둔다면, 이는 종에 근거한

차별이며 이익동등고려 원칙에 어긋난다.

싱어는 이러한 관행이 종차별주의(speciesism)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종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이다.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해방운동’이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흑인해방운동’이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동물해방운동’과 같은 방식의 논증구조를 갖는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29-35).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는데 여성해방운동은 남녀 사이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어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차이점과 유사점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다르게 대우하는 방식을 취한다. 같은 구도에 있는 두 집단에 대해 임의로 유사점에 또는 차이점에 기준을 두는 것은 모순이다.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이익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왜곡된 태도로 명백한 ‘차별’이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 역시 비도덕적이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익을 가진다는 벤담의 의견을 수용하여, 평등을 ‘모든 이익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면, ‘이익을 가지는 동물’ 역시 평등의 고려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한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때, 고통을 평가하는 행위에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나쁘며, 따라서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52).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이익이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각 존재의 이익에 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다. 고통을 누가 겪느냐에 의해 다르게 비중을 두는 것은 차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에게는 아무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사람에게는 유사한 고통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근거로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비인간동물을 살해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상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종차별주의적 태도이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53).

더욱 극명하게 종차별주의가 드러나는 예시는 동물실험이다. 동물실험에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동물의 정신 능력이 인간의 정신 능력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대신 동물을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험 상황에서 정상 성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면서 실험 자체에서 오는 고통에 추가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동물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없어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4] 이러한 근거로 동물을 이용한다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유아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실험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왜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가?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두 대상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이는 것은 결국 기준이 ‘정신 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50). 이 판단의 근거가 호모 사피엔스 종인지에 의거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차별주의이다.

제 2 절 동물윤리에 대한 권리론적 관점

리건은 싱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유를 동물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칸트가 주장한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정식을 동물에게까지 확장한다(최

4) 동물이 실험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볼 수도 있다. 실험 자체로 인한 고통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든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험자가 피실험 인간에게 실험의 계획이나 안정성을 설명해주어 피실험 인간의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피실험 동물은 자신이 처한 낯선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훈, 2019: 32).

리건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즉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연권의 관점(natural right approach)에서 접근한다.[5] 그는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라는 개념으로부터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 만약 개별 존재가 논리적으로 다른 이를 위한 그들의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들이 어떤 다른 이의 이익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믿음과 욕망; 자각, 기억, 미래감,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기쁨과 고통의 느낌을 함께 가지는 감정적 삶; 선호와 복지이익; 그들의 욕망과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을 착수하는 능력; 시간의 전면에 걸친 정신물리학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경험적 삶이 그들에게 편하거나 고되게 생활한다는 점에서의 개별 복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는 삶의 주체이다(Regan, 2004: 243).

'삶의 주체'는 살아있는 것(being alive), 의식적인 것(being conscious) 이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상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정신쇠약자 등 거의 모든 인간들과 고등 포유류가 포함된다. 어떤 존재의 본성이 '삶의 주체'에 해당한다면 그 존재는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6]를 갖는다.

A가 갖는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는 A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른 이로부터 얼마나 선호되고 존중받는지와 상관없다. A의 내재적 가치는 주변 사람들이 A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A의 내재적 가치는 다른 이의 이익과 비교하여 달라지지 않고, 노력으로 획득되거나 소실되지 않는다. A의 내재적 가치는 A 자체로 가지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는 경험의 가치(intrinsic value)로 인해 달

---

5) '자연권' 주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AR: 58-59). 첫째, 본성에 근거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두 번째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다. 이 가치는 타인이 대상을 중시하는지의 여부와 독립적이다. 즉 대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셋째, 권리는 동의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계약보다 권리가 우선한다. 칸트가 이러한 권리를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긴 반면, 리건은 동물도 본성에 근거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6) 리건의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는 형식적이며, 실체가 없는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ussow, 1988: 48).

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험에 통과하는 경험으로 A의 내재적 가치가 증가하지 않으며,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해 내재적 가치가 감소하지도 않는다. A의 경험이 가지는 가치(intrinsic value)를 높인다고 해서 그의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가 변하지 않는다.[7)]

내재적 가치 개념은 리건의 권리론 관점과 싱어의 공리주의 관점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준다. 공리주의에서 가치는 존재자가 겪는 '경험'에 있다. 경험이 기쁘거나 경험이 선호를 충족할 경우 가치가 발생한다. 반면 리건의 권리론에서 가치는 존재자 자체에 있다. 존재자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리건은 공리주의가 존재자를 '그릇(receptacles)'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Regan, 2004: 208-211). 그릇 자체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 다만 그릇은 가치 있는 내용물을 담을 뿐이다. 공리주의는 그릇 안에 쓴 맛의 내용물보다 단 맛의 내용물이 많이 담기도록 하는 데에 선의 가치를 둔다. 다시 말해 그릇 안에 담길 내용물인 '경험적 가치'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권리론 관점에서 존재자가 겪는 경험 내용에 의해 존재자의 가치가 축소, 환원될 수 없으며, 다른 대상과 비교될 수도 없다. 존재자가 갖는 가치를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 존재자의 경험이 갖는 가치를 경험적 가치(intrinsic value of experience)라고 했을 때, 내재적 가치는 경험적 가치와는 독립적이다. 공리주의는 경험적 가치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면서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리건이 제시한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라는 개념은 이론적 가정(theoretical postulate)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 그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몇몇 가설 중에 그 현상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최선의 가설은 나머지 가설들을 탈락시키고 참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추론적 가설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근본적인 정의 명제인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를 설명하려는 가설들을 검토하였을 때, 이 명제를 설명하는 몇몇 가설들은 다

7) 리건은 공리주의에서 존재자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적 개념인 경험의 가치(intrinsic value)를 도입한다. 경험의 가치는 존재자가 경험으로부터 얻는 기쁨, 선호 충족 등의 가치이다. 결국, 리건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존재자의 경험에서 얻는 가치가 존재자 자체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음과 같은 이유로 탈락한다. 첫째, 우리의 숙고된 믿음은 정의에 대한 완전주의(perfectionist)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의에 대한 완전주의 관점이란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는 개인이 덕이나 탁월함을 가지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덕이나 재능이 탁월한 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숙고된 믿음은 공리주의적 설명과 모순된다. 공리주의적 선택은 기쁨이나 선호 충족의 총합이 커지기만 하면 우리가 부정의라고 여기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한 개인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AR: 63-66). 리건은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정의 명제를 충분히 설명해낸다. 반면, 이 명제에 대한 완전주의적 가설이나 공리주의적 가설이 적절한 설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으로 인정된다.

리건은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가설 하에,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도덕 원칙을 도출한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인은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도덕 원칙이다(Regan, 2004: 248-250). 이는 '형식적 정의의 원칙'을 평등주의적이고 반완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리주의에서처럼 대상을 가치 있는 경험의 그릇으로 대우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을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는데 실패한 다. 대상의 내재적 가치가 '그 대상이 우연히 갖게 되는 경험'에 의해 변화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우방식이 아니다. 게다가 어떤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가지는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공리주의는 그 과정에서 개별 존재자에게 해를 입히는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존재자의 가치를 '타인에게 그가 유용한지 또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는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우방식이 아니며,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서도 정당한 대우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어떤 도덕이론이든 존중의 원칙(respect principle)을 포함해야만 우리의 숙고된 믿음에 부합하는 설

명이다. 그리고 존중의 원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리건은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을 도출한다. 존중의 원칙에 따라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인을 이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해야하고, 삶의 주체인 존재자는 경험적 복지를 갖는다. 따라서 삶의 주체는 이득(benefit)과 해악(harm) 개념을 적용받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들은 경험적 복지에 손상을 입는다. 이는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우하는데 실패한 것이다(Regan, 2004: 262-263). 결론적으로 리건은 경험적 복지를 갖는 개인들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해악의 원칙이다.

리건은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권리를 설명한다. 도덕적 권리(moral right)는 두 가지 주장(claim)으로 구성된다. 도덕적 권리가 정당한 주장(valid claim)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타당해야 한다. 첫 번째, 존재자가 재화, 자유,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주장(claim-to)이 정당해야 한다. 이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존재자가 받아야 하는 것을 타당한 도덕원칙에 호소하여 증명하면 타당한 주장(valid claim-to)이 된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지정된 개별자를 상대로 주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존재자가 받아야 하는 재화, 자유, 대우를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역시 올바른 도덕원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타당한 주장(valid claim-against)이 된다(Regan, 2004: 271-273). 즉, '재화, 자유, 대우에 대한 타당한 주장'과 '재화, 자유,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개별자를 상대로 타당한 주장'으로 증명된다면 타당한 권리 주장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옳은 도덕원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리건은 앞서 옳다고 결론내린 존중의 원칙과 해악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증명한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인이 이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어떤 유형의 대우에 관한 주장과 지정된 개별자를 대상으로 한 주장으로 구성된다. 존중의 원칙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내재적 가치를 존중받는 방식으로 '재화, 자유,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존중받을 권리’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은 해악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 도덕적 권리’가 성립한다.[8)]

도덕적 권리에 누군가에 의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덕적 대우를 요구 받는 자는 도덕적 주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리건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만이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에 해당한다. 즉, 도덕적 권리는 도덕적 행위자를 상대로 요구된다. 도덕적 피동자(moral patient)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재화나 대우를 제공할 수 없다(Regan, 2004: 154). 자연은 우리가 받아야 할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을 상대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양은 삶의 주체이기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은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만약 늑대가 양을 잡아먹었다면 양의 권리가 늑대에 의해 침해된 것일까? 아니다. 양은 늑대를 상대로 권리를 갖지 않는다. 늑대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의미에서 양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힌다면 양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 요컨대 도덕적 권리는 권리대상자를 향한 도덕적 대우를 행하도록 요구받는 개별자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는 도덕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여야 한다.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에게 도덕적 대우의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다.

---

8) 해악의 원칙에 따른 권리는 “어떤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혹은 도덕적 강제력을 지닌 다른 대안들과 충돌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부 권리(prima facie right)이다(Beauchamp&Childress, 2001, 박찬구 외 역, 2017: 152).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건 삶의 주체인 존재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이 ‘항상’ 잘못은 아니다. 특수한 경우 내재적 가치를 갖는 무고한 개인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상황이 존재한다. 리건은 해악의 원칙이 기각되는 상황이 임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해악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 타당하게 기각되는지를 최소기각 원칙(miniride principle), 더 나쁨의 원칙(worse-off principle)으로 결정한다. 리건은 이 두 가지 원칙이 기존의 옳은 도덕원칙인 존중의 원칙과 해악의 원칙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논증한다(Regan, 2004: 301-312).

제 3 절 동물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관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덕 윤리에서 핵심은 덕(virtue)이다. 덕은 덕의 소유자에게 깊이 자리 잡은 인성 특성(character trait)이다.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덕이 특정한 한 가지 유형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직은 '상대의 지갑을 훔치지 않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는 행동'까지 포함한다. 또한 '깊이 자리 잡은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된다.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도 행동이 지속된다면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의 덕을 가진 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틀림없이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는 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덕은 많은 요소(multi-factorial)로 이루어져 있다. 덕을 구성하는 요소에 행동 경향이나 기질 이외에도 판단과 감정 등이 포함된다. 안정된 행동 기질이 판단과 감정의 적절한 인근 맥락에 위치해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것을 행하는 기질에 더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 감정, 생각, 느낌을 가지는 기질을 수반해야한다. 예를 들어 정직의 덕은 정직한 행동 경향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비정직을 비탄하는 기질과 비정직을 목격했을 때 격분하는 기질이 포함된다. 오직 행동만이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의 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정직한 것을 행하고 비정직한 행동을 꺼리는 안정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비정직의 행동으로 인해 잡혀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행동 경향성의 인접 맥락에 감정과 판단이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정직의 덕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행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찰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덕의 귀속을 판단할 수 없다. 행동의 주변에 있는 행동 이유와 감정은 덕의 소지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요컨대 덕은 선하고 존경할만하고 칭찬할만한 인성 특성이다. 그리고 덕은 판단과 감정의 적절한 맥락 안에서 구현된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 기질로 드러난다.

반면 악덕(vice)은 존경할 가치가 없는 인성 특성이다. 덕을 가지는 것은 악덕을 혐오하는 것이며, 덕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덕에 상응하는 악덕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덕윤리는 일상 언어에 존재하는 덕과 악덕을 평가하는 광범위하고 풍부한 용어를 중심으로 도덕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토대를 제공한다. 덕윤리는 궁극적으로 덕스러운(virtuous)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한다. 덕스러운 사람은 다양한 덕을 가지고 발휘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덕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에 악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존재이다. 덕의 행동은 악덕을 억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AR: 98-100).

덕윤리는 '동물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동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리 이슈'에 대해 적절한 논증을 제공한다. 덕윤리학자인 스크루톤(Roger Scruton)과 허스트하우스(Rosalind Hursthouse)는 '여우사냥, 투우, 낚시 등 유혈 스포츠(blood sports) 관습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덕윤리 접근으로 각기 상반된 결론을 내린다. 스크루톤(2006)은 유혈 스포츠 관습에 참여하는 자의 동기에 의해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사냥개에 의해 찢겨진 여우를 보면 쾌감을 얻기 때문에 사냥에 참여하거나 사냥을 구경하는 자는 덕스럽지 않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여우의 고통을 즐기면서 여우를 고통 받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기는 행위자가 가진 잔인함(cruelty)의 악덕을 의미하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으며 유죄이다. 하지만 사냥 참여자가 여우의 고통을 즐기려는 동기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악덕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여우의 고통은 사냥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일 뿐이므로 악덕이 아니다.

허스트하우스(2000)는 사냥의 관습에 반대하면서 스크루톤이 '잔인함'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떤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잔인하기 때문에, 사냥 참여자는 잔인함의 악덕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허스트하우스는 스크루톤이 잔인함이라는 용어 사용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사냥 참여자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냉담함(callousness)의 악덕을 드

러낸 행동이므로 덕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허스트하우스는 사냥 관습이 잔인함뿐만 아니라 냉담함의 악덕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제 3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

동물에게 도덕적 대우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동물윤리는 주로 싱어와 리건의 주장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논의가 두 학자의 견해에만 국한되어 진행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롤랜즈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양한 이론에 의거하여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가 생각하기에 싱어의 주장은 공리주의적 한계를 가지며, 리건의 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덕윤리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덕목의 용어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롤랜즈는 다른 윤리이론보다 계약론적 접근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moral status 또는 moral standing)를 갖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그 존재에게 도덕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뜻이고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한다(최훈, 2013a: 219-220).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존재는 바꾸어 말해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롤랜즈는 도덕적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도덕적 권리'를 사용한다.[9] 그는 리건이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를 수용한다. 권리는 "구체적인 재화(specific commodity), 자유(freedom), 대우(treatment)에 대한 정당한 주장

9) 동물을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싱어와 리건은 각각 '권리'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인다. 특히 싱어의 이론은 공리주의 토대를 갖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와 권리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권리중심론과 공리주의가 속한 목표중심론 혹은 결과주의"는 서로 상충된다(김현철, 2014: 251). 따라서 싱어의 경우 인간이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만, 동물에게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반면, 리건(2004)에 따르면, 동물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 그는 지금 인간이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롤랜즈는 동물이 본래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롤랜즈는 권리론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롤랜즈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valid claim)"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재화, 자유, 대우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개별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주장이다." 권리 주장은 "옳은 도덕이론에 의해 논증된다면 옳다(Regan, 2004; AR: 118에서 재인용)."

도덕적 지위 또는 도덕적 권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 존재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도덕적 지위를 갖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소유할 수도 있다. 전자를 직접적 도덕적 지위, 후자를 간접적 도덕적 지위라고" 한다(최훈, 2013a: 221).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덕적 지위가 없는 것이고, 다만 직접적 도덕적 지위의 소유자에 의해 파생된 지위를 가진다.[10)]

롤랜즈는 계약론이 동물을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로 여길 수 밖 에 없다는 기존 관점을 극복하고, 계약론에 근거하여 동물에게 직접적 도덕적 지위 즉,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롤랜즈는 '재화, 자유, 대우를 주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동물을 두고, 기존의 '옳은 도덕이론'인 계약론적 윤리에 의해 권리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는 기존 계약론이 동물권 주장을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홉스식 계약론 주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홉스식 계약론' 대신 '칸트식 계약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11)] 그에 따르면 칸트식 계약론

10) 최훈(2013a)에 따르면, 데카르트, 칸트, 캐루더스가 간접적 도덕적 지위이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들이다. 먼저 데카르트(Descartes, 1637, 소두영 역, 2007)는 '동물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재산이므로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물은 함부로 대우되어서는 안 될 '간접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칸트(1989)는 '직접적인 도덕적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함부로 대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즉,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직접적 권리 소유자를 대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또 캐루더스(1992)는 '다른 직접적 권리 소유자에게 미칠 영향과는 별개로 그 행동 자체가 행위자의 잔인한 성격을 드러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 상정되는 인간 외에도 함부로 대하면 안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11) 사회계약론은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합리성을 규정하고 실현하는지에 따라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의 두가지 계열로 나뉜다. 홉스식 모형은 "계약론적 합의를 전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선택상황은 협상자의 현상적 위치, 위협적 이익 등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규정되는 홉스의 자연상태가 그 전형"이다. 칸트식 모형은 "계약론적 합의를 이상화하여 전략이나 상대적 협상능력 등의 역할을 배제하는데, 이 모형은 로크, 루소, 칸트에 의해

계열의 롤스 이론에서 롤스가 동물을 계약의 수혜자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홉스식 계약론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결과이다. 홉스식 계약론은 계약을 통해 도덕을 구성하며 합리성에 계약의 동기를 둔다. 반면, 칸트식 계약론은 도덕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계약을 활용하기 때문에 합리성 보다는 합당성[12]을 추구한다. 칸트식 계약론 계열인 롤스의 계약론은 '평등'이라는 도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계약을 실행한다. 따라서 평등의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은 그에 따라 파생된다. 롤랜즈는 롤스 이론에서 드러난 '평등'의 근본적인 개념을 직관적 평등 논변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홉스식 계약론에 의거한 요소를 삭제하고, 직관적 평등 논변의 개념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약은 동물까지 정의의 대상에 두고 동물에게 직접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수정하여, '종'이나 '이성의 소유 여부'를 무지의 베일 뒤에 가린 '공평한 입장'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2009)에 나타난 롤랜즈의 '계약론에 근거한 동물의 권리'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동물윤리에 대한 고전적 관점의 한계

앞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은 각 윤리이론 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고전적 동물윤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한계를 가진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공리주의이론 자체가 가지는 윤리이론으로서의 취약점이 있으며, 권리론적 관점은 이론의 핵심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허점이 있다. 또한 덕윤리적 관점은 덕목 용어의 정의가 학자마다 달라 하나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 발전되어 롤즈에까지 이른다(김은하, 2006: 174)."

12) "합리성은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최선의 길을 계량할 때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에 비해 "합당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조건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것과 연관된다(이종은, 2015: 106)."

1.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고통과 괴로움은 그자체로 나쁘며, 따라서 고통 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52)."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싱어는 선호공리주의자로서 "행위가 그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존재의 선호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행위를 평가한다."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선호의 충족'에 두고 이를 최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선호를 최대한으로 충족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어떤 존재의 선호에 반대되는 행위는, 그 선호가 다른 선호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면, 그릇된 것이다(Singer, 1993, 황경식 외 역, 1997: 123)." 그러나 일부 사람의 선호 충족은 다른 사람의 선호 충족과 양립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선호가 전체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행위와 충돌할 경우 그 사람의 선호는 기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선호의 기각이 그 선호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다. 그의 선호는 최대화 계산에 변수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싱어는 평등을 이익을 갖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대우하는 '이익동등고려 원칙'으로 구체화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롤랜즈(AR: 40)는 싱어의 이익 평등고려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U1. 모두를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해야 한다.
U2. 각각의 모든 존재의 이익은 도덕적 숙고에서 동등한 무게로 주어져야 한다.
U3. 이익의 잠재적 최댓값이 충족되어야 한다.

U1은 형식적 정의의 원칙(formal principle of justice)이다. 이는 공리주의에만 고유한 원칙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의 본질적 구성요소인데, 선호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이 원칙을 '도덕적 숙고에 있어 모든 개별 존재의 선호에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U2)으로 해석한다. 각 개인의 선호를 동등하

게 계산하는 것이다. 모든 선호는 각각 1의 값을 가지며, 어떤 선호도 1을 초과하여 또는 1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익을 동등하게 계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재 이익의 충족을 최대로 하는 것(U3)이다. 이는 '이익 합산이 필요하다는 것'과 '충족된 이익의 최대치를 야기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일부 사람들이 '대등한 것보다 덜' 대우받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게 한다. 롤랜즈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 사형선고를 받은 몇 명의 죄수가 선택권 없이 검투사로 지명되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검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는 수백 명이다. 수백 명은 검투를 관람하며 유희를 얻는다. 소수 죄수 몇 명은 목숨이라는 선호를, 다수 시청자 수백 명은 유희라는 선호를 가진다. 이를 총합하였을 때, 소수의 선호를 잃더라도 다수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AR: 44).

이 사례에서 소수의 선호는 전체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하기 위해 희생된다. 공리주의는 전체 선호 충족을 총합했을 때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위의 검투사 제도를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직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익 동등 고려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직관은 '누군가의 도덕적 자격이 그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품고 있는 태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죄수의 도덕적 자격은 그를 향해 시청자들이 가지는 이익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더 일반적으로 가정해보자. 소수집단 구성원에게 더 적은 자원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수집단이 있다.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하는 차별주의자들이다.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에게 더 적은 이익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 모든 각 개인의 선호에 동등한 무게를 두었을 때, 소수집단에게 더 적은 이익을 주는 방안은 집단의 인원 수 격차로 인해 다수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전체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한다.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소수집단에게 적은 이익을 주자는 주장을 수용해야 한

다. 그러나 이는 '소수집단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대우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롤랜즈는 이것이 도덕적 평등을 실현한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공리주의가 이익 동등 고려 원칙과 이익 합산 원칙을 융합하고 있는데 이 둘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융합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AR: 45-50).

게다가 검투사의 예에서 시청자들이 얻는 유희라는 이익은 부당하다. 롤랜즈는 소수집단 차별로 다수집단 구성원이 얻게 되는 유리한 분배 역시 부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에서 도덕적 결정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이익 총합의 최대화이다. 그렇다면 총합 계산에 변수로 포함되는 선호이익이 도덕적으로 옳은 이익인지 부당한 이익인지를 계산 이전에 선별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이익 역시 다른 선호와 같은 비중으로 계산에 반영된다. 죄수 검투사의 희생으로 얻는 유희 이익은 총합 계산 전에 옳고 그름을 판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익총합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AR: 42-50). 이는 공리주의가 '이미 존재하는 선호'를 합산하는 것이 이익 동등 고려의 개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자에게 '이익 동등 고려'는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부당한 선호가 계산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공리주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롤랜즈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옳지 않은 근거로 옳은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착취집단과 피착취집단의 규모 상 격차와 같은 우연한 특징 때문이다(AR: 56-57). 공리주의에서는 '이익을 갖는 존재가 응당 받아야하는 대우'가 '그 대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가 얻게 될 결과'에 따라 작용한다. 이는 이익을 갖는 존재를 수단으로 대우한 것으로 동등 고려 원칙을 거부한 것이다.

요컨대 싱어는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규범이며, 평등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고통 받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피하려는 선호이익을 가진다고 보았다. 선호이익은 소유자 속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이익 동등 고려 원칙에 대입하여 각 존재

의 선호이익을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원리를 도출한다. 그러나 이익 동등 고려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을 이익 합산과 최대화에 두면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롤랜즈는 공리주의 관점으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2. 권리론적 관점의 한계

롤랜즈에 따르면 리건의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 논증은 완벽하게 정합적이다. 그러나 그는 리건 이론의 근간인 '내재적 가치'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리건의 주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진단한다(AR: 86-89). 내재적 가치는 이론적 가정이다. 그렇다면 리건은 내재적 가치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하고, 내재적 가치가 무엇에서 기원하며 어떻게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리건은 이러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롤랜즈는 내재적 가치가 공리주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임기응변(ad hoc)이라고 비판한다. 공리주의에 근거한다면, 소수 몇 명의 죄수를 검투사로 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백 명 관중이 유희를 즐기는 것은 이익 총합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옳다. 공리주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 '비교할 수 없는 이익과 해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어떤 종류의 이익과 해악은 같은 측정 단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incommensurable)는 개념이다. 위 예에서 검투사의 고통은 관중의 기쁨과 비교될 수 없다. 같은 측정 단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투사의 고통을 능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중의 기쁨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다(AR: 90). 이렇게 공리주의가 정의에 관한 우리의 깊은 신념과 충돌하는 사례를 만날 때마다 공리주의자들은 '비교 불가능한 이익과 해악'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관되지 않으며, 임시방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롤랜즈가 보기에 리건의 내재적 가치 역시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ad hoc)일 뿐이다(AR: 92). 공리주의자의 적용 기준과 리건의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라는 개념의 적용기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리건은 그의

깊은 도덕 믿음과 그의 이론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내재적 가치'를 도입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가 비교불가능한 가치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 임시방편이라면, 리건이 내재적 가치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 똑같이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

롤랜즈는 리건의 '내재적 가치' 개념이 갖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권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리건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존중의 원칙을 수립하고 도덕적 권리를 규정했다면, 롤랜즈는 '내재적 가치'를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는 개념으로 대체한다(AR: 93). 롤랜즈는 '존재자A가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A는 타자I에 의해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A는 I에 의해 도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도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A가 I에게 제공하는 이익이나 유용성 때문에 A를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A는 I에 의해 주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주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I가 우연히 A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일 뿐 또 다른 타자 I2에게 A는 가치 있다고 평가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됨'은 어떤 것이 실제로 '내재적으로 가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한다면 그들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처럼 대우해야한다. 롤랜즈는 리건 이론에서 '내재적 가치'가 한 역할을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됨'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리건의 주장에서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도덕적 권리를 도출한다. 롤랜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는 것은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것처럼 대우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존중의 원칙과 도덕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R: 93-97). 롤랜즈가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내재적 가치'가 존재론적으로 불확실하고 논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좀 더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 덜 논쟁적인 방향으로 권리론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롤랜즈의 동물권 주장은 이러한 바탕에서 계약론적으로 전개된다.

3. 덕윤리적 관점의 한계

롤랜즈에 따르면, 스크루톤과 허스트하우스 간 논쟁은 '잔인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AR: 103). 스크루톤은 가해자가 아픔과 고통을 가하는 이유가 고통과 아픔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잔인함'의 악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스트하우스는 잔인함과 냉담함의 개념을 결합하고 있다. 허스트하우스는 사냥에 참여하고 구경하는 것이 잔인하고 냉담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스크루톤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그 행동은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

롤랜즈가 보기에 스크루톤이 '잔인함'의 정의를 수용한다면 유혈스포츠는 필연적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반면 허스트하우스는 유혈 스포츠가 '냉담함'의 악덕을 드러낸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AR: 102). 그러나 사냥의 잔인함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도 사냥이 '냉담함'의 악덕을 드러낸다는 것에 반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냥 참여자가 잔인함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해도, 냉담함 때문에 덕스럽지 않음은 옳은 결론이다.

스크루톤은 사냥을 찬성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사냥이 '재미'라는 이득(benefit)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Scruton, 2006: 82-83). 사냥이 냉담함의 악덕을 보여주지만, 근본 목적은 재미이다. 사냥이 유발하는 '재미'에 의해 '냉담함'의 악덕은 무시된다. 그러나 재미는 덕이 아니며 단지 이득(benefit)이다. 덕윤리 논증에서 이득이 덕이나 악덕보다 중시될 수는 없다. 이득의 일종인 재미에 호소함으로써 악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덕윤리 이론에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악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재미의 이득을 가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재미'에 근거한 스크루톤의 주장은 덕윤리에서 냉담함의 악덕을 이길 정도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덕윤리 접근에서 핵심 논쟁은 덕과 덕이 충돌할 때이다. 이에 스크루톤은 유혈 스포츠가 가지는 덕을 근거로 찬성의 논지를 전개한다. 유혈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칠 위험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위험에 직면한다. 스크루톤에 따르면 이것은 용기(bravery)의 덕이다(Scruton,

2006: 66). 그렇다면 논쟁의 구도는 유혈스포츠 참여자가 가지는 ‘냉담함의 악덕’과 ‘용기의 덕’ 사이의 충돌이다. 그러나 허스트하우스는 사냥 참여자가 ‘용기’의 덕을 드러낸다는 스크루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용기는 단순히 위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근거와 가치 있는 목적으로 위험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덕성 윤리의 맥락에서 '용기'는 단순히 '위험에 직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이유로 또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위험에 직면한다'는 뜻이다. 용기는 '담대함(daring)'과 '무모함(recklessness)'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악덕과 결함으로 간주된다. 만약, 어떤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자동차 위로 오토바이를 뛰어 넘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어떤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모한 십대들이 하는 것처럼, 재미와 흥분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을 겁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다.(Hursthouse, 2000: 161).

허스트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유혈 스포츠 참여자들은 선한 근거와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용기의 덕과는 관련 없다. 그는 가치 있는 선한 근거로 ‘누구의 생명을 구하거나 재앙을 피하는 것’을, 나쁜 근거로 ‘재미와 흥분과 겁주기, 공포’를 제시하여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롤랜즈에 따르면 ‘재미와 흥분, 겁주기, 공포’가 항상 나쁘고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롤랜즈는 허스트하우스의 선악 근거 분류가 경험적 주장일 뿐이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허스트하우스는 스크루톤이 ‘용기’와 ‘허영심’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우사냥에서 사냥감인 여우를 적으로, 사냥을 여우와 우리의 경쟁시합 또는 전쟁으로 비유하는 인식은 심각한 허영이다.

> 끊임없이 여우를 '고귀한 적수'라고, 사냥을 '웅대한'이라고 표현하며, 자신과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작은 동물(비록 '놀랄 정도로 교활한 동물'이라고 항상 말할지라도)과 한 무리의 기수, 말, 사냥개들 사이의 대결을 그리스인과 트로이인 사이의 전쟁에 비교할 수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환상을 부추긴다(Hursthouse, 2000:161-162).

사냥에서 사냥 참여자가 가끔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용기의 미덕이라는 주장을 허스트하우스는 '허영'과 '자기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냥에서 다치는 일은 아주 가끔 일어나며, 사냥에서 부상당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사냥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롤랜즈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감각과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AR: 109-111). 주관적 위험 감각은 자신이 느끼는 위험의 정도로, 위험이 실제로 일어날 객관적 가능성과는 다르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측면의 용기는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위험의 정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보통 주관적 위험 감각은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훨씬 부풀려진다. 객관적인 위험이 적은 상황이라고 해도 위험이 일단 발생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허스트하우스가 위험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용기의 덕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허스트하우스는 여우사냥에 참가하는 자들이 사냥활동을 통해 용기의 덕을 발휘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동일한 활동의 수행에서 용기의 덕과 냉담함의 악덕을 동시에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AR: 105-106). 그러나 롤랜즈는 동일한 활동 수행에서 덕과 악덕이 동시에 존재하여 갈등할 가능성을 인정하되, 덕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AR: 111-112). 우선 도덕적 덕목(moral virtue)과 집행적 덕목(executive virtue)을 구분한다. 도덕적 덕목에 친절, 정의, 자비, 충성, 이타주의, 너그러움, 동정, 책임, 자비, 성실이 포함되며, 집행적 덕목에 용기, 근면, 지혜가 포함된다. 롤랜즈에 따르면 도덕적 덕은 집행적 덕보다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냥의 논쟁에서 냉담은 도덕적 덕에 관련된 악덕이고 용기는 집행적 덕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충돌에서 냉담함의 도덕적 악덕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롤랜즈는 허스트하우스와 다른 방식으로 스크루톤을 비판한다. 스크루톤의 주장대로 여우사냥이 용기의 덕을 수반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허스트하우스가 논증했듯이 여우사냥은 냉담함의 악덕을 수반한다. 롤랜즈는 냉담함의 악덕을 제거하거나 용기의 덕을 포기하는 양자택일 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AR: 112-113). 우리는 악덕의 발휘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덕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재현할 수 있다. 두려움을 유도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선이라면, 어떠한 악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행동을 도덕적으로 더욱 덕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냥이 용기와 관련된다면, 방어할 수 없는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도살을 수반하지 않고서 용기를 발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13)]

제 2 절 계약론과 도덕적 지위

계약론은 보통 동물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이론으로 여겨진다. 계약론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i) 동물을 비롯한 비이성적 존재들이 간접적 도덕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계약론과 양립할 수 있다. (ii)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들의 직접적 도덕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계약론과 양립할 수 없다(AR: 120-121). 이러한 가정은 동물이 이성적 행위자(rational agents)가 아니라는 점과 계약론은 이성적 행위자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계약론자인 캐루더스(Peter Carruther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도덕성은 여기서 [즉, 계약론적 접근에 따라] 사회 내에 이성적인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시스템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이 접근에서 오직 이성적인 행위자만 직접적 권리를 할당받을 것이다. 규칙시스템을 선택해야 하고 자기 이익을

13) 롤랜즈는 덕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허스트하우스의 논증도 스크루톤의 논증도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덕윤리이론 자체는 현재 비인간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비(mercy)의 덕을 중심으로 하는 덕윤리적 바탕의 논증을 제시한다. 자비의 덕은 동물을 포함한 힘없는 자를 대우하는 도덕적 방식이다. 그러므로 힘없는 존재인 동물을 대우하는데 있어 덕스러운 사람은 자비의 덕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추구하여(self-interestedly) 선택해야 하는 이성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오직 이성적 행위자만 그들의 지위(position)를 그 규칙 하에 보호받을 것이다. 권리가 왜 비이성적인 행위자에게 할당되어야 하는지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동물들이 이성적 행위자로 여겨지지 않는 한, 동물들은 롤스 계약론 하에 도덕적 지위(standing)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Carruthers, 1992: 96-98).

존재자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칙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계약론은 이성적인 존재에게만 직접적 권리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비이성적 존재는 직접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비이성적 존재는 비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영유아, 지적 장애인 등과 같은 가장자리(marginal) 인간을 포함한다.[14] 계약론적 윤리설이 '이성적 존재'를 권리의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덕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비이성적 인간을 배제하게 한다. 이는 계약론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루더스는 논증을 추가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계약론이 유아와 치매노인들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강력하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직관들과 충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Carruthers, 2011: 387), 이성적 행위자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캐루더스에 따르면, 어떤 인간이 이성을 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slippery slope argument)이다. 이 논변은 어린 아이와 성인, 그리 지적이지 않은 사람과 중증 정신장애자, 정상 노인과 중증 치매 노인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한다. 어떤 이가 합리

14) 대부분의 인간은 이성능력을 갖고 있지만, 소수의 인간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소수의 인간을 인간의 대중적인 속성에서 멀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가장자리(marginal)인간이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이성을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했을 때, 가장자리 인간과 비인간동물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가장자리 인간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비인간동물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논리상 비일관적이다. 이를 가장자리 논증(argument from marginal cases)이라고 하는데, 이 논증의 핵심은 가장자리 인간의 도덕적 권리를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기준이 비일관적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자리 논증에 대해서는 '2. 동등한 도덕적 고려와 존중'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도덕적 권리를 박탈당하기 시작하면,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합리적인 사람들까지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Carruthers, 1992: 114-115).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전성 논증(social stability argument)이다. 계약은 안정적인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비이성적인 존재를 도덕 영역에서 배제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존재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며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이다(Carruthers, 2011: 388-389). 이는 비이성적인 존재들이 타인에게 받는 애정 즉, 유대관계에 호소하는 논증이다.

캐루더스는 이와 같은 이유로 비이성적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동물에게는 여전히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15]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은 비이성적인 존재와 이성적인 존재의 구분을 통한 도덕적 권리 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비탈길의 위험이 인간 종(species)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논변을 동물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가지는 관심과 애정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인간에게 갖는 애착만큼 깊지 않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Carruthers, 2011: 391-392).

결국, 계약론에서 이성적 존재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원칙 때문에 계약론이 해명해야 할 부분은 비이성적인 존재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것이다. 특히 가장자리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핵심 쟁점이다. 롤랜즈는 이 쟁점에 대해 캐루더스와는 다른 주장을 전개한다. 롤랜즈에 따르

15) 가장자리 인간을 도덕 영역에 포함하면서 동물은 배제하고 있는 캐루더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변문숙(2013)은 캐루더스가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서 제시한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 등이 비정상 인간으로 분류되어 박해 받은 사실을 예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이 경우 박해 이유가 비이성적 인간과 정상성인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연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안정성 논변에 대해, 최훈(2013b)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사소한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경험적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현대 선진국 시민이 자신의 애완동물과 빈민국 난민에 대해 보이는 애정을 예로 들고 있다. 애완동물에 애착을 가지는 어느 시민이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면, “계약론 자체에는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가 이성적 행위자에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계약의 입안자가 이성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사실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보호의 수혜자가 이성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AR: 122). 따라서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보호의 수혜자는 이성적, 비이성적 존재를 포함해야한다고 논지를 전개한다. 롤랜즈는 계약 당사자가 곧 계약의 수혜자라는 가정은 ‘계약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을 구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의 차이점

“계약론적 윤리학은 최초의 선택상황(initial choice situation)인 자연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의 선택상황은 공정한 상황이거나 공정한 상황이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그 상황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합의의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상황이 공정하다면 합의의 결과는 공정하겠지만 계약론적 논증이 정당화하고자 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미리 전제해야만 한다(박정순, 1991: 250).”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킴리카는 각각을 사회계약론의 홉스식 계약론 계열과 칸트식 계약론 계열로 구분한다. “킴리카에 따르면, 홉스적 전통은 도덕을 합리성에 정초시킬 수 없는 반면, 칸트적 전통은 도덕성을 선결문제로 가진다(Kymlicka, 1991; 박종준, 2017에서 재인용).” 롤랜즈는 홉스식 계약론과 칸트식 계약론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윤리에 대한 계약론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의 필요조건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계약론이 있다. 이들은 매우 다른 가정에 기반하며, 매우 다른 도덕적 원칙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 형태들을 적절히 구별한 것은 드물어서 찾기 어렵다. …… 계약론의 첫 번째 형식은 홉스로부터 온다. 따라서 나는 이를 홉스식 계약론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두

번째 형식은 칸트로부터 유래하며, 그래서 이를 칸트식 계약론이라고 부르겠다. 이들의 주요한 차이점은 (i) 계약의 권위: 가설적 계약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에 대해 권위를 가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그리고 (ii) 권위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이해에 있다(AR: 123).

롤랜즈는 이 두 가지 방식의 계약론이 계약의 권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각 계약론은 '계약이 강제성을 가지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계약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1) 홉스식 계약론에서 도덕과 계약의 권위

홉스식 계약론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없다. 예를 들어, 타인을 고의로 해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타인을 고의로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에,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마치 그릇된 행동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에 규범성이 부여되고 따라서 이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즉, 이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잘못된 (inherently wrong)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이성적(irrational)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홉스식 계약론에 따르면, 도덕의 기초는 상호 이익이 되는 행동규칙으로 구성된 가설적 계약이다(AR: 123-124)." 즉, 홉스식 계약론에서는 계약이 도덕규범을 산출한다.

홉스식 계약론은 도덕의 내용을 협상(bargaining)에 의해 구성한다. 협상은 각 개인이 이중목적에 기여하는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이중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보호하려는 목적과 자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적게 제한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한다(AR: 124). 규칙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규칙에 동의할지 말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계산(calculation)하여 결정한다. 규칙으로 인해 자유에 제약을 받는 정도보

다 규칙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그 규칙에 동의하게 된다. 규칙이 이중목적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계약자 자신에게 이익이므로, 계약자는 암묵적으로 규칙에 동의할 것이다. 결국 규칙에 대한 동의는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의 합리성(rationality)에 의존한다. 홉스식 계약론은 모든 구성원이 계약에 실제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가설적인 초기 자연 상태와 가설적인 계약을 통해 설명한다.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권위는 무효가 된다(Katzner, 1980: 67). 따라서 계약의 권위는 우리가 도덕규칙을 비롯한 계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암묵적 동의는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타산적으로 협상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규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역시 암묵적 동의, 그리고 자기이익에 있다.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자로부터의 보호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로부터의 도움은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이득이므로, 그들은 우리의 계약 상대이다. 반면, 우리를 해칠 수 없거나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자와는 계약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우리보다 힘이 강한 자는 우리를 해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와 힘이 비슷한 자는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상호이익이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를 힘의 균등 조건(equality of power condition)이라고 한다. 게다가 계약의 권위가 동의로부터 온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도, 계약에 동의하는 응답을 할 수도 없는 자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타산적이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계약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능력이 없는 자는 계약자가 될 수 없다. 이 조건을 합리성 조건(rationality condition)이라고 한다.

홉스식 계약론은 최초 선택 상황을 공정한 상황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상황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홉스식 계약론은 사회 계약의 기원을 '서로에게 불리한 충돌은 피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합의는 합리성 기준, 즉 상호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 당사자 각자의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규범성을 도출하는 홉스적 전통에서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상호이익에 있다. “계약론의 상호이익 추구와 같은 상호성을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강한 의미의 상호성이라고 할 수 있다(변문숙, 2013: 238).”

2) 칸트식 계약론에서 도덕과 계약의 권위

칸트는 “사회 계약이라는 관념이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찾는데 이상적인 절차(이종은 2015: 105)”라고 여겼으며, 롤스가 이를 계승한다. 롤스는 “계약론이 정치이론, 나아가서는 윤리이론의 만족할만한 기초를 제공(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220)”한다고 보았다. 칸트식 계약론은 최초 선택상황이 공정하면 합의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최초 선택 상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본체적 자아로서의 계약 당사자들을 상정”한다. 본체적 자아인 계약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합리성(rationality)’ 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고려하는 ‘합당성(reasonableness)’에 초점을 둔다. 즉, 칸트식 계약에서 계약자는 합당한 도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자기 이익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계약 이전에 도덕 기준이 이미 존재함을 의미한다. 칸트식 계약론에서는 계약이나 합의와 별개로 도덕적 객관성이 존재한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과 상관없이 존재하며, 칸트는 이를 도덕법칙으로 보았다. 즉, 도덕은 계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홉스식 계약론에서 도덕 규범을 산출하는 역할을 했던 계약은 칸트식 계약론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계약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한 도덕적 법칙을 근거하거나 정당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실제로 채택된 도덕 법칙에서 종종 부분적으로 숨겨지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원칙들을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발견적 장치(heuristic device)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계약 장치는, 어떻게 사람들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동등한 도덕적 지위의 아

이디어를 표현하고 반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치는 반영(reflect)보다는 계약자의 거래하는 힘에서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AR: 125)

홉스식 계약론에서 도덕은 계약으로부터 파생되지만, 칸트식 계약론에서 도덕은 계약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대상이다.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계약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덕을 계약을 통해 발견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은 '발견적 장치'이다. 계약은 옳고 그름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미 계약 이전에 옳고 그름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앞서 존재하는 도덕 법칙을 검토하고 구현하는 도구이다. 즉, 계약은 도덕 실행을 위한 장치이다.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을 "칸트 도덕 법칙의 계약주의적 메아리(echo)(AR: 126)"라고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도덕의 범위 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합의는 도덕의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칸트의 계약은 '실제 계약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단순한 개념(idea)이다. 이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법이나 정책의 정의나 부정의를 시험하기 위해 계약을 이용한다. 칸트에 의하면, "시원적 계약(original contact)에서 해당 법이나 정책이 모든 구성원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규칙은 틀림없이 정의롭다(이종은, 2015: 100)."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정당화를 구성하여" 모든 구성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다(Vernon, 1995: 308). 본체적 자아인 계약자가 공정한 상황에서 합당한 원칙을 선택한다는 이상적 가설을 롤스는 '원초적 입장'으로 구체화한다. 이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정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공정한 조건으로 구성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설정한다. '무지의 베일' 개념에 내포된 롤스의 가정은 '불평등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판단은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근거해야만 정당하다. 롤스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평등은 "우리가 우연히 가지게 된 어떤 속성이나 재능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특권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분의 원칙(principle of desert)을 이끌어낸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은 "각자가 어떠한 속성과 재

능을 가졌는지를 모르게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속성과 재능과는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원칙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이종은, 2015: 105). 따라서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원초적 입장에 따른 선택은 필연적으로 옳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

계약의 권위는 동의가 아니라 도덕에 근거한다. 즉 계약의 권위는 도덕의 권위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칸트에게 도덕 법칙은 절대적(categorical)이다. "도덕법칙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AR: 127)" 그러므로 계약에도 구속력이 있다. 계약의 권위가 가지는 정당성은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이 의무 도덕의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칸트적 전통에서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성이라는 도덕에 있다.

홉스식 계약론과 달리, 칸트식 계약론에서 계약은 도덕원칙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지 아닌지 여부는 계약이 아니라, 도덕법칙이 결정한다. 칸트는 도덕론에서 비이성적 존재에게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 칸트는 사실상 비이성적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힘이나 이성이 부족한 존재를 도덕적 고려 범위에 넣을 것인지는 도덕법칙에 의거한 추가 논증이 필요하다.[16] 롤랜즈는 칸트 계약론이 기존 계약론이 가지는 '힘의 균등 조건'과 '이성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옹호할 계약론 버전은 계약을 칸트의 관점에서(in Kant's sense),어떤 도덕

16) 칸트에게 도덕적 지위는 이성의 자율성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로부터 발생한다. 이성적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는 이성적 추론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이성에 의해 결정하지 못하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이다. 자율성은 칸트가 이성적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근거이며, 가치로 인해 권리를 갖는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고 가치가 없으며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권리를 갖기 위한 자격요건을 이성이 아닌 의식으로 규정한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성)을 갖추어야 하고,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 고려를 받을 요건(의식)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핵심은 도덕적 고려를 받을 요건은 이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률(the Moral Law)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현대 도덕적 사고의 토대인 동등한 고려의 원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계약의 역할은 이 원칙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적절히 설명되고, 적절히 이해되었을 때, 힘의 평등과 이성 조건 둘 다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겠다. 그러므로 계약 입안자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략 동등한 힘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계약의 보호에 대한 수령자가 이런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수반하지는 않는다.(AR: 128)

칸트식 계약론에서 계약 이전에 도덕이 존재하고, 계약은 도덕에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에 도덕이론에 의해 도덕적 지위를 규정해야하고, 계약은 이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계약은 가설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인 행위자가 어떤 규칙을 검토하는 가상적 사고이다. 선택 상황 속에 있는 본체적 자아는 이상적으로 이성적이기 때문에 본체적 자아가 하는 선택은 이상적으로 도덕적이다. 칸트식 계약론은 계약론적 합의를 이상화하여 전략이나 상대적 협상능력 등의 역할을 삭제한다. 따라서 본체적 자아의 결정은 타인과의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실제적 동의'가 없어도 공정한 조건으로부터 이미 공정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홉스식 계약론에서 필요로 하는 '상호 이익'을 토대로 하는 합의의 속성이 칸트식 계약론에서는 약화된다. 칸트식 계약론에서 "상호성은 당위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약한 의미의 상호성이다(변문숙, 2013: 238)." 이를 두고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론이 힘의 평등 조건과 이성 조건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칸트식 계약론은 도덕적 인격들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모두의 이해관심을 비편파적(impartial)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회계약 개념을 도입한다. 롤랜즈의 목적은 롤스 이론에서 '계약의 합리적 선택' 이전에 '계약이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합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3) 전통적 관점의 논리적 오류

롤랜즈는 '계약론이 비인간동물의 직접적 권리 소유와 양립할 수 없

다.'는 주장에 담긴 논리 구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P1. 계약론에 따르면 도덕적 권리와 의무(duties)는 실제의 또는 가상적 계약의 존재에 의존한다.

P2. 계약과 그 가운데 구현된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입안자들은 이성적 행위자로 생각되어야 한다.

P3. 그러므로 계약과 계약이 구현된 도덕적 권리와 의무는 오직 이성적 행위자들에게만 적용한다.

P4. 비인간동물들은 이성적 행위자가 아니다.

P5. 그러므로 계약과 계약이 구현된 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비인간동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P6. 직접적 도덕적 권리는 계약과 계약이 구현된 권리와 의무에 의해 포함된 개인들에 의해서만 소유된다.

C. 그러므로 비인간동물은 직접적 도덕적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다. (AR: 129)

롤랜즈는 이러한 가정이 홉스식 계약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위 논증 형식에서 P2가 P3를 도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계약 입안자가 이성적 행위자이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 적용 대상이 이성적 행위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 계약 입안자와 계약에 따른 혜택의 수혜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P2에서 P3로 이동은 정당화가 제공될 수 있을 경우에만 정당한 추론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화가 없다면, P2에서 P3로 이행은 논리적 비약이다. 롤랜즈는 P2와 P3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가정을 검토한다.

P2(a). 계약자가 아닌 어떤 개인은 계약 조건의 대상도, 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AR: 130)

P2(a)는 P2와 P3사이를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오직 홉스식 계약론에서만 가능하다. 홉스식 계약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계

약자에게 해를 가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따라서 비이성적 존재와의 계약은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적 존재로 전제되는 계약자가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못할 존재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홉스식 계약론의 계약자는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되는 자유의 손실을 계산하여,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즉, 동의는 타산적 기준을 가진다. 각 계약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계약에 동의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비이성적인 존재는 계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계약으로 인한 자기 이익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성적인 존재와 계약을 할 수 없다. 홉스식 계약론에서 계약자의 범주는 곧 계약 혜택을 수령하는 자의 범위와 같으므로 이성적인 존재만을 계약의 당사자이자 계약의 수혜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P2(a)는 홉스식 계약론의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칸트식 계약론은 P2(a)를 설명할 수 없다. 칸트식 계약론에서 힘이나 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존재를 계약의 고려 범위 안에 둘 것인지 여부를 계약이 결정하지 않는다. 계약 이전에 도덕법칙으로부터 도덕적 고려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약 자체에서 비이성적 존재를 배제해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식 계약은 상호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상호 존중의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계약을 활용할 뿐이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닌 존재라고 해서 계약에 따른 혜택을 박탈할 근거가 칸트식 계약론에는 없다. 즉, 칸트식 계약론에서 P2와 P3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없다. 롤랜즈는 “P2에서 P3로 비약은 잘못된 것이며, 칸트식 계약론은 계약을 고안할 수 있는 존재들만이 계약에 의해 부여된 보호의 수령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AR: 131).”라고 결론짓는다.

2. 동등한 도덕적 고려와 존중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론을 계승한 롤스의 계약론을 받아들인다. 롤스의 계약론은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계약과 독립적으로 공정의 도덕이 가지는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롤랜즈는 다음과 같은 가상 상황을 제시한다(AR: 8-11). 나뮤(namuh)라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입하였다. 이 외계인들은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인간고기를 얻기 위해 인간을 기르고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지구로 왔다. 또한 나뮤는 힘이 강력하고, 나뮤의 평균지능은 인간의 평균지능보다 훨씬 높다. 나뮤와 인간 사이의 지능차이는 인간과 비인간동물 사이의 지능차이와 같다. 그리고 나뮤는 인간고기를 먹는 것을 즐기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채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특히 나뮤는 그들 사회 내에서 도덕법칙을 고수한다. 그들이 가진 민주주의 문화의 핵심은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이다. 평등의 원칙은 '각각의 나뮤가 동일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안에서 조차 동일한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의 평등 혹은 기회의 평등과 같은 서로 다른 해석이 경쟁한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 적절한 것이든지 동등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실제 평등의 묘사가 아니라 그들 각각이 어떻게 대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다. 각각의 나뮤가 어떤 인지능력, 운동능력, 기술,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동등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뮤 외계인들이 이러한 도덕법칙을 고수한다는 점은 그들이 도덕적 숙고능력이 있고 논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성적인 나뮤는 논쟁 안에서 상대 논증이 타당하다면 자신의 주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롤랜즈는 나뮤 외계인에게 인간농장 관습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논증을 시작한다.

1) 외계인의 침공: 평등원칙에 대한 고찰

롤랜즈는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에 근거하면 인간농장의 관습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내는 전략을 선택한다. 도덕원칙은 “도덕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필요한지”를 서술한다. 도덕원칙이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메타 윤리 원칙이다(AR: 11-12). 즉, 메타윤리원칙은 도덕원칙을 설명하고, 도덕원칙은 메타윤리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그들 사회에서 중요한 도덕 원칙으로 꼽힌다. 평등원칙은 다음과 같은 메타윤리원칙에 근거한다.

도덕 원칙: 각각의 나뮤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메타윤리 원칙: 적절한 자연적 차이(relevant natural difference)가 없다면, 도덕적 차이(moral difference)도 없다(AR: 12).

‘자연적 차이’는 도덕과 관계없는(non-moral) 차이이다. 도덕적이지도, 부도덕적이지도 않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차이이다. 평등의 원칙에 대한 메타윤리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 A와 또 다른 어떤 사람 B가 도덕적 평가를 내릴 만한 특징에 대해 동일하다면, A와 B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동일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A가 p라는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 속성이 도덕적으로 적절했을 때, 우리는 그가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 B는 p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B도 역시 선하다. 이 예에서 A에게는 선하다고 평가하고, B에게는 선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면 잘못된 평가이다. 즉, A, B 두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리려면 적절한 자연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상황을 조금 바꾸어, 어떤 사람 A가 p라는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 속성이 도덕적으로 적절했을 때, 우리는 그가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 B는 p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B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즉, 적절한 자연적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 대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 A는 p라는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

속성이 도덕적으로 적절하기에, 우리는 '그가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 B는 p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B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자연적 차이가 없다면, 도덕적 대우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AR: 13).

>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덕적 속성이 자연적 속성에 잇달아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는 메타윤리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개인을 대우하는 것을 또 다른 어떤 개인을 대우하는 방식과 다르게 정당화하려면, 두 개인들 간에 적절한 자연적 차이점(relevant natural difference)이 있어야 한다(AR: 14).

이를 인간과 나뮤에게 적용해보자. 가상적 상황에서 나뮤는 도덕적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받고 있다. 인간과 나뮤 사이에 적절한 자연적 차이가 없다면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과 나뮤를 대우하는 방식 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인간도 나뮤 처럼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반대로, 인간과 나뮤 간 도덕적 차이가 있다면,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과 나뮤를 대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나뮤 사이에 적절한 자연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 외계인의 침공: 도덕적 자격의 기준 검토

나뮤는 자신들이 인간과 다른 점을 세 가지 제시한다. 종 멤버십(species membership), 표현형 속성(phenotypic properties) 그리고 지능(intelligence)이다. 나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차이점 때문에 나뮤는 인간과 다른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종 멤버십(Species membership)

도덕적 고려가능성(moral considerability)의 기준으로 종 멤버십

(species membership)을 가정해보자. 이 기준에 따르면, '나뮤는 나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되고 존중받는다.' 인간은 나뮤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되지 못한다. 어떤 개인이 나뮤인지 아닌지는 그가 가진 유전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롤랜즈는 하나의 상황을 제시한다. 나뮤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던 자가 어느 날 우연히 검사를 하여 자신이 유전적으로 다른 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나뮤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받아온 도덕적 고려를 더 이상 받지 못할까? 그의 생물학적 분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받도록 하는 그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

> 생물학적 종류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과거에 존재했던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어쨌든 너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없었다. 너는 여전히 과거 일을 기억하고 과거와 동일한 흥미, 생각, 느낌 감정, 성향 등을 가진다. …… 결정적으로 너를 고려와 존중의 가치가 있게 만드는 너의 양상이나 특징이 무엇이든, 너의 생물학적 분류가 수정되어야 하는 평가를 발견한 것으로 인해 그것들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AR: 19).

본인을 나뮤로 알고 지내던 자가 생물학적으로 나뮤의 유전자 구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발견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며, 그가 가진 도덕적 자격(entitlement)에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 그의 생물학적 분류를 도덕적으로 존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생물학적 종(species)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덕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특징은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유전적으로 나뮤가 아니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와 존중을 받을 자격은 종 멤버십(species membership)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2) 표현형 속성(phenotypic properties)

표현형 속성은 외적으로 드러난 형질이다. 이 속성을 도덕적 고려 가

능성의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나뮤는 나뮤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고려된다. 인간은 나뮤의 외모와 달라서 도덕적으로 고려 받지 못한다.' 그러나 롤랜즈는 보통의 나뮤가 가지는 외모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기형의 나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반박한다. 기형의 나뮤가 가진 물리적 외모가 보통의 나뮤와 다르지만, 그의 정신은 보통의 건강한 나뮤와 동일하다. 이 나뮤에 대해 도덕적으로 고려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 우월주의(chauvinism)"이다(AR: 22).

> 기형인 나뮤가 나뮤의 평균적 표현형 속성 중 많은 부분을 갖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표현형 속성은 도덕적 고려가능성(moral considerability)의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AR: 21-22)

롤랜즈는 도덕적 고려가능성이 외모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나뮤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는 속성은 외적인 자질보다는 내적인 어떤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

(3) 지능(intelligence)

지능을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가능성을 부여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나뮤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고려된다. 인간은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나뮤와 인간 사이에 지능상 큰 격차는 모든 나뮤를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하고 인간을 도살해버리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논증은 가장자리 논증으로 반박할 수 있다. 나뮤 대부분이 인간보다 훨씬 지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참이지만, 일부 나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지장애, 뇌손상, 퇴행성질환 등을 가진 나뮤들, 그리고 유아 나뮤들이 포함된다. 만약 인간이 지능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소수의 일부 낮은 지능의 나뮤들에게도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나뮤들이 일부 불운

한 나뮤들에게 도덕적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꺼린다면, ‘지능’은 도덕적 고려가능성의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다. ‘지능’이라는 기준을 인간과 나뮤를 구분할 때에만 사용하고 나뮤 내에 지능이 낮은 자를 ‘지능’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준은 ‘지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 다행히도 대부분의 나뮤는 정신지체, 유야, 퇴행노인에게 권리를 주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지능을 거부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나뮤 집단과 성인 인간 사이에는 지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능은 두 사람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점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뮤들이, 도덕적 고려가능의 지위를 성인인간에게 주는 것을 부인하는 동시에, 불운한 부류의 나뮤들을 도덕적으로 고려가능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이 판단에서 지능의 기준에 의존할 수 없다. 만약 불운한 부류의 나뮤가 도덕적으로 고려가능하다면, 인간 또한 그래야 한다(AR: 22)

가장자리 논증은 동물의 도덕적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논증이다. 롤랜즈는 가장자리 논증의 강점이 ‘일반성(generality)’에 있다고 보았다(AR: 24). 어떠한 능력을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지 가장자리 논증을 적용하여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가장자리 논증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한다.

> ① 나뮤가 높은 지능을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 ② 나뮤 중에 높은 지능을 가지지 않는 나뮤가 있다.
> ③-a 높은 지능을 갖지 못하는 나뮤는 도덕적 자격이 없다.
> ③-b 높은 지능은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기각되어야 한다(AR: 23).

①과 ②를 주장하는 경우, ③-a로 다음 주장을 전개한다면, 일관성이 유지되어, ‘높은 지능’을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뮤들은 낮은 지능을 가진 소수 나뮤들에게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선뜻 주장하지 않는다.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지능’을 포기하지 않되, 낮은 지능의 소수 나뮤들에게 도덕적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직접적 권리’와 ‘간접적 권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택

한다. 이에 따르면, 높은 지능의 나뮤는 직접적 권리를 가지는 반면, 낮은 지능의 나뮤는 직접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로써 도덕적 대우를 받을 권리의 기준으로 능력을 적용했다. 그런데 낮은 지능의 나뮤는 직접적 권리를 가진 높은 지능의 나뮤와 어떤 관계를 가진다. 직접적 권리를 갖지 못한 나뮤들은 직접적 권리를 가진 나뮤와 유대관계가 있거나 유사점이 있다. 직접적 권리 소지자인 개인이 낮은 지능의 나뮤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직접적 권리 소지자와 관계성이 있다는 이유로 낮은 지능의 나뮤에게도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낮은 지능의 나뮤에게 '직접'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직접적 권리 소지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의미에서 간접적 권리이다. 사실상 낮은 지능의 나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볼 수 없다. 간접적 권리 소지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동이 잘못인 이유는 직접적 권리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발로 차는 행동은 자동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주인에게 잘못한 행동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 대신 인지장애자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경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간접적으로 도덕적 대우를 받는 대상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고, 단지, 직접적으로 도덕적 대상인 존재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자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랜즈는 ③-a를 도덕적 자격의 기준으로 거부하고 ③-b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롤랜즈는 도덕적 자격을 갖기 위한 '지능'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타당한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능'의 기준을 IQ 1000 으로 해야 할지, 500으로 해야 할지 도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또한 기준을 20으로 하면 왜 안되는지 정당화할 수 없다. '지능'이 또 다른 어떤 '능력'이라고 해도 가장자리 논증과 기준점의 임의성 때문에 반박된다.

롤랜즈는 위 가상 상황에서 나뮤를 인간으로, 인간을 나뮤로 치환하여 논지를 정리한다.

P1. 인간은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도덕적 권리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에 대한 자격을 포함한다.

P2. 인간과 비인간동물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는 없다.

C. 따라서 비인간 동물 또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도덕적 권리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에 대한 자격을 포함한다(AR: 27).

이 논증은 “비인간동물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부여한 것보다 많은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AR: 26-27).”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논증을 일반화한다.

P1. 집단X의 개별 구성원들은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도덕적 권리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을 포함한다.

P2. 집단X의 개별 구성원과 집단Y의 개별 구성원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는 없다.

C. 그러므로 집단Y의 개별 구성원 또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도덕적 권리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을 포함한다(AR: 27).

일반화한 논증구조는 인종차별 반대 주장이나 성차별 반대 주장의 논리적 형식과 일치한다(AR: 28). 싱어 역시 “인종이나 성에 기초한 차별 반대의 궁극적인 근거를 좀 더 엄밀히 검토해 볼 경우, 우리는 흑인과 여성, 그리고 다른 억압받는 인간 집단의 평등을 요구하면서 인간 아닌 존재의 평등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30). 이러한 주장은 인종차별반대논증이나 성차별반대논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 상관없이 비인간동물도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차별 반대주의 주장에서 핵심은 P2이다.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동물해방주의자들은 P2를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반대로 종차별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비인간동물 간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라고 제시한 종, 표현형 속성, 지능, 기타 능력은 롤랜즈에 의해 논리적으로 기각되었다.

롤랜즈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 간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없으므로 인간에게 대우하는 방식과 동물에게 대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17]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비인간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을 재고하기 위해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인간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고려와 존중으로 비인간을 대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일단 인간을 동등한 대우와 존중으로 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요구조건의 근거를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인간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즉, 동등한 고려 개념의 적절한 이해 자체가 인간과 비인간동물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AR: 29).

롤랜즈의 주장에 따르면 각 인간에 대해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비인간동물에게 동등한 고려와 존중으로 대우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롤랜즈는 인간 사이에 '동등한 도덕적 대우 방식'을 도출하는 계약론을 검토한다.

제 3 절 계약론적 동물권 옹호

롤랜즈에 따르면 롤스의 정의론이 현대 계약론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계약론적 논의는 롤스의 이론과 관련하여 설명

---

17) 싱어는 동등한 대우의 개념을 상술한다. 양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두 집단 구성원이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동물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처우하고,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싱어, 2012: 29). 즉, 평등이 동일한 처우(treatment)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설명하였다. 롤랜즈(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가 말하는 평등 역시 모든 이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하지만, 각 존재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우는 각 존재마다 달라진다. 결국 평등은 모든 존재의 서로 다른 이익을 동등한 비중으로 배려하라는 의미이다.

되어야 한다. 롤스의 이론은 칸트 계약론을 계승한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롤스는 이를 원초적 입장으로 구현한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가지는 기본 직관은” 무지의 베일을 통하여 개인이 가진 자질을 모르는 상태로 계약에 참여하게 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다(최훈, 2013b: 40). 롤랜즈는 롤스 계약론에 드러난 평등 개념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계약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한다’는 의무의 명제는 ‘어떤 대상이 응당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의 명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어떤 대상은 도덕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타자는 그 대상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할 의무가 있다.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의무는 수행되어야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롤스는 동물을 정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롤스는 『사회정의론』에서 자신의 정의론은 “인간들의 관계만을 포함할 뿐 인간이 동물이나 여타 자연과 가지게 될 관계는 논외로”한다고 명시한다. 게다가 “계약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방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제외해두고자 한다.”고 말한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38).

> …… 평등한 정의의 보장을 받을만한 자는 바로 도덕적인 인격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적 인격은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구분되는데, 첫째로 그것은 자신의 선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것은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욕구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 인격이 될 능력은 평등한 정의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 충분조건임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이 최소한의 요건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도덕적 인격이 필요조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나는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대다수의 인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실제적인 난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514-515).

롤스는 계약 당사자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서

로 믿고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원칙에 따라 행동(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163-164)"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설명한다.[18] 또한 그는 "정의감을 갖지 못한 자는 인간이라는 개념 아래에 포섭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498)"고 설명하면서 정의감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물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정되며,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게다가 롤스의 정의론은 인간의 생산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분배의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롤랜즈는 롤스가 정의감과 같은 도덕적 능력을 정의에 대한 자격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동물이 도덕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정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능력이 정의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여야하는데 이 부분을 롤스가 보류하였기 때문이다(AR: 153-154).

롤스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 및 동물들이 취할 수 있는 생활 형태에 대한 능력은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동정과 자애의 의무를 분명히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521). 다시 말해, 롤스는 계약론이 아닌 방법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의 토대를 제시하며, 동물에 대한 대우를 정의의 의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변문숙, 2013). 이에 대해 누스바움(2006)은 롤스가 제시한 원초적 상황에서부터 평등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애초에 계약에서 제외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장애자, 다른 국가의 시민, 비인간동물은 사회적 약자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고[19] 따라서 계약주체들의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동물이 정의의 영역과 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누스바움은 계약자가 이성적 존재이더라도 합의된 도덕 내용이 반드시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만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연민과

18) 이는 칸트가 계약자로 본체적 자아로 설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롤스의 경우 계약자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19) 롤스는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서 배제한 사회적 약자 중에 아동이나 영구적 정신지체자 등을 정의의 영역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동물은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비일관성의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한 롤랜즈의 비판은 제 4 장에서 다룬다.

동정은 고통을 안쓰러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잘못으로 여기고 바로잡으려는 통찰을 결여하며, 이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인간의 대우로 인한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 롤랜즈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는 롤스 이론 안에 담긴 논리에 따르면 동물 역시 정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직관적 평등 논변과 사회계약 논변

롤스 이론은 "사회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과 사회적 협동으로부터의 이익 분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장치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회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합의"이며 롤스가 논의한 권리는 정치적 권리이다. 롤랜즈는 롤스의 계약론을 "일반적인 도덕 원칙을 제공하는 다소 넓은 의미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롤스의 계약론을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분배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AR: 131).

롤스의 계약론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개념을 특징으로 한다. 계약 이전 상황을 평등한 원초적 입장으로 설정하고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을 세운다. 우선 계약당사자들이 여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원초적 입장'을 제시하는데,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에 의해 우연성이 배제된 도덕적 관점이다. 무지의 베일은 행동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자신이 속하게 될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계층, 재능 등을 모르게 하는 장치이다. 무지의 베일에 의해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최병두, 2005: 478). 이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롤랜즈는 이와 같은 롤스의 정의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논변

(arguments)을 직관적 평등논변(intuitive equality argument)과 계약론적 논변(social contract argument)의 두 가지로 본다.

> 첫 번째 논변(argument)은 분배 정의에 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 즉, 기회 균등의 이상(the ideal of equality of opportunity)과 그의 이론을 대조함으로써 작용한다. 이 이상을 구현한 정치적 체제를 롤스는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롤스는 그의 이론 즉,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이 우리의 숙고된 직관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바로 그 공평함(fairness)의 이상을 더 일관성 있게 자세히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을 직관적 평등 논변(intuitive equality argument)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논변은 그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입장의 이성적 행위자에 의해 채택된 원칙들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정의의 원칙들을 옹호한다. 나는 이것을 사회 계약 논변(the social contract argument)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AR: 133).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분배원칙을 정하기 위해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의 정의론은 사회계약적 자연 상태를 공정한 가상 조건 속에서 합리적 개인들에 의한 정의 원칙의 선택 상황으로" 재구성한다. "공정한 선택 상황에서 정의 원칙들을 도출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최병두, 2005: 479)." 롤랜즈는 롤스 이론에서 평등을 구현하는 장치인 '무지의 베일'의 아이디어에 롤스의 평등에 대한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직관적 평등논변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에 관한 직관적 개념을 롤스가 이론으로 구현한 것이다. 평등의 상황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도덕적 관점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 계약자가 선택한 원칙은 도덕적으로 공정한 원칙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사회계약 논변이다. 롤랜즈는 논변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두 논변 간 관계를 논의한다.

1) 직관적 평등논변

롤랜즈는 롤스의 정의론이 함축하고 있는 직관적 평등논변을 다음과 같

이 형식화한다.

P1. 개인 I가 자질 p의 소유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개인 I는 자질 p에 대한 도덕적 자격이 없다.

P2. 개인 I가 도덕적으로 자질 p에 대한 자격이 없다면, 개인 I는 자질 p의 소유로부터 생기는 어떤 이익에도 자격이 없다.

P3. 개인 I가 집합 S = {p1, p2, ..., pn}를 소유하는 것에 책임이 없는 상태로 집합 S를 소유한다.

C. 그러므로 개인 I에게 집합 S의 소유로 인해 생기는 이득(benefits)에 대한 도덕적 자격이 없다(AR: 133-134).

의도하거나 노력하여 특정 자질을 획득한 존재에게는 자질의 소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따라서 그 자질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도덕적 자격이 있다. 반대로, 자질의 소유자가 그 자질을 가지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따라서 우연히 그 자질을 갖게 된 자에게 해당 자질의 소유에서 파생하는 이득에 대한 도덕적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 이는 그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어떤 자질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고 임의적인 속성이라면, 그 속성을 근거로 도덕적 자격을 결정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로, 어떤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다. 그들은 그 지위와 그 자질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위와 자질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태생적 지위와 자질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이득을 얻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롤스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정치와 그것이 구현된 이상(ideal)인 기회의 평등을 위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원칙이다(AR: 314)."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parties)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되어진다. 그럼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롤스, 1971, 황경식 역, 1985: 34).

롤스가 무지의 베일 뒤에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을 숨긴 것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롤스는 어떤 자질을 갖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없다면, 즉 자질의 소유자가 그 자질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통제할 수 없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면, 그 자질로 인해 도덕적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롤스는 평등에 대한 통찰을 '응분'으로 반영한다.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질인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가 무지의 베일 뒤에 숨겨짐으로써, 이러한 책임 없는(undeserved) 자질이 도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공정한 선택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롤랜즈는 여기에 '간과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질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동등한 기회의 개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의미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undeserved) 많은 다른 자질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적 재능이나 능력에서의 불평등은 정확히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성별적 속성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 …(중략)… 그러므로 자격이 없는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성적 자질의 소유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이 부정의(unjust)하다면, 자격이 없는 자연적 재능의 소유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똑같이 부정의해야 한다(AR: 134-135).

롤랜즈는 자연적 재능이나 능력 역시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도덕적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롤스의 이론이 이 부분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2) 사회 계약 논변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 상황에 놓인다. 선택은 본체적 자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계약이다. 무지의 베일이 보장하는 공정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이성적인 본체적 자아에 의한 결정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전제된다. 선택에 임하는 자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자신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사회의 특성이나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과정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무연고적 자아(unencumbed self)'라는 비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자아개념을 수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아가 존재하는 사회적 배경과 공동체적 맥락에서 자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특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아는 일종의 추상적 의식, 즉 근본적으로 상황에 처한 주체(radically situated subject)가 근본적으로 유리된 주체(radically disembodied one)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Sandel & Anne, 1998: 21)

롤랜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한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은 '공평함의 직관적 테스트'를 구성한다. 선택을 결정하는 자는 자신이 어떤 조각을 가져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배적 선택을 하므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없기에 공정한 몫은 보장된다. 즉, 자신에 대한 정보 결여는 공평함을 보장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즉, 계약은 합의가 아니라 도덕적 평등에 대한 함축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 첫째, 원초적 입장의 개념은 실제로 원초적 입장을 점유한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점유자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에 전념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원초적 입장의 개념은 원초적입장의 점유자들의 본성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 존재하는 자아의 개념적 가능성 조차 주장하지 않는다. 그가 이런 가능성 중 어느 것에도 전

념하지 않는 근거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 단순히 발견적 도구(heuristic device)이기 때문이다(AR: 137).

원초적 입장은 사고 실험으로 기능하며, "적절한 도덕적인 원칙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인 고안물일 뿐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실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Klosko, 2005; 이종은, 2015: 107에서 재인용). 계약은 실제 계약 행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아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아의 본성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게 된다. 게다가 롤스는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적합한 제한 조건에 따라 추리하기만 하면 언제이든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으며 혹은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하게 되는 숙고를 모방할 수 있게"된다고 말한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157). 최소한 명의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서 적절한 제한에 따라 추론하는 것만으로 이 가상 상황의 심의에 임하는 것이다. 즉, 원초적 입장은 제한된 추론으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발견적 도구이다.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에 따라 숙고하는 과정에 진입(enter)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지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선에 대한 관념을 "하나씩 괄호로 묶어 없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원초적 입장에 설 수 있다." 이것은 "속성이 없거나 선에 대한 관념이 없는 우리 자신을 상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AR: 138)." 따라서 무연고적 자아가 될 우려는 없다. 롤랜즈는 이것이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발견적 지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3) 논변들의 상호 의존성

직관적 평등 논변과 사회계약논변은 서로 의존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원초적 입장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는 결국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지는 자질들의 열거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공평한 절차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지는 자질은 직관적 평등 논

변에서 나오는 원칙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묘사를 이리저리 바꾸어보면서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설명이 되도록 조정하고 정리한다.

조정되고 정리된 묘사는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librium)[20] 상태에 이른다. 특히, 넓은 반성적 평형(wide reflective equilibrium)은 "믿음 체계의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개별적인 도덕 판단의 집합, 도덕이론과 규범들의 집합, 그리고 배경적 지식들의 집합 사이의 상호수정과정을 거쳐 최종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실천적'이다(최경석, 2008: 66). 행위원리나 도덕원칙 또는 도덕적 믿음은 평가 대상이 된다.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정합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숙고된 도덕 판단[21], 도덕 원칙, 배경 이론 간에 충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정되면, 원초적 입장에 의해 산출된 원칙과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해 산출된 판단은 일치한다. 평등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어떤 원칙에 의해 확인되는지 알기 때문에 '반성적(reflective)'이다.

원초적 입장에 대한 묘사는 평등의 직관적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평등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원초적 입장을 묘사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쌍방향적 영향으로 우리가 세우는 원칙이 직관적 판단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직관적 판단 역시 원칙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직관적이지만 비반성적인 판단이 언제 기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직관적 평등논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AR: 139-141). 만약 직관적 평등 논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면 그 직관은 반

20) 노먼 다니엘즈(Norman Daniels)는 롤스가 『사회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 반성적 평형 방법을 "'좁은(narrow) 반성적 평형'과 '넓은(wide) 반성적 평형'"으로 구분한다. 좁은 반성적 평형이 숙고된 판단, 도덕원칙들 간 정합성을 추구했다면, 넓은 반성적 평형은 배경이론까지 추가하여 정합적이 되도록 한다. "숙고된 직관이 편견, 역사적 우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어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숙고된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Norman Daniels, 1979; 김명식, 2008: 198-199에서 재인용).

21) 숙고된 판단은 "정의감이 작용하기에 좋은 여건 아래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즉, 잘못에 대한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47-48)."

성적이며, 일관된 적용이 아니라면 그 직관은 비반성적이다.

> 어느 누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마땅하다던가, IQ70을 가지고 태어나야 마땅하다던가 하지 않다. 혜택을 못 받은 어떤 계층, 인종, 성별로 태어나야 마땅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분배의 몫은 이런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롤스가 널리 받아들여진 상식적인 정의적 분배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직관적 평등 논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적 분배의 상식적인 아이디어는 의심할 여지없이 직관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직관한다. 그러나 충분히 반성적이지는 않다. …(중략)… 정의의 직관이 반성적 직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직관적 평등 논변의 일관된 적용이다. 그러므로 이 논변은 원초적 입장의 옳은(correct) 설명을 결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원칙은 이것으로부터 도출된다(AR: 141-142).

롤랜즈는 무지의 베일 뒤에 어떤 자질을 가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관적 평등논변을 일관적으로 적용해야만 반성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롤스가 무지의 베일 뒤에 숨겨야 할 정보로 '종(species)'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반성적인 직관이라고 주장한다.

4) 원초적 입장의 본질

이상의 논의에서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종류의 상태가 아니며, 상황을 묘사하지 않는다. 원초적 입장은 '정보의 제한'에 의해 도덕에 대한 타당한 추론으로 안내하는 일종의 '추론 도구'이다.

> 나는 자질p를 가진다. 그러나 내가 p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내가 p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도덕성의 원칙을 채택하길 원할까? 이런 유형의 추론 과정에 참여할 때, 그것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오직 유의미한 의미에서,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을 점유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롤스의 논의는

단순히 위의 종류의 스키마에 부합되게 도덕성에 관한 그 또는 그녀의 추론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주목하는 방식이다(AR: 143-144).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것은 무연고적 자아를 상상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속성을 괄호로 묶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하나씩 단편적으로 숨겨서 생각해보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질a를 가지지 않는다고 상상하여 그 상황에서 어떤 도덕원칙을 선택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A원칙을 선택하였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가진 또 다른 자질b를 가지지 않는다고 상상했을 때,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숙고해본다. 그 결과 B원칙을 선택했다고 하자. 이렇게 각각의 자질 하나씩을 숨겨보면서 얻은 결과들을 수집하면, 적절한 도덕원칙의 집합 S={A, B,....}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롤랜즈는 특정한 자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imagine that)과 특정한 자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는 것(imagine what it would be like)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도덕적인 추론자가 남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론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남자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덕원칙이 채택되는 것을 보고 싶으냐?' 그 사람은 가설에 의하여, 남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가 남성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없다. 네가 특정한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그 자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는 것은 아주 다른 두 가지 일이다(AR: 144-145).

남자인 추론자가 자신이 남자라는 자질을 가지지 않음을 상상했을 때, 즉 여자라고 상상했을 때, 어떤 도덕 원칙을 선택할지를 답변할 수 있을까? 여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여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할 수 없어서 여자의 입장에서 원칙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해서 상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추론자는 단지, 여자가 선호p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추론에 임하는

계약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만을 모를 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선호를 가지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자는 어떤 자질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선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질 하나씩을 가려보면서 도덕원칙의 집합을 산출하는 추론을 거친다. 이는 개별 계약자의 이성으로 추론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상적으로 이성적인 계약자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원칙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른 원칙을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즉, 원초적 입장의 본질은 서로 다른 개별 행위자가 아니며, 상호 동의나 계약도 아니다. 편파성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질로 인해 편파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모르며, 그런 상태에서 도덕원칙을 선택해야한다는 아이디어가 롤스 이론의 본질이다.

2. 원초적 입장의 확장으로서의 공평한 입장

롤스는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자가 의도치 않게 소지하게 된 속성으로 인해 이득이나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원초적 입장으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롤랜즈는 롤스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질로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 하는 속성으로 제시한 것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롤랜즈에 따르면 종(species) 역시 의도적으로 획득한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이성능력 역시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가지게 된 것이므로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전통적 계약론은 계약자간 힘이 균등할 것과 계약자가 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약자와 비이성적 존재를 어떻게 계약에 포함시킬지는 계약론에서 동물권을 다루기 위한 선결문제이다. 롤랜즈는 롤스의 계약론이 적절히 이해된다면, 힘의 평등 조건도 이성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롤스 정의론에서 힘의 평등조건과 이성 조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홉스식 계약론에서 계약의 권위는 암묵적 합의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에 대한 동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온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계약론에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와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계약론적 거래가 비등한 힘을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조건은 힘의 평등 조건이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은 힘의 평등조건을 약화시킨다.

> 원초적 입장은 다양한 계약자들(the muliplicity of contractors)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계약적 상황이 한 명 이상의 계약자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자들이 대략 동등한 힘을 가질 것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다(AR: 148).

원초적 입장은 추론 장치이다. 추론은 한 개인의 사고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명을 초과한 계약자는 우연적 요소일 뿐이다. 원초적 입장에 임하는 자가 본체적 자아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개인들이 '본체적 자아'라는 하나의 개인이 된다. 자기의 경험적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관점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편 타당한 원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체적 자아는 이상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 즉, 칸트로 보아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편화될 수 있는 도덕적인 법칙에 합의하게 되기 때문이다(Chappel, 1998; 이종은, 2015: 102에서 재인용). 본체적 자아는 타산적 합리성을 넘어 보편적 합당성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본체적 자아의 역할은 공적 정당화이다. 한 개인에게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하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한다. 이는 필연적인 동의이기 때문에 실제적 동의가 아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당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당사자를 본체적 자아로 설정함으로써 그가 공정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은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자인 계약자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

서 계약자들 간 힘의 크기 비교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동등한 힘을 가진다는 전제는 필요 없게 된다.

롤스가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본체적 자아를 가정하는 방법이 무지의 베일이다.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하는 장치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때문에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는 본체적 자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무지의 베일은 계약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하여 계약자가 계약에서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게 한다. 본체적 자아는 합당성을 추구하는 계약자를 보장한다. 계약 목적이 합리적 이익 추구에서 합당한 원칙 발견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본체적 자아인 계약자에게 합당성이 우선적 기준이고, 합리성은 부차적 기준이다. 공정한 원칙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홉스식 계약론에서 계약자가 가지는 이성은 합리성이었다면, 칸트식 롤스의 계약론에서 계약자가 가지는 이성은 합당성이다. 홉스식 계약론에서 계약자는 자기이익의 타산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성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 의사를 밝히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반면, 롤스의 계약에서도 역시 계약자는 어떤 원칙이 정당한지를 숙고해야하므로 이성적 행위자여야 한다. 홉스식 계약론와 칸트식 계약론은 모두 이성을 갖춘 계약자를 설정하되, 이성의 역할을 전자에서는 '계산'으로, 후자에서는 '정당화'로 각기 다르게 본다.

그러나 '이성적 행위자가 도덕원칙을 선택한다'는 것은 "도덕 원칙이 이성적 행위자만을 포함하고 이성적 행위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홉스식 계약론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계약자는 타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대상에게 계약의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식 계약론은 합당한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범위가 계약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의 범위와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이익의 측면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자질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성적 행위자가 만든 도덕 원칙이 이성적 행위자만을 포함하고 이성적 행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기각된다.

> 한 개인은 본인이 이성적이 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성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결정은 그의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것이다. 그러므로 직관적 평등논변에 따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질이며, 개인은 그 자질의 소유에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질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도덕적 자격이 없다. (AR: 148-149)

롤스는 직관적 평등 논변에 근거하여 무지의 베일 뒤에 어떤 속성을 가려야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인종, 성별, 지능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차이이다. 따라서 이 속성들의 소유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롤랜즈에 따르면, 이성의 소유 역시 도덕적으로 임의적이기에 이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이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성을 가진 개인이 이성을 갖기 위해 의도하거나 노력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다면, 이성의 소유에서 오는 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22] 여기서 이성의 소유로부터 오는 이익은 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이다. 즉, 계약의 수혜를 받을 자격 기준이 '이성의 소유'가 되면 직관적 평등 논변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요소에 '이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 직관적 평등논변과 사회계약논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볼 때, 개인이 이성적 행위자라는 지식은 원초적 입장에서 괄호로 묶여야 한다. 이것은 직관적 평등 논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식(common sense)과 정합적이다. 자신의 이성에 대한 지식이 원초적 입장에서 괄호로 묶여져야한다는 주장은, 원초적

22) 나뮤 외계인의 가상 사고 실험을 떠올려보자. '평등'이 도덕원칙이라고 했을 때, 평등의 도덕원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메타윤리 원칙은 '두 개체 간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없다면, 서로 다른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받아서는 안된다.'이다. 인종, 외모, 지능, 이성여부는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아니라고 판명되었다. 메타 윤리 원칙에 의거하여 두 개체 간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한다면 이것은 불평등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본인이 우연히 갖게 된 속성은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임의적 속성으로 인해 도덕적 대우가 달라진다면 불평등하다는 응분의 원리가 성립한다. 롤스는 이러한 생각을 무지의 장막에 반영한다.

입장을 특징으로 하는 롤스 방식의 하나로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 거기서 참여자들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일반적인 원칙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에 대한 특정한 지식만 갖고 있지 않다. 이성적 행위자가 될 것이라는 지식은 자신의 자질에 대한 특정한 지식의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괄호로 묶여져야 한다. (AR: 150-151)

직관적 평등논변이 사회계약논변의 원초적 입장에서 가려져야하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이성적 계약자는 '원초적 입장을 벗어났을 때 이성적 행위자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무지의 베일 뒤에 감추어진 채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세상에서 이성적 행위자로 존재한다'는 지식은 종이나 성별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신의 자질'에 속하는 종류이기 때문이다. 즉,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 상황에 놓인 계약자가 본체적 자아로서 이성을 가지고 도덕원칙을 숙고하고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자신이 세상에 놓여졌을 때 이성적 행위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야 한다. 세상에 나아간 자신이 비이성적 존재 일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이성적인 상태에서 비이성적 존재를 고려하는 원칙을 수립할 것이다. 즉, 계약에 임하는 자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계약의 혜택을 이성적 존재만이 향유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롤랜즈는 '타산적 합리성'의 이성을 철저히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초적 입장' 개념 자체에서 '비인간 동물을 도덕의 영역 밖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오히려 직관적 평등 논변을 일관적으로 적용한 원초적 입장의 묘사에서 추론한 원칙은 이성적 존재와 비이성적 존재에게 동등하게 도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2) 홉스적 계약론의 흔적 제거

홉스의 계약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계약이 정의를 결정했다. 반면, 롤스 계약론에서 정의의 도덕은 계약 이전에 정초된다. 계약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된다. 직관적

평등논변과 사회계약론적 논변은 서로 영향을 주어 조정을 거치면서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롤스 이론이 가지는 논리 구조는 칸트적 계약론에 가깝다.

롤스는 동물을 정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롤랜즈는 이것이 롤스의 비반성적 직관이라고 보면서 반박한다. 먼저, 롤스의 이러한 직관은 롤스 자신의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직관적 평등논변은 개인이 의도한 선택에 의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닌 자질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리도록 한다. 가려져야 하는 자질은 도덕적으로 우연하게 소유하게 된 것으로, 그 자질의 소유에 대해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성', '종'은 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소유하게 된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에 가려야 한다. 이성과 종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 하는 요소로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직관적 평등 논변에 의해 얻어낸 '이성, 종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 한다는 평결'을 왜 뒤집어야하는지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롤스는 이를 논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한 결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AR: 154-155).

롤랜즈는 동물이 정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롤스의 생각은 홉스주의의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롤랜즈는 롤스 이론에 남아 있는 홉스식 계약론의 '힘의 평등 조건'의 흔적을 거부한다. 원초적 입장은 단지 발견적 도구일 뿐이다. 롤스의 계약 상황에서 계약자 "개인은 존재의 필요, 욕구에 관련된 일반 지식을 모두 소유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상적으로 모두를 위한 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AR: 156)." 계약론적 상황에서 최소 인원 한 명이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수의 계약자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계약자들 간 힘의 균형에 대한 조건을 논할 필요가 없다. 한명의 계약자는 본체적 자아로서 이상적으로 이성적이라고 가정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추론하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이상적으로 합당하다. 즉, 원초적 입장은 추론을 돕는 도구이고, 한명의 이성적인 계약자가 원초적 입장에 의한 추론으로 옳은 결과를 도출한다. 따라서 힘의 평등 조건에 의해 동물을 정의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롤랜즈가 지적한 또 다른 홉스주의적 흔적은 이성조건에 관한 것이다. 롤스가 동물을 정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계약을 고안할 수 있는 존재만이 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의 수령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롤스가 제안한 원초적 입장 그대로, 계약자 자신이 세상에서도 인간 혹은 이성적 행위자로 존재함을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경우이다. 계약자는 추론과 선택을 해야 하므로 이성적이며, 세상의 일반 법칙을 모두 아는 상태이다. 따라서 내가 언제든 비이성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조건은 모른다. 그렇다면 비이성적 존재가 될 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대비 즉, 규범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이다(AR: 157). 두번째로, 롤랜즈의 제안대로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자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이성적 존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계약에 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원초적 입장에서 이성적'이다. 이성적 존재만이 타당한 원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자는 세상의 일반 법칙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 속 나'에 대한 조건을 모른다.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내'가 이성적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야 한다. 이성적 존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이성적 존재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를 정의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에 있는 '나'는 이성(reasonableness)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도덕 규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나'의 자질이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규칙을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성적(reasonable) 계약자라면 계약의 혜택인 '보호'를 이성적 존재에게만 제한하지 않는다. 롤스 그리고 칸트식 계약론 어디에도 '계약 입안자가 곧 계약의 수혜자'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다. 롤랜즈는 계약자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되, 계약의 수혜를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은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이성적 존재를 계약의 수혜에서 배제할 수 없다.

홉스를 비롯한 전통적 계약론이 합리성(rationality)과 호혜성

(reciprocity)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계약의 핵심으로 보았다면, 롤스의 이론은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해 구성된 합당한(reasonable) 도덕 원칙을 정당화하는 것을 계약의 역할로 본다. 롤스의 계약은 호혜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자기 집단만을 위한 계약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이성적인 계약자인 본체적 자아가 자기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 직관적 평등논변에 따르면 이성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므로, 계약에서 고려하는 '모든 존재'의 범위 안에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홉스식 계약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자'는 계약에 포함될 수 없지만, 롤스의 계약론에서는 상호 동의라는 속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계약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특히, 원초적 입장은 이상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추론하여 옳은 도덕원칙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추론 장치이기 때문에, '동의'나 '힘'의 조건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 역시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 정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롤스의 이론에서 직관적 평등논변은 비이성적 존재를 정의의 영역 내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홉스식 계약론과 달리, 롤스의 계약론은 이성과 힘의 조건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동물이나 지적 장애인, 무뇌아, 치매 노인, 영유아 등 비이성적 존재에게 이성적 존재자가 체결한 계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계약자 자신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성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종인지에 대한 정보 역시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 한다. 이를 롤랜즈는 공평한 입장(impartial position)이라고 하였다.

3) 만물을 위한 정의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회가 되어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추론의 상황이다. 롤랜즈는 이를 도덕적 대우방식의 정의(justice)를 결정하는데 적용하고자한다. 그리고 그는 롤스의 계약에서 이성적 존재인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23]에게만

계약의 혜택을 준다는 점을 비판했다. 롤스의 주장대로라면 비이성적 존재인 치매노인이나 아기가 계약에 따른 보호 즉, 도덕의 범주 밖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이성의 소유여부가 스스로 획득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하는 임의적 속성이라고 말한다. 생물학적 종 역시 같은 이유로 무지의 베일에 의해 숨겨져야 하는 속성이다. 원초적 입장은 '노력한 대가로 얻지 않은 속성을 무지의 베일 뒤에 숨겨' 응분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면 도덕 행위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 종에 속하는지를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 하며, 그렇게 수정된 원초적 입장을 '공평한 입장'이라고 하였다.

'공평한 입장'은 평등을 적용하였을 때, 정의로운 세상이 어떤 것일지 선택하게 한다.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자는 이성적 존재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 속에서도 이성적인지는 알 수 없다. 계약자 본인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비이성적 존재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이성적 존재 역시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원칙을 수립할 것이다. 즉, 그들은 인간만이 권리를 갖는 세상이나 이성적 존재만 권리를 갖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을 가진 도덕적 행위자만이 계약에 임할 수 있다'는 조건은 계약에 임할 수 없는 비이성적 존재를 계약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계약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성을 통해 세상의 도덕법칙을 추론하고 선택한 계약자가 원초적 입장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성적 존재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와 계약 수혜자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추론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의 부재로 도덕적 사고나 추론을 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 도덕적 책무는 없다. 호혜성이 제

---

23) 홉스식 계약론은 이성의 타산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롤스와 롤랜즈의 계약론에서 이성은 도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의미에 가까워보인다. 따라서 이성의 소유자는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이고 이성을 소지하지 못한 존재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다.

거된 조건에서 도덕적 책무와 도덕적 권리는 독립적이다. 도덕적 책무는 이성적 존재에게만 주어지지만, 도덕적 권리는 위에서 논증한대로 이성적 존재의 여부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성적인 계약자는 비이성적 존재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약의 수혜를 확장해야한다. 때문에 비이성적 존재는 정의의 대상에 포함되며, 도덕적 피동자(moral patient)로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에 대한 평가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인정하고 정의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롤랜즈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 그리고 도덕적 주체의 개념을 고찰한다. 또한 전통적 계약론이 동물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검토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인간중심적 관점을 발견해낸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편견으로 보고 수정을 제안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롤랜즈의 이론은 계약론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권을 옹호하는 논변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계약론으로 비이성적 존재의 권리를 논의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그러나 롤랜즈의 이론이 가지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먼저, 롤랜즈의 논의에 근거하여 비이성적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인간과 동물에게까지만 범위를 한정하고 식물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에서 합리성을 제거하면 호혜적 목적의 동기가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자에게 도덕적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하는데, 홉스식 계약론은 이를 자기이익에서 찾았다. 그러나 롤랜즈는 롤스의 계약론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계약의 이해타산적 동기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다. 그렇다면 롤랜즈는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생략된 롤랜즈의 이론을 계약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존의 계약론은 타자의 동의를 통해 정당화한다. 그러나 롤스와 롤랜즈의 계약은 독립적인 개별자의 추론과정으로 계약을 설명한다. 특히 롤랜즈는 계약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힘의 균등 조건을 기각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없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 1 절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에게 직접적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동물을 도덕적 피동자로 포함시키는 논리를 타당하게 구성해야하는 과제를 갖는다. 특히, 권리의 주장은 동물에게 내재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롤랜즈(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는 동물이 의식을 가진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롤랜즈(2015)는 동물이 도덕적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주체를 도덕적 행위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기존 인식은 도덕적 추론이성을 갖춘 대상만을 도덕적 주체(moral subject)로 인정한다. 즉, 주도면밀한 이성적 추론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이성적 추론'에 따른 표면적 행위와 '공감과 같은 도덕적 감정'에 따른 표면적 행위가 동일하다고 해도, 전자만이 도덕적이고 후자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롤랜즈는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덕적 주체를 '도덕적 감정을 소유한 존재'라고 새롭게 정의한다. 이성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덕적 감정을 동기로 하여 행동을 수행하는 것 역시 도덕이라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롤랜즈는 동물이 정신적 주체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의 수혜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적 주체에 포함함으로써 도덕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롤랜즈(2009)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는 직관과 동물과 인간은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직관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반성적 평형 방법으로 계약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직관은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직관이 있음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윤리적 타당성을 갖지는 않는다. 위 두 가지 직관을 동시에 설명하려는 간접적 지위이론은 비이성적 존재가 이성적 존재와 관련이 될 때만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반성적 평형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간접적 지위이론을 검토했을 때 가장자리인간을 예외로 두는 등 모순을 보인다. 또한 롤랜즈는 롤스 이론 내에서 등장하는 '응분' 개념을 통해 '비이성적 존재라는 것'과 '비인간동

물 종이라는 것'이 도덕적 지위에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롤스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 롤랜즈는 인간중심주의적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계약론은 사회 구성 혹은 국가 수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계약과 도덕의 관계를 역전시킨 새로운 계약론의 등장에 계약의 역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롤랜즈는 이에 초점을 두어 계약론적 설명으로도 동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기존에 싱어의 동물복지론과 리건의 동물권리론으로 양분되는 동물윤리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롤랜즈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나 덕윤리를 통한 동물윤리 논의가 가지는 한계점을 계약론적 동물권 주장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1. 주체성의 재해석과 도덕적 정의의 범위 확장

롤랜즈(2015)는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와 '도덕적 피동자(moral patient)'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보았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추론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이다. 도덕적 행위자는 깊이 숙고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이성적 존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이성적 추론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추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가 가진 '적극적 자율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이성적 존재의 행동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자의 판단 결과라는 점에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율적인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성적 존재는 그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에게 본능에 따른 행동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데 이것은 존재자가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은 의무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행위자이고, 비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다.[24]

도덕적 행위자의 상대적인 개념인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인 행동을 받는, 당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도덕적 행위자의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피동자에게 행하여진다.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행동을 당하는 자이다. 행위자가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존재를 고려하는 것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대우를 받는 존재를 도덕적 피동자라고 한다. 동물 윤리의 쟁점은 동물이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물이 도덕적 피동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이다.

동물을 도덕적 피동자로 여기지 않는 관념은 동물이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25] 그러나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음'과 '도덕적 행동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도덕적 행위자가 이성적 추론을 통해 도덕을 도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로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이성적 존재의 도덕적 추론은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은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져야한다.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세상의 도덕 원칙에 의해 자기의 삶에 좋거나 나쁜 영향을

24) 비이성적 존재 중 비인간동물이 도덕적 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인간동물이 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드그레지아(David DeGrazia), 크락크(Stephen Clark), 사퐁지스(Steven Sapontzis), 플루하르(Evelyn Pluhar)가 있다. 도덕적 행위자는 감정, 기억, 목표지향 행동을 포함한 능력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비인간동물은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랜즈(2015)는 동물이 도덕적 행위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적 행위자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동물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가 '추론이성'을 통해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 그를 비판 혹은 칭찬할 수 있다고 여긴다.

25)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 대우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이므로, '동물이 도덕적 피동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동물이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윤리는 동물이 도덕적 피동자로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받을 수 있는, 즉, 자신의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동물은 도덕적 추론능력이 없지만 자기가 처한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를 도덕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에서 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도덕적 피동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도덕적 권리를 '도덕적 이성을 가진 도덕적 행위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오류이다.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는 별개의 개념으로 도덕적 권리를 가질 자격은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가질 자격은 '도덕적 행위를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존재'에게 부여된다. 이 두 가지 계열의 개념을 서로 얽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는 도덕적 추론이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고, 단지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 혹자는 어떤 존재가 도덕적 추론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지라도,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이성적 존재의 입장에서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행동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동을 비이성적 존재에게 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생각의 바탕은 '호혜성'이다. 즉, 도덕적 의무를 가진 자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관념은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호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도덕이론인 계약론적 윤리에서 호혜성을 제거하는 작업은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도덕적 피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계약론의 호혜성을 약화시키는 칸트식 계약론에 의존하고 있다. 호혜성을 제거한 결과 비이성적 존재도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되고 계약의 수혜 즉,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의 개념을 철저히 분리하여,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 존재와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존재의 기준을 별개로 두었다. 동물은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피동자이므로, 도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이면서 도덕적 피동자이기 때문

에,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도덕적 권리도 가진다. 물론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불균형하다. 인간중심주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인간의 지위를 격상하고 동물의 지위를 격하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특히 롤랜즈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계약론'에서 이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 윤리 원칙 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그는 계약의 호혜성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주체는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하는 아이디어의 밑바탕에는 '도덕은 추론이성을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롤랜즈(2015)는 도덕적 동기를 이루는 근거가 추론이성으로만 도출된다는 관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와 도덕적 주체(moral subject) 개념을 분리한다. 도덕적 행위자는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기에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도덕적 주체는 '때때로 도덕적 고려(moral consideration)에 의해 행동하도록 동기화되는 존재'이다. 도덕적 행위자는 평가 대상으로 정의되고,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동기에 관련하여 정의된다. 롤랜즈는 행동에 대한 평가와 동기에 대한 평가를 구분한다.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 추론이성을 동기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존재라면, 도덕적 주체는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롤랜즈는 도덕적 행동이 추론이성을 통해서 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론이성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롤랜즈(2015)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백치』의 등장인물 미스킨(Myshkin)을 비판적 도덕적 반성능력을 가진 멜로우(Marlow)와 대조시켜 설명한다. 미스킨은 선해 보이는 행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행동들의 동기는 연민이나 공감과 같은 감정에 있다. 미스킨은 행동이나 정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없다. 미스킨은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A행동을 하고 싶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향성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부해야하는가?"라고 물을 수 없다. 즉, 자신의 동기에 대한 제어력을 가지지 않는다. 미스킨의 행동은 감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연적이다. 반면, 멜로우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가지고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검토를 거친 후 행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는 일관적으로 도덕적 선택에 이른다. 미스킨과 멜로우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미스킨과 멜로우의 차이는 비판적 검토를 거쳤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미스킨은 우연히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고, 멜로우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가? 즉, 미스킨은 도덕적 주체로 자격이 없는 것인가?

롤랜즈는 '미스킨을 도덕적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미스킨의 행동을 우연적 결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정적 반응과 행동을 연결하는 장치인 "도덕적 모듈"을 제안한다(Rowlands, 2015, 18-19). 여전히 미스킨은 비판적 검토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의 도덕모듈 작용에 대해 제어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규범성을 갖지 않기에 도덕모듈에 의거한 평결 역시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하는 의무의 종류가 아니다. 반면, 멜로우는 도덕 모듈에 의한 평결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동기 제어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멜로우의 동기는 도덕적인 것이고, 미스킨의 동기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인가? 롤랜즈는 이 묘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롤랜즈에 따르면 미스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덕적 주체이다. 첫째, 환경에 적절한 감성을 소유한다. 이는 감정이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특징을 추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고통 받는 누군가를 마주친 상황에서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행복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이를 기뻐하는 성향이다. 둘째, 감성은 규범적이다. 감성은 옳거나 그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평가는 이성적 존재자에 의존한다. 세 번째, 그의 규범적 감성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롤랜즈는 감성이 도덕적 모듈이라는 체계에 기반한다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을만한 메커니즘에 기반 했을 때 주어진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드는 특징에 대한 규범적 감성은 우연성에서 벗어난다(Rowlands, 2015: 33).

롤랜즈에 따르면 이성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덕성을 이성적 도덕에만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성뿐만 아니라 연민이나 공감

과 같은 도덕적 감정 역시 도덕적 행동의 토대로 인정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포유류나 가장자리 인간을 포함한 비이성적 존재 역시 도덕적 동기를 가지는 도덕적 주체이다.[26]

요컨대 동물은 정신적 주체이므로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도덕적 피동자이다. 동시에 도덕적 감정을 행동의 동기로 가질 수 있기에 도덕적 주체이기도 하다. 단, 동물의 행동은 추론이성을 통한 판단이 아니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은 도덕 행위자가 아니며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를 도덕적 주체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롤랜즈는 이를 재해석해서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공동체를 도덕적 주체의 모임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포함시킨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동물은 정신적 주체라는 것만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자격을 가지며 도덕적 지위를 갖고 도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즉, 동물은 계약의 수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동물이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동물에게 보호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된다. 동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배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의적 의무이다.

2. 롤스 계약론의 인간중심적 편견 탈피

롤랜즈는 도덕적 지위를 인간에게 국한하는 것은 반성적 평형 장치인 공평한 입장을 통해 검토하였을 때, 인간중심주의적 편견이라고 결론 내린다. 신상규(2019)에 따르면, 인간중심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인간은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적

26) 롤랜즈(2015)는 동물이 도덕적 감정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코끼리가 죽어가는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밤새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행동이 공감이나 연민 등의 도덕적 감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동물의 그러한 행동이 도덕적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이성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서 도덕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증의 핵심이다.

관점과 신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식만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인식적 자기중심성" 또는 "인식적 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 두 번째는 "윤리나 가치판단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이나 번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행위의 목표나 가치를 평가하며,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실천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중심주의가 비판을 받는 지점은 주로 실천적 인간중심주의이다. 이것은 "인간 종족 이기주의"라고 비판받는다. 그런데 사실상 실천적 인간중심주의와 인식적 인간중심주의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비인간존재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나 해석 자체가 많은 부분 인간의 인식적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신상규, 2019: 247-248)."

롤랜즈(AR)는 이를 간파하고 자기의 종적 특성이나 이성적 존재자의 여부를 모르게 함으로써 인식적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관점을 취하고자 무지의 베일 뒤에 종과 이성적 존재의 여부를 가린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실천적 윤리적 관점의 인간중심주의를 '공평한 입장'을 통해 검토하게 하고 반성적 평형에 이르게 하고자 한다. 실천적 인간중심주의는 "도덕적 이해관계(interest)를 고려해야하는 도덕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인간으로 국한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도덕적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될 자격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덕적 피동자를 도덕적 행위자의 범위에 일치시키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이다(신상규, 2019: 248). 데이비드 군켈(David Gunkel)은 동물윤리가 도덕철학의 관점을 "피동자의 피동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말한다(Gunkel, 2012; 신상규, 2019: 249에서 재인용).

롤랜즈는 이러한 인식 변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계약론에서 찾아내어, 계약론적 윤리를 통한 동물권 정당화를 완성한다. 롤스는 반성적 평형을 강조하는데, "넓은 반성적 평형은 숙고된 도덕 판단, 도덕원칙, 배경이론들(background theories)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김명식, 2008: 195). 어떠한 통념을 검토 대상으로 두고 숙고된 도덕적 판단인지, 정당성

을 확보한 도덕원칙에 부합하는지, 배경이론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반성하는 것이다. 생명과학기술 발달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진화론적 사실이 배경적 지식으로 작용하면서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통념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윤리학자들은 이 통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싱어는 인간만을 도덕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 편견이며 '종차별'라고 주장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롤랜즈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계약의 혜택을 도덕적 행위자에게만 국한시켜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은 홉스식 계약론에서 계약당사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자가 가지는 계약의 동기를 자기이익에 두는 것을 탈피하고자 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롤스의 이론이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의 문제는 그 존재가 도덕적 지위와 유관한 속성을 실제로 갖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어떤 존재 x가 속성p를 가진다. (ii)속성 p를 가진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 s를 가진다. (iii)따라서 존재 x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신상규, 2019: 256-257)." 롤랜즈는 이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속성 p가 도덕적으로 적절한 속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덕적 지위s의 기준 속성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주로 이성, 도덕성, 지능, 언어사용능력이 있다. 그러나 롤랜즈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장자리 논증을 통해 기각하거나, 도덕과 관계없고 임의적인 기준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76-79).

칸트식 계약론에서 계약당사자는 이상적으로 이성적인 도덕적 존재라고 규정된다.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에서 어떤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숙고하는 것 역시 이성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옳은 것을 찾고자하는 동기를 가지며, 자기의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합리적 동기를 제거하고 합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계약의 수혜를 받는 도덕적 피동자가 되기 위한 기준 속성 p를 '인간 종'이나 '이성'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동기를 가져야하는데, 칸트식 계약론에서는 이를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속성 p의 소유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를 근거로 도덕적 수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차이들"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권리가 제약받거나, 차단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분의 원리(principle of desert)이다(박선화, 2017: 141). 이러한 생각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으로 구현된다. 롤랜즈는 롤스가 칸트식 계약론을 수용하여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동기를 삭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수혜의 범위에서 동물을 비롯한 비이성적 존재를 배제한 것은 인간중심적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AR: 142). 그는 도덕 원칙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계약'에서 롤스가 동물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롤스가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이성을 결여한 동물과 이성을 결여한 인간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변문숙, 2013: 246).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 속성을 '이성'이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결여한 가장자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주는 비일관성을 보인다. 롤스는 "비록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515)." 여기서 '그러한 능력'은 정의감 또는 이성능력을 말한다. 이에 대해 최훈은 "동물을 정의의 영역에서 보류하면 정의로운 제도에 대한 위험이 되지 않고 가장자리 인간을 보류하면 위험이 커지는"지 되묻는다(최훈, 2013b: 48). 같은 생물학적 종의 구성원이라는 종차별적 근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롤스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어질 잠재성(potentiality)"로 도덕적 인격을 규정한다(Rawls, 1971, 황경식 역, 1985: 514). 따라서 영유아의 경우 지금은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지만 추후 이성적 존재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된다. 태어나는 시간은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나이'를 무지의 베일 뒤에 감춘다. 그러나 '나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성' 역시 스스로 노력에 의해 획득할 수 없고 단지 우연히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는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소유여부'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감추어지지 않는다. "똑같이 우연적인 속성인데 시간과 합리성을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최훈, 2013b: 49). 이러한 가정들은 롤랜즈가 롤스에 대해 '비반성적이고 인간중심적인 편견'을 가진다고 비판하는 근거이다.

또한 '다른 종(species)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생물학적 종이 바뀌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고 상상가능성만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능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이에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이 단지 사고 장치일 뿐이므로 현실적 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AR: 137). 또 성별과 인종이 바뀌는 것도 현실적 가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성별과 인종은 무지의 베일로 가려지는 속성으로 인정하면서 생물학적 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최훈, 2013b).

계약론에서 동물을 배제하는 자세한 주장은 주로 캐루더스에 의해 제기된다.[27] 캐루더스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Carruthers, 2011: 395-396). 동물 학대 행위는 행위자의 도덕적 품성을 반영하는데, 계약론의 존립을 위해 도덕적 품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계약론적 사회에서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내가 언제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우리가 소극적으로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규칙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행의 미덕을 함양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성향(disposition)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변문숙, 2013: 247-248). 그런데 동물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잔인한 품

27) 롤스는 사실상 동물이 정의의 영역에서 배제한 채로 계약론을 전개했을 뿐, 왜 동물을 정의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지 자세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루더스는 리건 등이 무지의 베일 뒤에 종(species)도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동물과 계약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였다.

성은 계약론적 사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성향과 반대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 학대 행동은 행위자의 품성이 잔인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변문숙, 2013: 246).

캐루더스는 아스트리드라는 인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주선을 타고 혼자 떠나면서[28] 모나리자 그림에 다트를 던지는 것과 고양이에 다트를 던지는 것을 비교하면서 후자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고양이에게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보다는 행위자의 잔인성을 표출한다"는 점 때문에 이 행동을 잘못으로 규정한다(Carruthers, 1992: 108-109). 번스타인(Mark Bernstein, 1997: 70)은 그가 우주선에서 판지로 만든 고양이를 진짜 고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트판으로 쓰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는 캐루더스의 품성표현적(character-expressive) 접근이 '고양이에게 다트를 던지는 행동'과 '판지 고양이가 진짜고양이 인 줄 알고 다트를 던지는 행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나 부당함 자체보다는 인간의 안녕과 관계 유지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감과 동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변문숙, 2013: 248-250)."

또한 캐루더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는 동물을 대변할 수 없다. 사전에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론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동물을 대변한다는 것은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계약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Carruthers, 2011: 392). 이에 대해 최훈은 "가장자리 인간을 정의의 영역에 포함하는

28) 우주선에 혼자 있다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이유는 아스트리드가 타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다. 간접적 도덕적 지위 주장 중에 행위자의 동물학대 행동이 추후 다른 이를 대할 때 악영향을 미칠까봐 혹은 다른 이들이 그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까봐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행위자의 품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기 위해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캐루더스 본인은 가장자리 인간에 대해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자신은 특정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한다(최훈, 2013b: 53). 또한 롤스의 계약론은 "편파적이 될 수 있는 특성들을 모두 배제한 다음에 최소수혜자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보고 결과적으로 어떤 도덕적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최훈, 2013b: 54).

캐루더스가 무지의 베일에 '종'을 가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나이, 성, 인종과 달리 종은 도덕적으로 무관한 요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의 차이를 도덕적 대우를 달리하는 근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에 근거한 다른 도덕적 대우는 타당하다(Carruthers, 2011: 393). 최훈(2013b)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이 타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이 믿는 명제라고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즉, 사람들의 믿음은 조정되고 정리되어 '반성적 평형'에 이르러야하는 '검토 대상'일 뿐이다.

캐루더스의 주장에 대해 변문숙은 "동물에게 계약론 외적인 도덕적 지위도 박탈하고 오직 인간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동물의 배려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므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감수성마저도 결여'한다고 비판한다(변문숙, 2013: 259). 캐루더스와 같은 간접적 도덕적 지위 주장에 따르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행위자의 인성을 악화시키고, 다른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가진 대상에게 동일한 행동의 전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가진 대상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런데 행위자의 인성에 미치는 악영향과 다른 직접적 도덕적 지위의 대상에게 미칠 잠재적 전이는 식물이나 무생물에게 대하는 행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간접적 도덕적 지위 주장은 '식물이나 무생물에게 대하는 행동은 상관이 없는지', '왜 동물에게 대하는 행동만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주장이다.

롤랜즈는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편견이 권리부여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였다.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이 도덕적 죄책감을 줄이고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도덕적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그런데 동물을 도덕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면 가장자리 인간을 도덕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지위의 대상에서 '동물은 배제하되 가장자리 인간은 포함하는 주장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덕적 지위 부여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3.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확립

싱어, 리건, 롤랜즈는 모두 인간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타당성을 동물에게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자면,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결론 내린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고려가 타당하고 동물에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과 동물의 종(species)구분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분석하고 '평등' 개념으로부터 주장을 전개한다. 따라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동물 윤리 이론은 기본적으로 평등에 대한 논변이다. 싱어는 평등을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으로 풀이했고, 이는 리건과 롤랜즈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그러나 싱어는 공리주의적으로 이 원칙을 실현한다. 각 이익을 동등하게 배려하기 위해 각 이익에 동등한 비중을 두는 것이다. 이는 선의 개념을 계산에 의존하는 공리주의적 정의의 방식이다. 그리고 리건 역시 "인종이나 성별이 무엇이 됐든 차이가 없다면 똑같이 적용하라"는 평등의 정신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대상이 어떤 생물학적 종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삶의 주체'의 속성을 가진다면 누구나 같은 권리를 갖는다. "싱어가 '이익'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리건에게는" 삶의

주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최훈, 2019: 43-44).” 한편, 롤랜즈는 평등의 근간을 ‘응분의 원리’로 보았다. 응분은 각 존재가 제각기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칭찬받거나 벌을 받는 다면 응당한 대우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책임 없는 속성으로 인해 도덕적 권리를 추가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연히 갖게 된 속성에 의해 평등하게 배려 받아야 하는 권리가 제약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이 의도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종’의 속성에 의거하여 권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롤랜즈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전제하는 평등의 근본적 원리가 ‘응분’임을 간파하고 계약론적 접근에서 일관된 적용을 요구한다.

또한 각 이론마다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쾌락의 최대화와 고통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쾌락을 얻으려는 선호와 고통을 피하려는 선호는 동물도 인간도 가지기 때문에, ‘평등’에 따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등하게 고려 받을 이익을 갖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지위를 가진다. 이익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싱어의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기준은 쾌락과 고통의 감각능력이다. 감각능력이 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에 대상이 될 자격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다.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를 적용하기 위해 도덕적 추론능력, 합리성, 지적능력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 “감각능력이 있는 모든 동물에게도 고통은 역시 고통이다(김진석, 2006: 120).” 인간과 다른 모습의 생명체가 겪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차이가 없다. 인간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인간동물의 고통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어떤 생명체가 계산을 할 줄 아는 것이나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존재가 고통을 겪을 때 가지는 해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리건과 롤랜즈 역시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중시한다. 리건은 삶의 주체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부여한다. 그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기쁨과 고통의 느낌을 가지는 감정적 삶'과 '복지이익'을 포함시킨다. 리건의 기준은 싱어의 기준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는 감정과 복지뿐만 아니라 믿음과 욕망, 미래감. 기억, 자각,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하는 능력, 시간을 관통하는 정신의 연속성, 미래감 등을 삶의 주체가 가지는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공리주의에서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을 도덕으로 여겼다면, 권리론에서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만이 도덕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싱어와 마찬가지로 행위나 도덕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본다. 다만 싱어는 이익을 가지는 존재 즉,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롤랜즈는 도덕 원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를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신적 주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리고 '정신적 주체'에 대한 설명은 리건이 '삶의 주체'라는 개념에서 나열한 것들을 종합한다. 다만 롤랜즈는 리건의 '삶의 주체' 개념과 '내재적 가치'의 연결에 타당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롤랜즈는 '정신적 주체'라는 개념 안에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즉, 욕구를 가진다.[29]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을 얻으려고 의도적인 행동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실천적 추론 능력'이다. 롤랜즈는 동물이 감정, 믿음, 욕망, 실천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행동하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율성'을 보인다고 연결한다.[30] 즉,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행동의

29) 여기까지는 싱어의 쾌고감수능력과 선호이익의 개념에 해당한다.

30) 롤랜즈는 소극적 의미의 자율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꾀하고 의도해야 한다. 자율적 행동이란 내가 의도한 것이지 우발적인 행위나 반사적인 반응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전기충격치료법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 치료법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③ 행동을 강제하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 머리에 총을 대고 강요해 한 행동은 자율적이라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믿는 것을 위해 내 방식대로 행동해야 한다(Rowlands, 2002,

목적을 설정'하고, 그 행동을 하면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리라는 실천적 추론을 바탕으로 행동을 의도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모든 것은 정신적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 주체라는 점이 도덕적 고려 대상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존재는 감정이 일어나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인식하고, 자기가 의도한대로 행동하고 싶은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가치는 우리가 그들을 도덕의 범위 안에서 고려해야하는 이유이다. 기준을 충족한 대상이 가치를 가지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논증은 리건의 논지전개방식과 같다. 다만 롤랜즈는 리건의 '내재적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신적 주체에게 도덕적 논의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논증한다. 요컨대 정신적 주체는 삶에 내면을 가지는 존재로 자신의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덕적 논의의 대상이며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롤랜즈는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의 자격기준을 논증하는 것보다 계약론적 도덕의 견지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는 계약에서 동물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한 후, 계약론적 도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신적 주체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전개한다. 편견을 깨부수고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도덕은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정신적 주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롤랜즈의 주장은 동물의 도덕적 가치나 권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리건의 권리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리건이 권리를 가지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롤랜즈는 기존 패러다임이 가지는 선입견 가득한 기준을 기각하고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롤랜즈는 사실상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의 구분을 없애고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기만 한 존재라면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싱어의 의견과 일치한다. 롤랜즈에 따르면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자

윤영삼 역, 2018: 53-54)."

신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자신의 삶이 어떤지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를 배려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게만 해당된다(Bernstein 1998; Rollin 1992; 김진석, 2006: 123에서 재인용).” 이를 롤랜즈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을 인식하는 내면을 가진 존재’로, 싱어는 ‘감각능력이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싱어와 리건과 롤랜즈의 이론에서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싱어는 이를 리건이나 롤랜즈와 달리 ‘권리’라는 용어로 언급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서는 권리 개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고통과 쾌락의 계산에서 도출될 뿐, 본래적 가치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리건은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본래적으로 또는 천부적으로 권리(natural right)를 갖는다고 논증한다. 그리고 롤랜즈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 보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을 근거로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AR: 93-97). ‘내재적 가치’의 기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내재적 가치의 기원도,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결론적으로 리건과 롤랜즈는 동물에게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을 ‘권리’의 형태로 부여하고 있는 반면, 싱어는 동물이 이익을 가진 존재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할 뿐,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싱어가 동물에게만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

권리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의 구분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의 관계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자만을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하는 관점은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인 도덕적 행위자에게만 도덕적 고려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관점 때문에 동물은 도덕적 고려를 받는 존재인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되지 않

았고 따라서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동물은 비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이기만 하면 도덕적 권리가 주어진다. 이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이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이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만을 대상으로 권리의 주장(claim-against)이 성립한다고 보고 도덕적 행위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도덕적 피동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롤랜즈 역시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행위자이기만 하면 의무가 주어지며, 도덕적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도덕적 행위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판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리와 의무의 대상자가 될 기준을 각각 독립적으로 세워서 '도덕적 권리의 소유 범위'와 '도덕적 의무의 소유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리 주장에서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적 피동자 즉 권리의 소유자로 인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보인다.

또한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윤리이론과 덕윤리적 동물윤리 주장은 직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덕윤리는 각 상황에 맞는 덕의 발휘를 중점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납적 방식으로 전개된다. 롤랜즈의 이론은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평한 입장을 통해 검토하게 한다. 즉, 덕윤리에서는 특정한 '덕목'을 기준으로 도덕적 결정을 한다면, 롤랜즈의 이론에서는 '공평한 입장'라는 검증된 판단도구로 구체적 사례들에서 상황판단을 하게 한다. 연역적 방법은 논리적이므로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응용윤리의 실천적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귀납적 방법을 유연하고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 롤랜즈의 이론은 연역적 방법으로 공평한 입장이라는 도구를 정당화하고, 이 도구를 이용해 구체적 사례에서 귀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도덕적 추론이다.

제 2 절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한계

앞서 인간의 생물학적 종이나 이성적 능력이 도덕적 지위의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논증하였으므로, 다음 과제는 새로운 기준을 타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롤랜즈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권리를 인간 그리고 동물에게 주어야 한다면, 식물은 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가? 이는 식물도 생명이 있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식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대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확장은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을 감응력(sentience), 생명, 생태적 가치 중 어느 것에 둘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롤랜즈는 감응력을 비롯한 의식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장하는 이론에서 감응력 기준에 대해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롤랜즈의 논의에 제기되는 또다른 비판은 계약론적 정체성과 관련된다.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론이 합당성을 합리성보다 우선시한 것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칸트식 계약론에서 합리성을 약화시킨 것을 더욱 강화하여 합리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합리적 동기가 아닌 합당한 동기의 계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벗어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원칙이라도 합당하다하면 선택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설정했다. 이로써 계약자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을 약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의 수혜자로 약자를 포함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나 합리성을 제거한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또한 상대방이 없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롤랜즈의 이론이 계약론에서 출발하지만 계약의 호혜성과 상호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 도덕적 배려의 범위 제한

롤랜즈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하는 정보에 생물학적 종과 이성의 소유 여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속성들은 속성의 소지자가 의도적으로 제어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원초적 입장을 확장하여 '공평한 입장'을 설정하였을 때, 도덕 행위자만 권리를 갖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자는 이성적 상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종일지, 이성적 존재인지 비이성적 존재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랜즈는 비이성적 존재인 동물이나 가장자리 인간을 도덕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약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덕적 행위자인지 아닌지, 인간 종인지 아닌지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속성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도덕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관적 평등논변에 어긋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자신이 인간일수도 비인간동물일수도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돌멩이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식물이나 무생물이 되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계약자는 자신이 인간으로 밝혀질지 비인간동물로 밝혀질지를 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식물인지 무생물인지 역시 몰라야 한다. 그렇다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을 위한 도덕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의문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인간 그리고 동물을 넘어서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다.

> 통상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이를 불식시키려는 경우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과 동물의 고통지각의 유사성에 비하면 동물과 식물의 진화계통수의 역사 또는 외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이나 반응 양태에 있어서 동물과 식물의 반응 메커니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와 간극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차이일 뿐 그것만으로 동물과 식물에 대한 도덕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한 종이 진화해온 역사에 가치론적 내지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면, 특정한 종이 특정한 능력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을 차별할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맹주만, 2009: 260-261).

> 나에게는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목표라면, 또 동물에게는 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고통을 피하며 한 동안 무사히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식물에게는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녀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만일 식물이 감각을 지닌 의식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의식이 갖는 어떤 능력이나 속성의 차이를 식물을 차별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을 경우, 불행하게도 동일한 이유에서 인간과 동물의 의식의 어떤 차이를 근거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맹주만, 2009: 268-269).

이러한 비판은 인간을 넘어선 범위로 권리의 범위를 확장할 때, 동물에게 까지만 확장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으로, 권리를 인간을 넘어서 동물에게 적용하려한다면, 식물이 권리를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식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동물 역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도덕적 차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차별로 규정했다면, 동물과 식물간의 차이, 나아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역시 부당한 차별로 여겨야 일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롤랜즈는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대상에 도덕적 배려를 부여하는 데에 반대한다(AR: 158-159). 자신이 식물인지 동물인지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임의적인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식물이나 무생물을 도덕의 대상의 범위에 두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무생물은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31] 즉, 공

31) 식물이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식물에게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랜즈가 설명하는 의식은 인지(cognition)에 가깝다. 롤랜즈가 정신적 주체를 고려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가 말하는 '의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자극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련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신경학적 능력을 가졌는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식물이 동물과 같은 신경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신경학적 근거를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신경계 발달이 하등한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

평한 입장에 서서 어떤 세상이 정의로운지를 선택할 때,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내가 무생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동물이거나 인간일 수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규칙을 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동물이라고 밝혀진다면, 세상에 적용될 도덕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나무나 돌멩이라고 밝혀졌을 때에는 도덕의 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무나 돌멩이는 세상이 어떻다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AR: 158-159).

롤랜즈가 언급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는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개념과 연관된다. 롤랜즈는 롤스 이론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계약자의 범위와 계약의 수혜자의 범위가 일치해야한다는 가정을 기각한 후, 계약 수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상이 어떤 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한정한다. 그는 이 개념을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정립한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57). 롤랜즈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서 가려야하는 요소로 종과 이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도입된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자 자신이 추후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식물과 무생물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도덕 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를 도덕 원칙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공평한 입장에서 확장된 무지의 베일에 의해 숙고되었을 때,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이 어떤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무나 돌멩이는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은 쾌고감수능력(sentience)에서 출발한다. 동물은 아픔을 느끼고 불쾌나 쾌의 감정을 느낀다. 이것은 동물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동물은 불쾌를 피하고 싶어하고, 쾌를 얻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불쾌를 선호하지 않고 쾌를 선호하는

으므로, 하등동물 역시 도덕적 고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결과로 나타난다. 즉, 동물에게는 욕망과 선호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인식한다. 또한 동물이 대상에 대해 쾌, 불쾌를 생각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2] 예를 들어, 인간은 다람쥐를 보고 '산에 살면서 도토리를 먹는 작은 포유류'로 인식하지만, 개는 다람쥐를 '산에 사는 도토리를 먹는 작은 포유류'로 인식하지 않을지라도 다람쥐에 대해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48-52).

그리고 동물은 'X를 하면 Y를 얻을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진다. 'X를 하면 Y를 얻을 것이다'는 일종의 가설이며, 가설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 실천적 추론이다. 여기에는 Y를 얻고 싶다는 욕망과 선호가 전제되어 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 행동의 반복을 통한 조건 형성이 아니라 의식적 행동이다[33]. 동물은 Y를 얻겠다는 의도로 X를 행한다. X의 행동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행동이다. 롤랜즈는 동물을 대상으로 각종 학습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42-55).

그러나 학습 실험은 제한적인 실험실 상황에서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실험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더 적절한 예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이다.[34] 원숭이는 고구마를 씻어먹으면

---

32) 물론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물이 생각하는 방식과 개념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동물 역시 대상에 대해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여 그들만의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33) 학습실험에서 물고기와 원숭이가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점에서 "물고기에서 멀리 진화한 동물일수록 실천적 추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 빨간 지렛대를 눌렀을 때 100번 중 60번을 보상하고, 파란 지렛대를 눌렀을 때, 100번 중 40번 보상하는 상황에서, 물고기는 빨간 지렛대를 60번, 파란 지렛대를 40번 선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원숭이는 어느 정도 확률을 파악하고 나면 빨간 지렛대만 계속 누른다. 물고기의 일치(matching) 전략과 달리 포유류의 극대화(maximizing) 전략은 보상비율과 무관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포유류는 보상횟수가 높은 선택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험결과이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47-48).

34) 1950년대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원숭이들의 집단행동을 관찰하였을 때 발견한 현상이다. 모래사장에 있는 고구마를 발견한 원숭이들은 모래 째 같이 먹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추론을 했기 때문에 고구마를 씻는 행위를 한다. 고구마를 씻어 먹어도 되고, 씻어먹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고구마를 씻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개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비둘기를 인식하고 비둘기를 쫓아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개는 '비둘기를 향해 달려가는 행동을 하면 비둘기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한다. 이 추론에 따라 비둘기를 향해 달려가는 행동을 실행한다. 이 때 개는 비둘기를 쫓아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의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추론에 따른 행동을 실행한 것이다.[35] 여기서 개가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외부에서 강요한 적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개는 소극적 의미의 자율성을 갖는다.[36] 동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롤랜즈는 이러한 동물의 특성을 동물이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존재라고 정리하였고, 따라서 정신의 소유자 즉, 정신적 주체라고 이른다.

거나 모래를 털어먹는 수준이었으나, 어느 한 원숭이가 물에 고구마를 씻어먹기 시작하자 다른 원숭이들에게도 전파되었고, 100번째 원숭이에게 그 방법이 전파되는 시점에 그 행동이 집단에게 습관화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례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개체의 수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종 전체에 해당 행동이 순식간에 전파된다는 점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원리'에 대한 관찰내용이었다(Lyall Watson, 1979). 그러나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원숭이가 실천적 추론을 통해 고구마를 씻어 먹는 행위를 '선택'한다는 자율성이다.

35) 비둘기를 쫓아버리는 행동은 비둘기를 먹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食)의 본능적 욕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자신의 거처가 아닌 처음 가보는 넓은 공원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과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행동을 훈련받거나 이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쫓아버리는 행동 자체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행동은 본능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 자율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36) 소극적 의미의 자율성은 적극적 의미의 자율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극적의미의 자율성은 반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롤랜즈의 분류에 따르면 칸트의 자율성은 적극적 의미의 자율성에 해당한다. 칸트에게 자율성은 존엄성과 도덕적 지위의 요건이다. 롤랜즈는 동물이 적극적의미의 자율성은 없지만 소극적의미의 자율성은 갖고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 논의에서 동물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긴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53-55).

>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정신적 삶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발견이다. 이 발견이 뜻하는 것은 동물도 '정신적 주체'라는 사실이다. 동물의 삶에도 '내면'이 있다. 다시 말해 동물도 자신의 삶이 특정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 삶이 즐겁고 유쾌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고 불쾌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동물답게 살기 위한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56).

롤랜즈에 따르면, 정신적 주체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도덕적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식물은 감정, 욕망, 선호, 실천적 추론, 소극적 의미의 자율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없고, 그들의 삶에 내면이 있다거나 그들이 정신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무생물은 물론이고, 식물 역시 정신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논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 식물을 포함하여 '종'이나 '능력'은 그들이 책임져야할 속성이 아니라서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다고 해보자. 계약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식물 종에 해당한다고 해도, 식물은 정신적 주체가 아니기에 세상의 도덕원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을 고려하여 도덕원칙을 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이다.

> 물론 생명이 없는 물건에게도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있다. 예컨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벽에 박았다면 내 차는 나쁜 환경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는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견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자동차는 환경이 자신에게 유쾌한지 불쾌한지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동물은 인식한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56-57).

롤랜즈가 '자동차'를 예시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의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유쾌한지 불쾌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를 지칭한 예라는 점에서 식물이나 생태계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당신을 배려할 의무를 가진다.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으로 가치 있는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한다(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57)." 그러나 식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이 대상을 인식하고 욕망, 선호를 가지며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내면세계와 정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세계와 정신이 인간의 그것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 인간의 경우 내면세계와 정신에 더하여 반성적 추론이 가능하기에, 동물보다 더 고차원적인 내면세계와 정신을 가진다. 기존의 권리 담론은 고차원적 사고나 반성적 추론을 거쳐야만 도덕이 도출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다. 비이성적 존재 중에서도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타자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행동 원칙을 수립할 때 그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은 '내면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동물은 내면의 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신의 소유자이고 따라서 정신적 주체이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의 지위를 갖고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되면서 권리를 갖는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롤랜즈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정신적 주체'를 내세워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은 배제하였다. "만일 생명체가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개체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생명체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김진석, 2005)."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적 존재만이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기에 식물이나 무생물적 자연요소는 도덕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 도덕적 대우를 받는 존재를 도덕적 피동자(moral patient)라고 했을 때, 인간은 도덕 행위자이자, 도덕적 피동자이다. 그리고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에 도덕 행위자는 아니지만, 정신적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피동자이다. 그러나 식물이나 무생물은 정신적 주체가 아니기에 도덕적 피동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도덕적 피동인과 그런 지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를 차별하는 세상을 선택한다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더 나아가 이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다. 자신이 도덕적 피동인도 되지 못하는 존재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컨대 자신이 돌멩이라면, 나무라면, 테니스공이라면 세상이 어떻든 상관할 바 아닐 것이다.
>
> 반면 의식이 있는 존재라면, 관심이 있다면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다. 환경이 나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덕적 피동인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피동인이 된다고 해서 특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피동인과, 피동인도 되지 못하는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신이 도덕적 피동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은 타당한 것이다 (Rowlands, 2002, 윤영삼 역, 2018: 122).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도덕 피동자(moral patient)가 자신의 환경을 인지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그는 삶의 질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대우를 구별해야한다고 말한다.

물론 동물을 넘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거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자연적 존재를 도덕으로 대해야한다는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 주장은 도덕적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다.[37] 생물중심주의에 따르면 살아있는 것은 선(善)이며, 따라서 살아있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는 생명중심주의나 동물윤리, 인간중심주의가 가지는 개체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

37) 인간중심적 윤리에 반기를 든 이론으로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를 꼽는다.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에 중심을 둔 개체론적 이론에 속하며, 생태중심주의는 생물적 요소뿐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소인 주변 환경까지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포함하는 전체론적 이론으로 분류된다. 전체론적 관점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이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말한다. 전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토양오염, 수질오염, 자원고갈, 에너지문제,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까지 우리의 윤리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정대영, 2012 :140)."

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대영, 2012: 145).

개체론적 관점에서 식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식물이 동물과 달리 '중앙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Singer, 1993, 황경식 외 역, 1997: 97). 최훈(2010)은 신경체계의 진화적 발달을 기준으로 '비의식적(nonconscious) 생명체', '의식이 있지만 자의식은 없는 생명체', '자의식적 생명체'로 나눈다. 기존의 담론은 반성적 능력이나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자의식적 생명체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롤랜즈, 싱어, 리건 등의 동물윤리학자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자격기준으로 '의식'을 내세우기 때문에[38] '자의식적 생명체'와 '의식은 있지만 자의식이 없는 생명체'를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포함되고, 식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배제된다. 식물이 의식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신경체제의 발달적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식물의 생명활동이 보여주는 다양한 지각 작용"의 사례를 간과했다는 주장도 있다(맹주만, 2009: 268). 특히, 생명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는 식물이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생명체인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식물이나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랜즈와 같이 동물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을 동물중심주의라고 하였을 때,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는 공통적으로 인간에게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한다.

생명중심주의의 대표 학자인 테일러(Paul Taylor)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생명체가 각자 자기 고유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a natural goal-seeking ability)에 가치를 둔다. 생명중심주의는 식물이나 진화 계통상 하등한 동물 역시 도덕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

38) 롤랜즈, 싱어, 리건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을 정신적 주체, 쾌고감수능력(또는 감응력), 삶의 주체로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 그러나 세 학자가 각기 주장하는 도덕적 고려대상은 신경체계의 진화적 발달을 기준으로 한 생명체 분류에서 '의식이 있지만 자의식은 없는 생명체'에 해당한다. 즉, 세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의식'이다.

>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 동식물을 생각할 때 허구로 의인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을 삶의 목적론적 중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인간의 특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 중 몇몇은 그들 주위의 세상을 의식할 수 있고 다른 몇몇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의식이 존재할 때 다른 종류와 수준의 의식이 실증된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아니든, 각자가 자신의 보존과 안녕을 지향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의 통일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모두 똑같이 삶의 목적론적 중심이다(Taylor, 2003: 210).

테일러에 따르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들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종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슈바이처(Albert Scheweitzer, 1936)는 생명 외경(reverence for life)을 주장한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생명이 다치지 않게 도우려할 때 윤리적인데, 이는 생명이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윤리적 가치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체계가 발달한 포유류와 같은 고등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중심주의의 주장은 생명의 가치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생명을 가진 하나의 개체만을 도덕적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도덕의 범주에 두어야 한다는 생태중심주의의 입장도 있다. 레오폴드(Aldo Leopold)는 대지윤리(Land Ethics)를 주장하면서 생태계 전체에 대해 도덕적 견지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생태계 안에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는 서로 연결되고 순환하며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 적절한 토지 이용을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미학적으로 옳은 것의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라. 어떤 것은 그것이 생물 공동체(biotic community)의 진실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옳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Leopold, 1968: 189).

레오폴드는 땅, 물, 식물, 동물과 같은 생태계 요소들이 "생물 공동

체"(biotic community)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인간에게 국한된 윤리적 지평을 인간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생태계로 확장시킨다. 이렇게 전체의 번성을 추구하는 생태론 관점에서 동물윤리는 개체론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개체론 윤리이론은 멸종위기 종의 보호나 생태계보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캘리코트(Callicott, 1980)에 따르면,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체주의에 불과하며, 동물윤리는 인간의 권리주장을 동물에게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명식(2013)은 동물중심주의가 여전히 개체에만 관심을 둔 협소한 시각의 이론이며, 서로 다른 종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일관된 원리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인간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관습을 반박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세 입장 모두가 동의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이론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동물윤리는 '의식'을,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을,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의 보존'을 기준으로 한다.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는 동물중심주의가 설정한 기준인 '의식'이 동물과 인간을 차별하는 기준인 '생물학적 종'이나 '이성 능력'처럼 임의적인 경계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싱어(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207)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것이 나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산림을 파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동물들의 서식처를 빼앗기 때문이다. 즉, "자연파괴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미치는 모든 영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리건은 레오폴드와 같은 전체론 관점은 "개체가 더 큰 생명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환경 파시즘(environmental fascism)"이라고 비난하였다(Regan, 2004: 361-362). 개체는 생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가치가 있다는 전체주의 관점은 각 개체의 번성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김명식은 동물중심주의가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인간에게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한 것에 대

한 반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 정당화, 즉, 왜 감응력이 도덕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반대 입장의 약점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명식, 2013: 20).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싱어는 “감응력을 갖춘 존재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전혀 제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207-208).

> 쾌고감수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은 아무런 선호도 고려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리 고려해 주려 해도 우리가 정작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윤리가 쾌고감수능력을 갖춘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면 도덕적 지평의 확대가 마침내 길고도 불규칙한 여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다(Singer, 2009, 김성한 역, 2012: 208).

싱어는 감응력, 즉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이익이 없기에 고려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존재의 이익을 공리주의적 계산에 포함시키고자하여도 그들에게는 포함시킬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번스타인(Bernstein)은 어떤 일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존재, 즉 이해관계를 가진 생명체“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게만 도덕적 고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각능력이 없는 생명체들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Bernstein Mark H., 1998; 김진석, 2006: 123에서 재인용).

롤랜즈 역시 김명식의 주장대로 롤스가 종이나 이성능력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리지 않은 것, 도덕적 공동체에서 동물을 배제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사실상 인간중심주의적 기준을 반박하여 삭제한 것에 그칠 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논변이 약하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싱어의 말처럼 감응력이라는 기준은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을 삭제한 상태

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했더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의해 또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가 곧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된 것이다.

롤랜즈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 함의하는 바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도덕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어느 종에 속하는지, 도덕적 행위자인지 도덕적 피동자인지 역시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의식'이나 '감각(sentience)' 역시 노력으로 얻은 속성이 아니기에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다고 가정해보자. 공평한 입장에 있는 계약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의식이 없는 돌이나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의 원칙이 어떻게 정해지든 자신에게 가해지는 대우를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계약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동물이 되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의식할 수 있기에, 동물이 되는 경우를 걱정할 수 있고 대비해야한다. 반면, 식물이 되면 고통을 느낄 수도 자신의 상황을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위한 걱정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의식을 가지는 존재인 동물에게까지만 도덕의 제한을 둔다. 계약자가 이성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대상에 도덕적 고려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롤랜즈는 '정신'을 도덕에 대한 한계점으로 보고,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 계약의 안정성 약화

동물권 논쟁의 본질은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김명식은 "공동체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동물이나 생물, 자연적 요소에게까지 공동체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논의 없이 공동체 구성원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그리고 “현대의 지배적인 입장인 사회계약론”의 공동체는 “‘상호협력’을 통해 호혜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존립한다.”고 주장했다(김명식, 2013: 21). 전통적 홉스식 계약론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힘이 비슷하고 이성적인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상정한다. 그러나 롤랜즈는 계약론에서 홉스식 관점을 제거하고 칸트식 관점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호혜적 목적을 현저히 약화시켰기 때문에, 공동체의 범위를 힘이 비슷하거나 이성적인 존재에만 한정하는 구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호혜성이 제거된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계약을 지켜야한다. 호혜성에 근거를 둔 기존 계약론은 행동의 원리를 자기 이익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계약 준수의 동기를 쉽게 제공한다. 그러나 계약이 호혜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행동에 제약을 주는 계약을 굳이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계약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 밖 에 없고 결국 계약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계약론에서 타산적 속성을 제거할 것이라면 계약을 준수하게 하는 다른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

롤랜즈는 계약의 권위를 도덕법칙으로부터 가져오는 칸트식 계약론의 아이디어를 따른다.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법칙은 이성적인 존재자로서 도덕의 행위 주체인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강제 내지 무조건적인 당위이며 의무”이다(나종석, 2003: 100). 계약은 도덕법칙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도덕법칙의 당위는 계약의 당위로 이어진다. 롤랜즈는 칸트식 계약론이 합리성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타산적이고 호혜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없으며, 도덕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에 대한 계약의 설득가능성’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합당한지의 여부’이다. 즉, 개인에게 계약을 지키려는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 계약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당위란 ‘마땅히 해야만 함’이라는 의미의 필연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필연성은 그것의 실현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필연성이다. 당위는 자신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현을 명령”한다(이충진, 2011: 22). 실천이성

에 의해 합당하다고 추론하였다면 지켜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은 실현가능하기에 준수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옳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계약의 권위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으로부터 파생하는 계약의 당위성을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계약의 내용이 부합해야하는 형식을 제시하고 계약을 준수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실의 "행위자에게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개별 행위를 제시하지 않는다." 맥락 속에서 개별 행위의 결정은 경험의 영역이며, 행위자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즉, 행위자는 "가능한 행위들 중 어느 것이 선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이충진, 2011: 20). 따라서 경험적 규범의 내용을 결정하는 판단이 도덕의 형식에 맞도록 추론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롤스는 이를 원초적 입장으로 구현한다. 즉, 롤스는 칸트식 계약론에서 합당성을 추구하는 형식과 형식이 갖는 당위를 전제로 수용하고, 가설적 장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타당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발전시킨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 역시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칸트식 계약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롤스나 롤랜즈가 제시한 것과 같은 가상적 추론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칸트의 이론에서 합당성이 합리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롤스가 계승한다. 칸트의 이론이 도덕적 삶에 실제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성에 의해 주어진 정언명령(the categorical imperative)의 도덕법칙을 형상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는 "의사결정자들이 지닌 개인적 동기의 원리를 정언명령 절차에" 대입하여, 구체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정언명령(particular categorical imperative)"을 정언명령의 형식에 맞게 하는 과정이다(김은희, 2017: 149-156). 특수한 정언명령이 추상적 정언명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롤랜즈는 롤스 이론 안에서 평등에

대한 응보적 해석을 근거로 비이성적 존재를 포함하는 계약론으로 재구성하였다. 롤스와 롤랜즈의 계약은 형식적인 도덕법칙의 내용을 직관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혜성을 제거하고 본체적 자아를 가정하는 이상화된 추론의 과정이 실제성을 획득하려면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호혜성을 제거 해야하는 이유는 도덕의 본질에 있다. 싱어는 호혜성을 이타성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몽된 이기성'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복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도 호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이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양쪽 파트너에게 이익이 될 것임을 아는 것만으로 호혜적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태도는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Singer, 2011, 김성한 역, 2014: 80). 계약론이 호혜적 관계에 근거를 둔다면 그로부터 도출된 도덕원칙이 '계몽된 이기성'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롤랜즈는 칸트와 롤스의 이론에 조금의 호혜적 성격도 남아있지 않게 하면서 이타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덕분에 계약에 임하는 이성적 존재가 이기성을 극복하고 비이성적 존재를 계약적 도덕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계약자를 '보다 많은 몫을 가지기를 바라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존재'로 설정했던 것을 수정하여, '이타적 의미의 도덕 이성을 가진 존재'로 재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윤리이론으로서 계약론이 더욱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롤랜즈가 계약론에서 타산성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39] 기본적으로 칸트식 계약론은 설득이 아니라 당위에 근거하여 권위를 가진다.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공정하다면 계약에

39) 롤스는 『사회정의론』(Rawls, 1971, 황경식 역, 1985)에서 사람들의 동일한 도덕적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정치적 자유주의』(Rawls, 1993, 장동진 역, 1998)에서 서로 다른 개개인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들의 상충되는 주장들이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이르러야만 안정적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랜즈는 타자 역시 나와 같은 자아로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을 가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전제를 가진 중첩적 합의로는 롤랜즈 계약의 안정적 유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중첩적 합의 외의 다른 요소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당위에 따르는 태도는 정의감이다. 계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도덕적 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들의 정의감이 요구된다. 즉, 개개인의 정의감이 확립되고, 정의에 맞게 행동하려는 개인이 많을수록 계약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개인이 하는 행동이 선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주관적으로 선한 행동”이며, “의무”는 당위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정의했을 때(이충진, 2011: 22), 주관적으로 선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선한 행동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정의감이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롤스가 제안한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 맥락 속의 특수한 판단이 형식적 도덕법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잠정적 정당화의 절차가 원초적 입장이었다면, 그 결과로 도출한 실천적 판단이 숙고된 판단[40]과 도덕 원칙들, 배경이론들에 합치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반성적 평형이론이다. “원초적 입장은 반성적 평형과 분석적으로 구분되지만 반성적 평형의 전체 과정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추론 및 정당화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의관을 실제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정태창, 2020: 189).” 반성적 평형이론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요소들은 서로 들어맞도록 조정된다. 개인이 가진 세 가지 요소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형 상태에 이르면서 도덕적 관점, 즉 정의관은 진보한다. 정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반성적 평형은 정의관의 진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특히 숙고된 판단은 특수한 경험적 맥락에서 내리는 결정이고, 도덕 원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 원리이다. 도덕원칙을 경험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숙고된 판단과 추상적 도덕원리를 비교하고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숙고된 판단은 사회관습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성적 평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된다. 따라서 반성적 평형의 결과는 관습

40) 숙고된 판단은 ‘일반성의 모든 수준에서(at all levels of generality)’ 개인들의 특정 행위에 요구되는 특정 판단에서 사회제도와 정책에까지 이르는 규범적 신념들이다(Rawls, 2001, 김주휘 역, 2016: 30).

이나 직관에도 영향을 주며, 나아가 특정한 정의관을 집단적으로 형성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배경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적 자원으로 정당한 판단을 위해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반성적 평형은 “보다 나은 행위의 결과를 조망할 수 있게 해 주고,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박수환, 2020: 113)”

롤스의 정의감이 도출되는 과정은 순환성을 가진다. 숙고된 확신과 도덕 원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양 극단에서부터 맞추어 조정하면서 정리한다. 조정되어 합치된 상태에 이르면 반성적 평형상태(reflective equilibrium)에 도달한 것이다(롤스, 1971, 황경식 역, 1985: 41-42). 리쾨르(Paul Ricoeur, 2000)는 롤스가 언급한 정의감이 공동체의 역사적 관습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규범에 정합적인지에 대해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공동체적 관습은 편견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의감은 항상 규범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한 삶의 목표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관습인 경향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세기동안 노예를 인간의 범주에 넣는 것을 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편견에 비판적인 규범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롤즈의 의무론인 정의 개념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의미가 있다(김기복, 2013 :114).

역사적으로 축적된 정의감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되었다는 이유로는 도덕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정의감을 구성하는 관습적 신념은 항상 규범적 테스트의 대상으로 존재하며, 반성의 대상이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규범적 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습적 판단이나 신념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철회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롤랜즈가 롤스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떤 것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야 하는지에 대해 직관적 평등논변에 근거하여 검토한 부분이다. 롤랜즈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반성적 평형이론을 활용한다. 그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평등 관념에 기초하여 롤스의 계약론이 공평한 계약조건인지 검증한다. 원초적 입장이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해 수정되

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평한 입장'을 수립하였다. 숙고된 판단과 배경이론에 의한 상호 조정으로부터 정의 개념은 더욱 타당해진다(김기복, 2013: 112-113). 평등 원리를 함축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공평한 입장에 비추어 특수한 맥락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반성적 평형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올바른지 반성하고, 조정하여 평형 상태에 이르는 것은 정의감을 강화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의감이 항상 자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타자와 다른 공동체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김기복, 2013 :121). 이에 근거하여 롤랜즈는 동물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동물을 이용하는 관습적 행동은 검토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동물은 권리가 없으며,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동체의 믿음이다. 롤랜즈는 롤스가 동물을 정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일관성을 보인 것이, 동물의 대우 문제에 관해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AR: 141-142). 즉, 롤랜즈는 '동물이 정의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직관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와 '인간에게만 도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상반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진 일종의 직관이다. 따라서 롤랜즈는 이 직관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수단을 '계약론'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요컨대 칸트가 제시한 이성이 명령하는 바는 '도덕법칙이 당위적'이라는 상위차원의 논의이다. 이것을 실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롤스 이론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첫 번째 정당화 과정이라면, 반성적 평형은 또 다른 정당화의 과정으로 도덕이론과 정의에 관한 직관이 상호작용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은 계약을 통해 밝혀낸 특수한 정언명령에 정당성과 합당성을 보장하여 계약의 당위적 속성을 강화하고 정의감을 성장시킴으로써 계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한다.

3. 상호성의 생략

최소한의 상호성마저 제거한 롤랜즈의 계약이 계약론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호성은 타자를 전제하는 개념이며, 합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타자가 없다면 타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며, 계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계약을 합의로 본다면 계약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인격을 요구한다. 그러나 롤스와 롤랜즈의 이론에서 계약에 임하는 자는 본체적 자아라는 하나의 인격이다. 하나의 인격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개념을 논의할 수 없다.

롤스의 계약이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도 계약일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추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실제적인 것도 아니며 자연적인 것도 아니며, 가능한 것조차 아니다." "계약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하려고 면밀하게 고안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이종은, 2015: 103). 계약은 추론의 일종으로 개인의 사고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상황의 정당화이기 때문에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계약자인 본체적 자아는 도덕적 측면에서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추론한 원칙은 개별자의 이익 추구와 관련 없이 공정하다. 다시 말해, 본체적 자아는 추론에 있어 도덕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계약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다. 홉스식 계약론에서처럼 개별자의 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상호 합의를 하거나 각자의 이익손실을 계산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이성적(reasonable) 계약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원칙을 정당화하는 추론적 사고의 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롤스 계약론의 비판점으로 제시되는 문제인데, 롤랜즈는 오히려 상호성을 더욱 약화시키고자 한다.[41] 롤랜즈는 계약의 본질이 '합의'나 '동

41) 기본적으로 홉스식 계약론은 호혜적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호성이 강하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반면, 칸트식 계약론은 호혜적 목적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호성이 약화된다. 칸트식 계약론 계열 안에서도 계약의 개념이 함축하는 상호성(mutuality or reciprocity)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가 각 이론마다 다른데, 롤랜즈의 계약론은 기존 롤스의 이론에서보다 상호성을 더욱 약화시킨다(변

의'가 아니라 '실천이성을 통해 도덕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변문숙, 2013: 257) 계약의 상황을 환생으로 각색한다.

> 한 개인이 환생을 앞두고 신에게 질문을 받는다. 네가 살아가게 될 세상에 어떤 도덕원칙이 있어야 하는가? 단, 네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 성별, 인종, 종인지 도덕 행위자인지 도덕 수동자인지 모르는 채로 결정해야 한다(AR: 160).

환생 시나리오와 같이 상대방 없이 단 한 명만이 계약에 임한다면 계약자 간의 힘을 비교하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홉스식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힘의 균등 조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즉, 힘을 비교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힘의 균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존재자의 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된다. 롤랜즈는 힘의 균등 조건을 기각하여 약자 역시 계약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롤랜즈가 계약의 상황을 환생으로 설명하는 내용에서 미루어 보아, 그가 생각하는 계약 상황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a)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적용할 규칙을 수립하고자 한다. b) 이 규칙은 옳음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c) 따라서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을 수행하는 계약자는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은 계약의 입안자가 될 수 없다. 동물은 이성이 없으므로 도덕적 판단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다. 계약은 이성을 갖춘 존재가 수행한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의 수혜자를 계약자 집단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은 계약의 입안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수혜자는 될 수 있는 것이다.[42] 계약자가 공평한 입장에 있을 때 이

문숙, 2013: 237-238).

42) 칸트의 윤리이론을 바탕으로 계약론을 전개하는 롤스의 이론을 롤랜즈가 계승하였다면, 계약의 이면에 계약자의 이성적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계약자의 이성은 합당성을 합리성에 우선하도록 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비이성적 존재는 도덕법칙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롤랜즈는 칸트와 롤스의 이러한 계약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

성을 갖추고 있으나, 계약을 완료하고 자신이 계약한 규칙이 실현되는 사회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사회 속에서 이성적 존재일지 비이성적 존재일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조건에서 계약을 수립한다.

이처럼 롤랜즈가 계약론에서 합의나 동의의 속성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비이성적 존재를 계약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동의하려면 계약을 이해하고 계약에 동의를 표현하는 이성능력이 필요하다. 만약 동의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해석한다면,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능력이 없어 계약에 동의할 수 없고, 계약론적 윤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롤랜즈는 암묵적 합의와 동의가 홉스식 계약론에서만 유효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즉, 칸트식 계약론은 합의와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롤랜즈는 이러한 칸트식 계약론의 속성을 강화하여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계약 개념을 수립하여 비이성적 존재를 계약공동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수혜자를 동일하게 보는 타산적 목적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비이성적 존재는 계약의 입안자가 아니지만 계약의 수혜자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다. 즉, 롤랜즈가 계약자와 계약수혜자를 각각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계약자가 실천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굳이 기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천이성을 요구하는 동의의 속성을 생략하기 위한 논변은 역할이 없다. 중요한 것은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계약의 입안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정당화 방법으로 암묵적 동의(tacit consent)가 있다. 실제 타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법한 규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암묵적 동의라고 한다.[43] 홉스식 계약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롤랜즈는 계약자가 계약자 자신만을 계약에 포함시킨 것에 반론을 제기한다. 합리적 목적이 제거되었는데 자기 집단만을 위한 계약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43)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로크는 동의를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본다. “동의의 행위가 곧바로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강제력의 원천으로 작동하면서,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구속력(binding

동의를 얻는 방법은 합리성에 근거한 암묵적 동의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계약자는 계약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있다. 즉, 이익이 된다는 것만 증명하면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롤랜즈는 합리적 목적의 계약을 탈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롤랜즈의 이론은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롤랜즈는 홉스식 계약론의 암묵적 동의 개념을 반박하지만, 이것은 암묵적 동의 개념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준을 둔' 암묵적 동의를 반박하는 것이다. 사실상 롤랜즈 자신의 이론 안에서도 홉스식 계약론과 다른 방식으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한다.

롤랜즈는 합당하기에 누구나 동의할 수 밖 에 없다는 근거로 규칙을 정당화한다. 즉,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에서 내린 판단은 합당성을 기준으로 하기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없다. 합당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유일한 정답에 이를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결국 롤랜즈가 부정한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동의이다. 즉, 롤랜즈는 타자가 부재한 가상 상황에서, 합당하다고 검증된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롤랜즈의 이론 안에서도 합의 개념이 존재하며 충분히 계약론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성적인 개인은 합당한 규칙에 동의하는 존재이므로, 규칙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 규칙에 대한 타자의 실제적 동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 합당성에 근거한 암묵적 동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홉스식 계약론이 '이익이 되는 규칙이라면 동의한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반면, 롤랜즈의 계약론은 '합당하다면 동의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롤랜즈의 관점에서 정당화는 상호 합의가 아니라 이상적 자아의 합당성에 의거한다. 이는 합당성을 기준으로 누구나 동의할 법한 준칙인지를 판가름하는 계약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원초적 입장, 나아가 공평한 입장은 암묵적 동의를 도출하는 '합당하다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공평한 관찰자의 제 3 자적 관점과는 달리 원초적 입장이나 공평한 입장은 보편적 관점을 갖게 하는 장치이다. 즉, 계약의 본질은 '상호성'이 아

---

force)'을 부여하는 것이다(이관후, 2015: 109)."

니라 ‘공정한 선택을 보장하는 조건의 조성’에 있다. 따라서 롤랜즈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내재된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관점의 장치에 이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면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에 인간 간의 의무와 “‘정의’나 ‘옳고 그름’과 같은 엄중한 개념”은 인간만이 독점한다는 가정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 보편타당한 판단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변문숙, 2013: 258). 그는 ‘무지의 베일’이 함축하는 ‘평등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정의의 대상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를 ‘공평한 입장’으로 수정한다. 계약의 정당화 방법이 실제적 동의에 있지 않고 합당성에 근거한 암묵적 동의에 있다면, 동물이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비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동물을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동물의 입장에서조차 동의할법한 합당성을 가지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계약이 가지는 합의의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동물을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5 장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타자를 향한 혐오나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형태로 드러난다.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역할 중 하나이다. 도덕적으로 다른 대우를 하려면 도덕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검토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대우'의 기준이 적절한 도덕적 기준인지, 그 기준 속성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롤스와 롤스의 관점을 발전시킨 롤랜즈의 이론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 롤스는 "출생과 자연적으로 타고난 혜택 등에서 연유하는 불평등은 마땅하지 않는 불평등(indeserved inequality)이기 때문에 - 즉 우연히 가지게 된 것이며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71; 이종은, 2013: 238에서 재인용)." 출생에서 연유하는 속성의 차이는 도덕적 응분(desert)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자격의 차등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러한 롤스의 통찰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간과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이성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물에게서 도덕적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은 가장자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자격을 가진 집단인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덕적 행위를 이성적 혹은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자리 인간과 비인간 동물은 모두 약자이지만 도덕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도덕적 피동자로 도덕적 공동체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성적인 인간이 이들 약자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의 혜택을 비이성적 존재인 약자에게도 제공해야한다. 그들이 이성적 의미의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어도 타자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약자를 정의적 도덕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나아가 차별과 평등의 기로에서 우리와 다른 종의 동물을 약자로 보고 배려 대상으로 논의

하는 롤랜즈의 이론은 평등에 대한 신념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전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행위자, 즉 학습자의 평등에 대한 도덕적 정의의 실현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동물 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타 교과에서도 동물 윤리 논쟁의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초등 국어과에서는 토론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논리적 말하기'의 학습목표를 위해 동물실험과 동물원에 대한 논쟁을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동물 관련 텍스트는 하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텍스트 소재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회적 도구에 불과하다. 도덕과 외 다른 교과에서 동물에 대한 대우에 대해 이러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깊이 있는 추론적 정당화가 포함된 토론이 가능하려면 윤리적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과에서 학과 특성을 살려 접근해야하는 분야이다. 논쟁적 주제를 교실로 가져와서 다양한 관점의 윤리 이론의 논증을 검토하면서, 학습 공동체 안에서 논쟁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윤리학의 본질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된 동물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적 관점에서 롤랜즈의 계약론적 윤리를 바탕으로 동물윤리이론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 교과서 탐구 활동을 제안한다.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공평한 입장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한 판단을 유도하여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겠다. 또한 차별 대우에 대한 근거가 도덕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논증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중심적 관점과 편견을 깨닫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먹는 관습에 대해 각 사상가들마다 다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고 각 이론을 심화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겠다. 특히 이 활동은 찬성과 반대의 견해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 안에서 서로 다른 근거를 확인하고 토론하도록 하여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할 것이다.

제 1 절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는 도덕적 공동체의 개념을 확장하고 반성적 검토를 통한 도덕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롤랜즈는 도덕적 공동체 내에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두 개념을 구분한다. 그 결과,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피동자로서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되어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 도덕을 근간으로 한다. 자신이 도움을 제공하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이해타산적 동기의 행동은 도덕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롤랜즈의 이론은 계약론에서 이해타산적 행동 동기를 극복하고 이타적 도덕 원리로 도덕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게다가 롤랜즈가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반성적 검토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적 측면에서 도덕적 판단 과정 속 윤리적 성찰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롤랜즈의 추론과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롤랜즈가 도출한 '공평한 입장'이라는 판단의 도구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도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른 판단을 돕는다. 이는 도덕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실천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의의가 있다.

1. 도덕적 공동체 개념의 확대

롤랜즈는 홉스적 계약론의 도덕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이타성(reciprocal altruism)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만을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생물학에서 설명하는 '호혜적 이타성'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타성”을 말한다. 이는 “서로 도와서 생존확률이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도움을 주면 언젠가 네가 나에게 도움을 되갚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성격의 행동을 이른다(싱어, 2011, 김성한 역 2014: 20). 기존의 홉스적 계약론은 자기 이익적 동기에서 도덕을 규정한다. 홉스는 “자기 보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이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계약을 맺거나 이타적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차홍석, 2018: 225).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개개인은 각각 가진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은 격하고 그에 따른 희생이 크다. 따라서 서로 도움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비등한 힘을 가진 자들의 사이에서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대상에게만 이타적 행위를 보이게 된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비해 힘이 약한 약자들은 이타적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신과 힘이 비등한 경쟁 상대들만을 계약에 포함시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성립하고, 그들 간의 협력과 결속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계약에서 배제된 대상들, 즉 약자에 대한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지향적(self-directed) 사고방식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타인지향적인(other-directed) 동기를 갖고 타자를 위하는 것을 ‘이타적’이라고 정의해보자(정상모, 2009; 차홍석, 2018). 홉스의 계약에 의거한 도덕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도출된 이타적 행위이다. “홉스에게 있어 이타적인 행위는 선하지도 않을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타적 행위는 단지 이기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차홍석, 2018: 229).” 홉스식 계약론에서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가 체결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받을 수 없다. 홉스를 비롯한 전통적 패러다임은 도덕적 행위자만을 도덕적 피동자로 보았으며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도 이에 일치시켰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책무를 가지지만,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는 도덕적 책무를 가지

지 않는다. 호혜적 이타성의 바탕에서 책무 없이 도덕의 혜택을 받는 권리는 불균형적이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면 도덕적 피동자도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홉스의 계약론 설명에서 자기 이익의 동기를 삭제한다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는 비이성적 존재에게도 도덕의 수혜를 줄 수 있게 된다. 롤랜즈는 롤스 계약론에서 홉스식 계약의 호혜적 성격을 완전히 삭제하여 힘과 능력에 있어 불균형적 관계에 있는 존재를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존재를 모두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하고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능력이 요구되지만, 도덕적 피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적 판단에 의거하여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피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과 독립적이다.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에게 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속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우연히 이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에게서 도덕적 수혜를 박탈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롤랜즈는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피동자'를 독립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만 계약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 또는 이익을 줄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들을 도덕적 피동자로 인정하고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홉스적 계약론에서 호혜적 집단이었던 도덕적 공동체는 성격이 바뀐다. 호혜적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도덕 능동자이자, 이성적 존재로서 그들 간의 의무와 권리가 대칭적 관계를 이루었다. 그들 사이의 이타성은 나의 행동이 추후에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타성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나중에 자기의 이익으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동기에서 발생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성'보다는 '이기성'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관례적으로 대가를 바라는 행동을 이기성이라 부르지 이타성이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싱어, 2011, 김성한 역,

2014: 53).

롤랜즈의 계약론에서는 호혜적 이타성을 넘어서 도덕적 행위자의 책무와 도덕적 피동자의 권리 간 비대칭적 관계에서의 정의[44]를 설명한다. 이는 이기성을 극복한 도덕으로 보인다. 롤랜즈의 계약론적 주장은 도덕원칙을 검토함에 있어, 계약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계약을 수행한다. 계약은 도덕의 실현 장치이며, 검토 장치로 작용한다. 학습자가 자기이익에 기반하여 남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이익과 관련 없이 옳은 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도덕교육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칸트식 계약론의 계열인 롤스의 이론은 필연적으로 의무론적 도덕이론을 전제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칸트나 롤스는 동물을 도덕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롤랜즈는 동물이 도덕적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로써 도덕적 원칙의 수혜자로 동물이 포함된다. 행위자의 동기가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타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이상적인 도덕적 모습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의 탈피는 자기중심적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진보이다. 도덕교육은 이상적 인간상을 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학습자의 도덕 수준이 호혜적 이타성의 이기적 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이타적 동기로 변모시키는 것이 도덕교육의 목적이다.

이타적 동기의 도덕적 행위를 도덕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효율성과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태도는 사회적 차원에서 의도치 않게 강화되고 있다(이은아, 2015). 그럴수록 합당성과 이타성은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익의 교환 혹은 나의 권리 침해 가능성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호혜적 행동은 도덕이라기보다 거래이다. 기존의 계약론은 거래적 동기에서 계약을 설명하였으나 롤랜즈는 자기 이익 추구의 합리성 보다 합당성에 초

44) 기존의 정의에서 나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대칭을 추구했다면,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비대칭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나’의 권리는 가볍고 끝이 있지만,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겁고 끝이 없‘는 비대칭성이 정의이다(박의섭, 2008: 237-238).

점을 두는 계약자를 설정하였다. 계약자가 합리성보다 합당성의 동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계약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계약자를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합당성과 이타성의 강화는 옳음의 가치를 우선하는 행위적 동기를 마련해준다. 합리적이고 이기적 동기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이타적 동기에서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만, 도덕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이상향으로 제시해야할 도덕은 진정한 이타성이다. 타자에게 내가 받을 도움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은 도덕교육적 가치가 없다. 즉, 현대사회에서 도덕교육의 임무는 합리성보다 합당성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홉스적 계약론을 통한 도덕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에게 강화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합당성에 기반한, 이타성에 초점을 둔 도덕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시기이다.

또한 롤랜즈의 설명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약자에게, 계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선택적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강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적 행동이다. 즉, 약자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정의적 의무로 설정함으로써 이성적 존재자와 비이성적 존재자는 모두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 행위자가 약자와 소수자를 대우하는 데에 있어 행위자 본인이 그들에게 받을 도움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초과적인 친절을 일방적으로 베푼다는 관점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나와 다른 속성을 가진, 특히 약자와 소수자를 대우할 때 상하구조나 배타적인 관점을 벗어나게 한다. 힘과 능력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실현하는 정의와 도덕적 공동체 범위의 확장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타자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행위 동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수행에만 집중하게 한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 임기응변적인 행위 반응은 도덕성에서 기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덕교육이 지향해야할 진정한 도덕성은 상대와의 관계가 대칭적이건, 비대칭적이건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2. 반성적 검토를 통한 도덕적 성찰 및 실천 성향 함양

어떤 동물윤리 이론이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관점은 오랜 관습을 통해 우리의 직관(intuitions)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핵심 신념”인 직관은 도덕 논증에서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논거가 되거나 그 자체가 전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관이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관이 다른 직관 혹은 사실과 모순되는 바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도덕적 성찰(moral reflection)’이다.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직관의 암묵적이고 즉흥적인 사고를 시스템Ⅰ로, 성찰의 추론적이고 의도적인 사고를 시스템Ⅱ로 명명한다. 시스템Ⅰ이 정서적 직관 중심의 사고라면, 시스템Ⅱ는 이성적 추론 중심의 사고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대부분은 시스템Ⅱ보다는 시스템Ⅰ에 의해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시스템Ⅰ은 “편견적 사고로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지름길”이 될 우려가 있다(Elizabeth Vozzola, 2014, 정창우 역, 2018: 134). 시스템Ⅱ는 시스템Ⅰ에 따른 결정이 옳은지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반성한다. 다시 말해, 시스템Ⅱ는 느리지만 숙고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오류가 발생하려는 순간을 감지”하고 “통제력을 발휘”한다. 시스템Ⅰ에 의한 의사결정은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이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스템Ⅱ가 의식적으로 시스템Ⅰ의 작동을 멈추고 오류를 감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Daniel Kahneman, 2011, 이창신 역, 2018: 37-53).

두 가지 시스템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며 두 기제 모두 중요성을 가진다. 어떤 결정이든 직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직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직관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결정을 따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직관에 부합한 결정이라면 단지 검토의 대상이 될 자격을 얻었을 뿐이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직관은 날것 그대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Ⅱ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정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성적 성찰은 의식적 과정의 의도적인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즉,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의 발생이 아니라 직관의 정제이다. 다시 말해 도덕교육의 역할은 직관을 조정하여 오류를 줄이고, 조정된 행동을 다시 자동화하는 데 있다. 보졸라(Elizabeth Vozzola)는 학생들이 "이성의 빛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이나 생각들을 찾도록 돕"고, 그들에게 "도덕적 반성의 습관을 심어주"는 도덕교육을 강조한다. 즉, 도덕교육은 익숙한 결정에서 벗어나 "다르거나 낯설다는 이유로" 직관적으로 "역겨움"과 같은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섣부른 태도를 지양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맡는다(Elizabeth Vozzola, 2014, 정창우 역, 2018: 152).

만약 특정한 대상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직관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더욱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동물과 관련해서 시스템Ⅰ에 근거한 우리의 직관에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가 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된다.' 와 '동물과 인간은 다른 지위를 갖는다.'이다. 전통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견해는 동물과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동물이 인간과 관련하여서만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간접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는 사실상 동물이 자체적으로 내재적 가치나 지위를 가지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왔다. 우리가 가진 관습적 전통은 시스템Ⅱ에 의한 반성과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이러한 직관이나 전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 대해 시스템Ⅱ에 의한 성찰을 거쳐야 한다면 사고의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 판단을 요구하는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도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롤랜즈가 제시한 공평한 입장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동물에게 도덕적 고려를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 결정을 검토하는 논증이다. 공평한 입장은 최상위 도덕원칙인 평등의 원칙으로 연역적으로 정당화

된다. 즉, 반성적 검토를 통해 기존 '원초적 입장'에 내재된 편견을 발견하고 조정된 '판단의 관점'이다. 공평한 입장이라는 장치 자체가 편견적 사고를 중지시키고 각 사례에 대해 타당한 귀납적 판단을 도출하는 도구이다. 공평한 입장은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빠르고 쉽게 타당성을 확보하고 반성적 평형에 이르도록 돕는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을 계발하는 중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기존의 인식을 도덕적으로 검토하는 성찰의 태도와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잘못된 편견을 발견하고자하는 도덕적 의지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직관의 반성적 검토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직관을 성찰하는 반성적 작용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반성의 결과를 학생 자신의 직관적 도덕성에 반영하는 것 역시 도덕교육의 역할이다. 즉, 교육은 도덕적 직관을 성찰한 결과, 수정되고 조정된 판단을 도덕적 직관에 다시 반영하여 직관을 갱신하면서 도덕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Ⅱ를 통해 검증받은 내용이 도덕적 직관에 반영되어있어야만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의 도덕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Ⅰ의 직관적 판단은 오류 가능성이 높지만 신속하기 때문에 주로 시스템Ⅰ에 의해 행동이 발현된다. 반면 시스템Ⅱ는 고차원적 사고에 의해 반성적 성찰을 거치기 때문에 타당한 판단을 도출하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을 시스템Ⅱ에 의존하기는 어렵다.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은 시스템Ⅱ와 시스템Ⅰ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여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롤랜즈는 시스템Ⅱ를 통해 '판단의 관점'을 반성하고, 그 결과 타당성을 확보한 '관점'으로 직관적 판단을 하게 한다. 이것은 판단을 요구하는 실제 상황에서 반성적 검토의 과정을 생략하고도 도덕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게다가 과정의 축소로 판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결정'에 의해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행위로 발현되기 전에 반성적 과정이 필요하며,[45] 반

성적 과정을 거친 도덕적 판단을 자동화함으로써 무의식적 행위로 발현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Ⅱ에 의해 반성적 검토를 마친 '공평한 입장'은 시스템Ⅰ처럼 실생활 맥락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도출하고 행동화한다. 도덕적으로 합당해야하므로 반성적 과정을 거치고, 즉각적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 자동화해야 하는데, 공평한 입장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이다.

제 2 절 롤랜즈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롤랜즈는 기존의 계약론이 동물을 계약의 수혜자 집단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평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동물이 평등한 도덕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동물이나 비이성적 존재가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이상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제시한 개념인 '공평한 입장'은 학생들에게 호혜적 이타성을 벗어나 배타적 태도를 극복하게 하고,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계약자가 되어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통해 도덕적 탐구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무엇보다 동물을 도덕과 정의의 공동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결정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인간중심적 편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고찰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타당한 어림짐작'에 의한 '신속한 결정과 행동'을 도출하는 도구를 마련하여 '도덕적 판단'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준다. 게다가 반성적 평형이론에 의거하여 인간이 동

45) 쉔(Schön)은 이를 행위중 반성(reflection in action)이라고 명명한다. 행위중 반성은 행위로 발현되기 전 의사결정과정에 반성을 포함한다. 반성적 과정을 거친 결정에 의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반성의 내용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 "특수한 상황 맥락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행위 중에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Schön, 1983; 김하연, 2016: 205-206에서 재인용).

물을 대우하는 방식이 배경이론과 도덕이론에 정합적인지를 중심으로 편견의 오류를 찾아내는 이론적 작업이 갖는 철학적 의의 또한 교육적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발전적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된 동물관련 내용의 실태

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배제한 '도덕적 공동체'

공통교육과정 도덕 교과의 내용체계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나뉜다. 각 영역별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의 핵심가치가 제시되어 있다. 동물에 대한 주제는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으며, 3~4학년군 내용요소 중 '◦생명은 왜 소중할까? (생명존중, 자연애)'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기능으로는 윤리적 성찰 능력 중 '자연과 유대감 갖기'를 설정하였다.

선택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의 내용 체계에서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생명과 윤리', '사회와 윤리', '과학과 윤리',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에서 동물에 대한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등장한다. 먼저,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영역에서 내용요소 1.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 '①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에서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의 예로 제시된다. 두 번째로 생명과 윤리 영역에서 내용요소 2. 생명윤리 '②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를 다룬다. 세 번째로 과학과 윤리 영역에서 내용요소 3. 자연과윤리 '①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제시하는 학습내용에서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윤리 영역에서 2.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① 의식주의 윤리', '② 윤리적 소비문화'의 내용요소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생활과 윤

리 내용체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물윤리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동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내용요소 '옳고 그름의 기준' ②결과론과 공리주의에서 공리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리주의자의 동물윤리주장이 포함되었다.

도덕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동물 관련 문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평등과 차별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영역은 도덕 교과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생활과 윤리 교과의 '사회와 윤리'인데 동물관련주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1] 초등학교 도덕 내용체계 -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자연·초월과의 관계	책임	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적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	ㅇ 생명은 왜 소중할까? (생명 존중, 자연애) ㅇ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ㅇ 어려움을 겪을 때 긍정적 태도가 왜 필요할까? (자아 존중, 긍정적 태도) ㅇ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윤리적 성찰)	ㅇ 실천 능력 • 실천 의지 기르기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ㅇ 윤리적 성찰 능력 • 심미적 감수성 기르기 • 자연과 유대감 갖기 •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관련 성취기준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① 인간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인간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까? ②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연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표2] 중학교 도덕 내용체계 -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자연·초월과의 관계	책임	환경친화적 삶과 과학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윤리적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ㅇ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자연관) ㅇ 과학 기술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과학과 윤리) ㅇ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소중함) ㅇ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의 평화)	ㅇ생명 감수성 고양 능력 • 생명 친화적 관점 채택하기 • 생명 친화적 실천기술 익히기 ㅇ전일적 사고 능력 •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 평정심 추구하기 ㅇ실존적 자각 능력* • 도덕적 이야기 구성하기 • 삶의 의미 구성하기 ㅇ실천성향 및 의지* • 실천 방법 탐구하기 • 실천 방법 제시하기 • 실천 의지 함양하기

관련 성취기준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일까? ②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소비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③ 환경친화적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내용요소를 구체화한 초등학교 성취기준 [4도04-01]과 중학교 성취기준 [9도04-01] 에서 보듯이 사실상 동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즉, 동물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보호하며, 자연과 유대감을 갖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즉, 동물 윤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동물을 자연에 속한 개체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롤랜즈는 동물을 식물·무생물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동물은 식물이나 무생물과 달리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세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감지할 수 있지만, 식물이나 무생물은 세상이 어떠하게 되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롤랜즈에게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인간과 함께 도덕적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정의적 도덕에 의해 대우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인간과 자연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롤랜즈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롤랜즈의 관점에서는 위 내용체계의 '자연'에 동물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중심주의를 반대하는 관점 중에서도 롤랜즈는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을 동물까지로 본다. 따라서 그는 윤리적 논의를 위한 접근에서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인간, 동물을 정신적 주체가 아닌 식물, 무생물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롤랜즈식 접근에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평등의 원리를 토대로 한 '정의'의 문제이므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중학교 성취기준 [9도04-01]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착취자와 피착취 대상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인간중심적 관점의 지양을 교육하기 위한 성취기준이다. 롤랜즈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인간과 자연'이 아닌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에 있어 착취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3] 초등학교 도덕 내용체계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사회·공동체와의	정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	ㅇ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 준법)	ㅇ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인권존중) ㅇ 공정한 사회를 위	ㅇ 공동체의식 • 관점 채택하기 • 공익에 기여하기 • 봉사하기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관계		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지닌다.	ㅇ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 (공정성, 존중) ㅇ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ㅇ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ㅇ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존중, 인류애)	ㅇ도덕적 판단 능력 •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관련 성취기준
[6도03-02]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① 공정함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관점 채택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표4] 중학교 도덕 내용체계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	ㅇ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존중) ㅇ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 다양성) ㅇ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 시민 윤리) ㅇ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덕적 시민) ㅇ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 ㅇ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북한 이해)	ㅇ다문화·공동체·세계시민 윤리의식 형성능력 • 다양성에 반응하기 •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 공동체의 일원되기 • 보편적 관점 채택하기 ㅇ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 •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윤리의식)	

관련 성취기준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①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9도03-05] 정의로운 사회가 도덕적 공동체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마음가짐을 길러 보편적 관점에서 정의 실현을 위한 참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① 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가? ②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③ 부패는 왜 발생하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특히 롤랜즈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정의는 평등의 실현이며, 평등은 도덕의 본질이다. 평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윤리 이론의 숙제이다. 롤랜즈는 평등을 응분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롤스의 정의론이 제안하고 있는 원초적 입장은 결국 응분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응분은 '도덕적으로 우연히 갖게 된 속성은 도덕적 자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성이나 생물학적 종은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 뒤에 종이나 이성여부도 가려 비인간 종과 비이성적 존재에게도 공평한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비인간종과 비이성적 존재도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 역시 도덕적 공동체에 속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동물은 응당 받아야

할 대우(claim-to)를 가진다.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핵심가치인 '정의'를 교육하기 위해,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내용요소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공정성, 존중)'와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내용요소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그리고 중학교 내용요소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의 하위 교육내용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대우'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것이다.

롤랜즈에 따르면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서 쓰이는 논증 방식이 종차별주의의 논증방식과 같다. 유색인종,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편견적 사고를 지양할 것을 교육하는 내용에 동물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자리 논증에서 보듯이 비이성적 인간에 대한 다른 대우는 부정의한 차별이고, 동물에 대한 다른 대우는 정당하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며 편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을 사회적 약자의 한 부류로 여겨 중학교 성취기준 [9도03-01]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의 주제에서 비교논의 될 수 있다.

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롤랜즈는 일원화된 윤리적 사고의 틀인 '공평한 입장'을 제공한다. 도덕적 성찰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새롭게 제시된 '공평한 입장'은 기존의 잘못된 관점을 대체하여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한 학습은 '관점 채택하기' 혹은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기능을 신장시킨다. 이에 따라 구현된 초등학교 성취기준에서 [6도03-02]의 '① 공정함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관점 채택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에서 '공평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도덕뿐만 아니라 생활과 윤리에서 역시 공통적으로 '동물의 대우에 관한 문제'를 자연의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동물관련 문제를 많은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의적 윤리 논의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롤랜즈의 관점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문제는 내용요소 '2. 사회 정의와 윤리: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

엇인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물관련 문제를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기에 적절한 하위 내용요소나 성취기준도 없다.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측면의 정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상의 정의뿐만 아니라 도덕적 대우에서의 평등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요소를 추가할 필요도 있다.

[표5] 생활과 윤리 내용체계 –사회와 윤리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사회와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사회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지는데,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되며, 교정적 정의는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2. 사회 정의와 윤리 :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엇인가? ①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②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ㅇ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 공정한 사회 건설 방안 제안하기 • 윤리적 실천방안 제안하기

그러나 롤랜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덕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논의하는 정의에 근거한 논지를 펼치기 때문에 동물관련 내용이 정의의 도덕을 교육하는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이론의 목적 중 하나는 동물을 도덕적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동물을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게 갖게 된 성별과 인종과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은 속성인 생물학적 종과 이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받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도덕적 원칙에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칙이 임의적으로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원칙을 지켜야하는 타당성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도덕원칙에 동의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도덕교육의 역할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도덕 원칙을 설득하는 것

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도 동물을 도덕적 공동체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덕과 내용체계 내에서 동물에 관한 대우의 문제를 도덕 교과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이나 생활과 윤리 교과의 '사회와 윤리'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히려 논쟁적인 주제 그대로를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 이점이 있다. 도덕적 혼돈 속에서 판단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랜즈의 도덕적 공동체 확장에 대한 '논쟁'을 도덕 교과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영역과 생활과 윤리 교과의 '사회와 윤리'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2) 도덕 ② 교과서에서 탈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동일시

중학교 도덕 ② 의 Ⅲ.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에서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에서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대립구도로 내용을 전개한다. 환경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점과 자연이 가지는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대조하여 서술한다. 동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생태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물종다양성, 생태계의 가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반성하는 관점으로 생태중심주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때에만 자연은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중략)…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아래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자연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자연도 인간과 같이 스스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고 본다. …(중략)… (동아출판, 중학교 『도덕 ②』: 141)

우리가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면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될 것이다. 반대로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고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환경 보전만을 주장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의 편의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중략)… (금성, 중학교 『도덕 ②』 : 138)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자연의 가치는 인간에게 이익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중략)… (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 ②』: 142)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반성을 낳았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에 속한 동식물과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지학사, 중학교 『도덕 ②』: 135)

그러나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는 성찰에 의해 도출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중심주의의 근거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전히 인간의 발전에 국한되며 미래에 인간후손의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인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포함한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논의하는 해냄 에듀와 미래엔 교과서의 서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냄 에듀, 중학교 『도덕 ②』 : 140)

팜유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숲을 없애고 농장을 만들면서 야생동물과 희귀식물,

곤충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뿐만 아니라 숲은 농장으로 만들 때 나오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스모그 현상을 일으켜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래엔, 중학교 『도덕 ②』 : 152)

여기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비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다. 어떤 행위로 인해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에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인간 종에게 끼칠 영향을 해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호혜적 이타성이며 종이기주의적 태도이다.[46] 탈인간중심주의를 교육내용으로 하면서 그 근거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라는 모순을 보인다. 생태중심주의에서 생태계를 보존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탈인간중심주의적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 대비되는 관점으로 동물중심주의나 생명중심주의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인간중심주의 학습내용은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일부 교과서에서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소비생활을 환경 친화적 소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중략)…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만든 로션을 발랐다. …(중략)… (동아출판, 중학교 『도덕 ②』: 144)

"동물 실험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동물 실험은 잔인할 뿐더러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향유고래가 남획되고 있어서 고래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래를 살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창업자인 애니타 로딕의 이런 외침은 창업 초창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향유고래는 화장품의 주원료인 오일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46) 물론 롤랜즈는 식물이나 사물과 같은 의식이 없는 존재는 어떤 행위에 의한 영향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 도덕적 의무로 볼 수 없기에 정의적 윤리에서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롤랜즈는 환경에 식물과 사물만이 포함된다면 미래 인간 후손을 위한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롤랜즈는 무엇보다 '동물에 대한 직접적 고려'가 아닌 관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개방식을 거부할 것이다.

공급원이었으며,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 실험을 거쳐야 했다. …(중략)… 애니타 로딕은 향유고래의 기름을 대체할 천연재료로서 올리브 오일, 호호바 열매, 아보카도 열매 등을 알아냈다. 이 천연 재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통적으로 인류가 사용해 온 것들이었기에 동물실험 없이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후에도 아마존 열대 우림 보존 캠페인, 핵무기 반대 캠페인, 극빈층에 제공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등 수많은 사회 공익사업에 앞장섰다. 경남일보, 2014.5.21.

…(중략)… 위의 사례처럼 기업 이윤과 환경보호는 서로 충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환경친화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공익과 기업 이윤을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중략)… (금성, 중학교 『도덕 ②』: 146)

소비 생활과 환경의 관계 …(중략)… 다음은 환경을 해치는 잘못된 소비 생활의 모습들이다. 학생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없는지 성찰해 보자. …(중략)… 종차별주의: 인간이 다른 어떤 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1: 동물실험이 뭐가 나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들을 이용하는 거잖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중략)… (금성, 중학교 『도덕 ②』: 141)

동아출판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금성 교과서에서는 종차별주의를 환경을 해치는 잘못된 소비생활의 모습들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을 위한 향유고래 동물실험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환경보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연관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주의의 대립구도로 학습하였는데, 탈인간중심주의를 실천하는 내용으로는 생태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가 혼재되어 있다. 학습량을 적정화하기 위해 탈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을 대표하는 사조로 생태중심주의를 설명했다면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 발견 역시 생태중심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개념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동물중심주의에서 비판하는 동물이용의 사례를 일상 속에서 도덕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탈인간중

심주의에 포함되는 동물중심주의에 대한 설명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동물윤리 내의 논쟁구도 간과

생활과 윤리 교과서 5종에서 공통적으로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서술은 주로 싱어, 리건의 주장을 기본으로 칸트, 데카르트의 주장을 대비시켜 기술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찬성과 반대의 대표적인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지학사 교과서는 간접적 도덕적 지위이론의 관점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데카르트의 자동 기계설과 칸트, 코헨의 품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천재 교과서에서는 직접적 도덕적 지위이론의 관점에서 간접적 도덕적 지위이론을 향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공리주의적 관점의 준거와 의무론적 관점의 준거에 의한 간접적 도덕적 지위이론 비판 내용을 다룬다. 간접적 도덕적 지위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동물중심주의적 관점 내에 공리주의와 의무론으로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의 배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함의한다.

> 이론 탐구하기: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또 다른 관점
>
> 가.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그 동물을 소유한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 나. 동물은 이성을 갖지 않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금지해야 한다.
>
> - 동물에 대한 가와 나의 공통적인 관점을 찾아보자.
>
> -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지 가, 나의 관점에서 판단해보자. (지학사, 『생활과 윤리』: 62)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사람도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에게 미칠 향을 근거로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을 배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쾌고(快苦)를 느끼는 존재의 쾌락은 늘리고 고통은 줄여 주어야 한다. 동물도 쾌고를 느끼므로 마땅히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단 쾌고를 느끼는 존재들 간에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각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쾌고를 느끼지 못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고,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쾌고를 느끼는 존재를 수단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한 살 정 도의 포유류라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천재, 『생활과 윤리』: 63)

금성과 미래엔의 서술은 학자 중심으로 나열하였는데 간접적 지위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와 직접적 지위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대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금성은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의 견해를 기존의 관점으로, 싱어, 리건의 견해를 새로운 관점으로 도덕 이론에 근거한 서로 다른 판단 내용을 최근의 과학적 성과를 함께 제시하여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으로 윤리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만 금성과 미래엔 그리고 비상교육의 서술은 학자들의 견해를 단순히 분류하여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성과 미래엔과 비상교육의 교과서 내용은 대체로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적 동물중심주의의 상호 반박의 논거를 다룰 때에만 대립구도로 다루어졌으며, 동물중심주의 안에서 학자들 간의 반박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싱어와 리건이 인간중심주의를 향해 반박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물중심주의 안에서 싱어와 리건의 대립구도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데카르트 | 인간과 동물의 몸은 자동 기계인데, 인간과 달리 동물에게는 정신이나 영혼이 없어서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

칸트 |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 서양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간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중세 시대에도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근대의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 여겼으므로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싱어 |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옳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다.

레건 | 일부 동물에게도 삶의 주체로서 갖는 가치가 있으므로 실험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최근의 과학적 성과와도 관련이 있다.

◦비교생물학: 사람뿐만 아니라 신경이 발달한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물행동학: 동물에게 지능이나 문화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를 반박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화론: 인간 역시 진화의 산물이므로 인간만이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동물 권리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생명윤리학: 동물 복지를 주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이성이나 언어 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금성, 『생활과 윤리』: 62).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중략)…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중략)…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 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한편 레건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는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과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단지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한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63)

싱어(Singer, P.)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해야 한다는 동물 해방론을 주장한다.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을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과 다를 바 없다. 레건(Regan, T.)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레건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레건은 내재적 가치가 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62-63)

그러나 지학사는 코헨과 더불어 싱어, 리건의 상호 반박 내용도 서술하고 있어 논쟁적 관계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대조하는 것보다 서로 의견을 반박하는 논쟁 구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서술방식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논증의 대립은 동물권 논의를 학습공동체 안에서 쟁점화시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동물중심주의적 주장 안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동물의 지위에 대한 근거는 대립적 관계에서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추론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논쟁 중인 주제의 학습은 논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고민해보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논쟁구도로 서술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논쟁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 싱어(Singer, P. ,1946~)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감정을 지닌 존재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투표의 권리나 교육받을 권리 같은 인간의 권리를 동물에게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싱어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기초로 삼으므로 동물 실험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주 크고 의미 있다면 동물 실험을 허용할 여지를 열어 둔다. 레건(Regan,T., 1938~)은 동물이 생명의 권리와 함께 학대받지 않을 권리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레건은 육식을 위한 고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거나 실험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동물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코헨(Cohen,C.,1931~)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을 지녀야 하는데, 동물은 그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코헨은 "의학에서의 놀라운 발전과 인간에게 소중한 수많은 업적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동물 실험으로만 얻을 수 있고, 이는 실험에 참여한 동물 생명의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말하며,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의학의 발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학사, 『생활과 윤리』: 61-62)

금성 교과서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한 후 내용을 종합하면서 동물중심주의의 관점을 요약하고 있다.

> 이렇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쾌고 감수능력이다. 이들은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가 있는 동물의 범주에는 애완동물뿐 아니라 산업 동

물, 실험동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은 동물 학대나 공장식 사육, 동물 실험을 반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 실험에 반대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철학적 입장은 다양하다. 또한 각 입장에 따라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동물의 범위도 달라진다. 실제로 동물의 쾌고감수능력이나 지각능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금성, 『생활과 윤리』: 62)

그런데 요약 내용이 공리주의적 설명에 치우쳐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는 벤담과 밀과 싱어로 이어지는 공리주의적 전통에서 동물을 고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근거를 공리주의적 설명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많은 이유는 동물윤리학 분야에서 공리주의를 토대로 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논쟁을 풍부하게 하려면 교과서 서술이 싱어가 제시한 공리주의적 관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데 이성이나 언어 구사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64)

결론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동물권 옹호의 주장이 크게 싱어의 공리주의와 리건의 의무론 주장의 두 가지 범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물권 논의에서 매우 고전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더욱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접근의 동물권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고전적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의 논쟁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싱어와 리건 이

후에 새롭게 제시된 논거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각 학자들의 주장에서 중요한 논점은 '도덕적 고려를 받을 권리의 근거가 무엇인가?'로 수렴될 수 있다. 도덕적 탐구 기능과 윤리적 성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근거와 더불어 논증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자들의 주장에서 도덕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내고, 각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학자의 논증의 흐름을 살피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의 실제

도덕교과서에 제시되는 동물권 논의에서 최근의 주장과 논쟁을 제시하여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롤랜즈의 이론을 교과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롤랜즈의 이론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윤리적 직관을 확인하고 반성하며 타당한 도덕적 판단을 돕는다. 또한 평등이라는 보편적 규범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논증으로 판단의 관점을 정당화한다. 이미 정당화된 관점을 통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행동을 실천하게 한다. 이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으로 제시하는 도덕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도덕과의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롤랜즈의 이론을 학습하는 탐구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도덕에서 '공평한 입장'의 활용

도덕 교과에서는 인간중심적 자연관으로 인한 현대의 문제점을 반성하며 생태중심적 자연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 하에 비인간적 요소인 동·식물과 물리적 자연환경 모두를 보

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탈인간중심주의를 세분화하여 학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일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물실험, 윤리적 소비의 주제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주제이다. 교과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내용이 심화되고 분화되어가는 것은 적절한 배열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연관의 경우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설정하는 것인데, 단순화시켜서 인간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의 대비 혹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비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막연한 주장으로 비추어지거나, 탈인간중심주의(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는 선으로, 인간중심주의는 악으로 인식되어, 논의가 쟁점화되지 않고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로 나아가기 전에 동물중심주의의 주장이 현실적인 쟁점을 두고 논의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인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 중 동물중심주의 간의 논쟁을 담은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롤랜즈의 '공평한 입장'은 윤리학적 배경 없이도 하나의 관점 혹은 사고실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초중학교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 혹은 형식적 조작기의 초기에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에 익숙하다. 따라서 현대의 인간들이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하나인 공평한 입장에 서서 진단하는 경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공평한 입장은 탈인간중심주의를 구현한 사고 장치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은 고도의 철학적 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가야만 더 심화된 논의로 공평한 입장이라는 장치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구체화한 장치를 실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귀납적 사고 위주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력 신장에 충분한 도움을 줄 것이다.

(1) 교육과정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설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기존대로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에서 다루는 것보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동물에 대한 문제를 정의의 도덕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에 드러난 권리에 대한 인간중심적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인간만이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주는 '인권'이라는 개념 대신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권리'로 대체하고 '인간존엄성' 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권리를 논하면서 차별의 부당함을 학습하는 내용요소에 종차별을 포함시켜야 한다. 종차별 반대 주장은 양성평등과 같은 논리 구조로 전개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여 제시한다.[47] 즉, 사회문제로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약자에 동물을 포함시키고 도덕적 의사결정자의 관점이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의 하나로 공평한 입장을 제안한다. '공평한 입장'은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관점이다. 공평한 입장은 평등과 공정성을 전제로 연역된 사고장치이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표6] 초등학교 도덕 내용체계 예시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사회·공동체와의	정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지키고 권리를 존	ㅇ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익, 준법)	ㅇ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중해야 할까? (권리존중) ㅇ 공정한 사회를 위	ㅇ 공동체의식 • 관점 채택하기 • 공익에 기여하기 • 봉사하기 ㅇ도덕적 판단 능력

47)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 중 수평적 조직에 관한 통합성의 원리이다. 통합성의 원리는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교과, 단원으로 묶거나 연결하여 제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군	5-6학년군	
관계		중하며, 바람직한 통일관과 인류애를 지닌다.	ㅇ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 (공정성, 존중) ㅇ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의지, 애국심)	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ㅇ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은 무엇일까? (통일의지) ㅇ 전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존중, 인류애)	• 도덕적 가치·덕목 이해하기 •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관련 성취기준
[6도03-02]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① 공정함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관점 채택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표7] 중학교 도덕 내용체계 예시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정의	권리의 존중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 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ㅇ 권리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권리존중) ㅇ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 다양성) ㅇ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 시민 윤리) ㅇ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덕적 시민) ㅇ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 ㅇ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북한 이해) ㅇ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	ㅇ 다문화·공동체·세계시민 윤리의식 형성능력 • 다양성에 반응하기 •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 공동체의 일원되기 • 보편적 관점 채택하기 ㅇ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 •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통일윤리의식)	

관련 성취기준
[9도03-01] 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정신적 주체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① 권리를 존중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2) 탐구활동 예시

[표8] 초등학교 도덕 내용 예시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초등학교 도덕6]	
영역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내용요소	5~6학년군 ㅇ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공정성)
성취기준	[6도03-02] 공정함의 의미와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① 공정함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관점 채택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② 공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태도와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기능	ㅇ도덕적 판단 능력 •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표9] 교과서 탐구활동 예시

◎ 우리 생활 속에서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전시동물

(가) "관광 활용은 불가피…수족관, 바다처럼 꾸미겠다"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에서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남구는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에서 4~5세 암컷 큰돌고래 2마리를 2월에 들여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남구와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 매매 계약 체결, 환경부의 수입 허가 등 제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다. 돌고래 수송만 남은 단계에서 사업을 공개하면서 수입이 불가피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우선 고래관광지로 부상한 장생포의 '킬러콘텐츠'인 돌고래 수족관 운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조치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던 장생포 경제와 주민의 명운이 고래관광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돌고래 수족관이 있는 고래생태체험관이 한해 45만 명을 끌어 모으고, 그 유인 효과로 고래박물관 등 유료시설 이용객이 9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돌고래 전시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수족관 배경에 바다 풍경의 벽화를 그리고 인공 바위 등을 설치해 돌고래들이 안락함을 느끼도록 하고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축소, 돌고래 건강검진과 혈액·호흡·배설물 검사 확대, 사육사 역량 강화 등도 약속했다. 또 현재 국내 8개 기관에 40마리의 돌고래가, 세계적으로는 63개국 340여 개 시설에 약 2천100마리의 고래류가 사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두지마" "관광 자원일 뿐"…돌고래 수족관 사육 논란 격화, 2017.02.04.-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3149500057?input=1195m)

(나) 야생에서 돌고래는 하루에 100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치고, 평생을 가족과 친척으로 이루어진 무리 안에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인식할 정도로 자의식이 높고 관념적인 사고도 가능하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다른 돌고래들과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등의 습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동물인 돌고래의 삶은 포획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고래류 생태학자인 나오미 로즈 박사에 따르면 야생에서 포획되는 순간 돌고래의 폐사 가능성은 6배가 높아진다. 사람의 손에 의해 강제로 포획, 운송되고, 갑자기 좁은 수조에 갇히는 과정에서 돌고래는 급성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포획된 돌고래는 살아 있는 물고기 대신 죽은 물고기를 받아먹도록 하는 순치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영역의 몇 만분의 일도 안 되는 단조로운 콘크리트 수조 안에서는 생태적 습성에 따른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감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작은 원 모양으로 반복해서 돌거나 무기력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상행동을 보이게 된다.

돌고래는 사물을 음파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인 '소나sonar'를 통해 바다 세계를 탐지한다. 이런 돌고래에게 돌고래 쇼 장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관람객의 고함 소리는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다. 또한 돌고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수족관 물에 첨가하는 염소로 인해 돌고래의 피부가 벗겨지고 시력이 나빠진다. 수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만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돌고래는 질병에 취약할 수 밖 에 없다. 수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시달리는 돌고래에게 위장약과 항생제를 먹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생략)…

-이형주,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중 '돌고래가 야생동물에서 쇼 동물로 바뀌는 슬픈 현장', p.97-98-

쇼동물

(가) 코끼리들은 무대에 올라 테크노 음악에 맞춰 머리를 흔들고, 좁은 의자에서 물구나무를 서며, 코로 훌라후프를 돌리고, 농구를 한다. 심지어 아픈 듯한 연기를 하면 의사 복장을 한 코끼리가 달려오기까지 한다. 공연장 어디에서도 진짜 '코끼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음악에 맞춰 관광버스 춤을 추고 천원짜리 지폐를 코끼리 코에 던지면서 환호한다.

(나) 잔인하게 포획된 어린 코끼리를 사람의 명령에 따르도록 길들이는 작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도적이다. 코끼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이기 위해 훈련사들은 새끼 코끼리를 자신의 몸보다도 작은 나무 상자에 구겨 넣어서 꼬박 일주일을 쇠꼬챙이로 찌르고, 매질을 하며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는다. 이를 파잔phajaan이라고 부른다. 이 지옥과도 같은 가혹행위가 끝나면 코끼리의 눈은 초점을 잃고 어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정도로 자의식이 강한 놀라운 동물인 코끼리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같은 길을 끊임없이 걷는'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무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습성이 있지만 쇼를 하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는 시간에는 평생을 줄에 묶여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이형주,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중 '엄마 잃은 코끼리가 넘는 슬픈 재주', p.105-107-

모피동물

(가)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시절부터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털가죽을 옷으로 사용해왔다. 부족사회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로 사자같은 맹수의 털가죽을 몸에 지니면 맹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에서는 왕이 의식을 지낼 때만 표범가죽을 입을 수 있었다. …(중략)…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모피 가공이 기계화되고 가공이 쉬워지면서 모피는 이전보다 넓은 계층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860년대 북아메리카에서 모피를 얻기 위해 밍크를 사육하는 농장이 처음 등장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일부 부유층만 소비하는 사치품이라고 인식되었던 모피는 지난 200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뻣뻣한 동물의 털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저가 의류에도 사용되고 있다. 용도도 겨울용 외투 외에 의류 장식품,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 열쇠고리, 가방, 쿠션,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나) 모피 때문에 해마다 수천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중 85퍼센트는 공장식 모피 농장에서 사육되고 도살된다.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은 밍크이고 그 다음이 여우다. 그 외에도 토끼, 미국너구리라고도 불리는 라쿤, 토끼목 토끼과 동물인 친칠라, 족제빗과인 검은담비 같은 동물이 모피로 인기가 있다. 코요테, 비버, 물범, 물개, 족제비 같은 동물은 야생에서 포획된다. …(중략)…

2005년 스위스 동물보호단체인 스위스동물보호기구Swiss Animal Protection는 모피농장이 모여있는 중국 허베이 지방을 잠입조사한 영상을 공개했다. 실상은 참담했다.

일꾼들은 사후경직이 오기전에 털가죽을 벗기기 위해 동물을 바닥에 내동냉이친 후 한쪽 다리를 거꾸로 걸어놓고 털가죽을 벗긴다. 매달려 있지 않은 다른 쪽 다리는 살기 위해 공중에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고 고통에 바들바들 떤다. 머리 끝까지 가죽이 벗겨지는 순간까지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허연 벌거숭이 몸뚱이는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다. 피부가 다 벗겨진 후에도 5~10분 정도 심장이 뛰는 동물도 있었다. 껍데기가 벗겨진 라쿤이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몸을 응시하던 영상은 우리나라 SBS 〈동물농장〉에서도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이형주,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중 껍데기가 벗겨진 라쿤이 자신의 몸뚱이를 쳐다보았다', p.185-188-

〈상상하기〉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모른다. 어떤 도덕법칙을 정해야 정의로운 세상일까?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동물**이라면
동물원과 동물쇼가 있는 세상	**얻는 것**		
	잃는 것		
동물원과 동물쇼가 없는 세상	**얻는 것**		
	잃는 것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동물**이라면
동물의 털과 가죽을 옷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세상	**얻는 것**		
	잃는 것		
동물의 털과 가죽을 옷을 만드는 데 이용하지 않는 세상	**얻는 것**		
	잃는 것		

이 탐구활동에서 모피동물과 전시동물에 대한 논의를 한 이유는 다른 동물 이용 사례에 비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동물이용사례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한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은 학생들이 현재 입거나 신고 있는 의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물원이나 동물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학부모는 동물을 가까이서 보여주면서 자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원을 이용한다. 즉,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이나 동물을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하는 동물 쇼 등을 직접 소비하는 계층이 아동연령이기 때문에 전시동물 사례를 제시하였다.

활동의 초점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동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성하는데 있다.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여 윤리의 방향을 자신의 삶으로 돌린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게 한다. 여기서 '공평한 입장'을 활용하는 것은 관습적이고 직관적인 편견이 작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판단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시스템Ⅱ의 반성적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학습자들이 반성적 검토로 정당화된 판단 도구를 통해 타당한 판단을 반복연습하고, 시스템Ⅰ의 직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동물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활동은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하며, 동물이 불쌍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려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좋고 나쁨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동물을 대우하는 현재의 방식이 정당한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 활동은 이성적 존재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이 옳은지를 검토하는 과정의 학습이다. 따라서 감정에의 호소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 초점을 둔다.

동물원을 이용하고 동물을 이용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윤리적 성찰이 시작된다. 자신의 생활에서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공정한 관점을 취하여 행위의 결과를 상상해보고 도덕 원칙을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은 이 활동을 통해 도덕적 사고능력과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기능을 신장시키도록 도덕적 사고·가치 판단 중심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2) 생활과 윤리에서 '외계인의 침공' 사고 실험 활용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생활과 윤리 교과는 "동서양의 윤리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윤리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윤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과 목표로 제시한 '자신의 생활 세계에 근거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관한 인식 및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윤리문제는 적합한 주제이다. 인간은 생활 속 여러 방면에서 동물을 이용하며 살

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논쟁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의 하나로서 이를 둘러싼 윤리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실천윤리를 다루는 교과 성격상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 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강조된다. 동물에 대한 대우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적 문제로 인지하고, 동물권에 대한 다양하고 상이한 학문적 접근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확립한 후, 의식주 생활에서 윤리적 실천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 교과는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생활에서 찾아낸 문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다시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생활 중심 순환적 과정은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완전하다. 특히 동물에 대한 대우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롤랜즈의 '외계인에게 인간고기를 먹지 말아야하는 이유를 논증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구성한 논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적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생활과 윤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의무론적 입장에 더하여 계약론적 입장을 서술하는 것은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1)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설정

사회 구조와 제도의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점을 논의하는 사회와 윤리 영역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 대해 정의적 원리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권리의 침해를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윤리적 대우의 분배가 정당한지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등과 차별에 대한 정의적 논의를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도덕적 공동체의 범위에 관한 논쟁과 평등의 역사를 다루며

정의적 논의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재화 분배 논의 이전에 다루어져야 한다.

[표10] 생활과 윤리 내용체계 –사회와 윤리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사회와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정의는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속성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등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사회 정의는 크게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지는데,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되며, 교정적 정의는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2. 사회 정의와 윤리 :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엇인가? ① 평등한 도덕적 대우와 정의 ②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③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들	ㅇ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 공정한 사회 건설 방안 제안하기 • 윤리적 실천방안 제안하기

관련 성취기준
[12생윤03-01] 공정한 사회가 강조하는 평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다.

(2) 탐구활동 예시

[표11] 생활과 윤리 내용 예시 – 사회와 윤리 영역

[생활과 윤리]	
영역	사회와 윤리
내용요소	ㅇ 평등과 정의
성취기준	[12생윤03-01] 공정한 사회가 강조하는 평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ㅇ 도덕적 공동체 의식

	•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 공정한 사회 건설 방안 제안하기 • 윤리적 실천방안 제안하기

[표12] 교과서 탐구활동 예시

〈사고 실험〉 외계인의 침공

지구에 외계인이 침입하였다. 외계인들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우월한 지능과 기술은 인간을 쉽게 제압한다. 외계인들은 그들 사이에 평등의 원칙으로 서로를 대우한다. 즉, 각각의 외계인을 동일한 배려와 존경으로 대우한다. 이 원칙은 각각의 외계인들이 어떤 인지능력수준, 운동능력수준, 기술과 소질을 가지고 있던지 동등한 배려와 존경으로 대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들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 원칙이다.

외계인이 지구에 온 이유는 인간을 음식으로 먹기 위해 대량으로 인간을 기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외계인에게 인간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고기이다. (단, 그들은 인간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들은 인간을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외계인들이 제시하는 인간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외계인과 인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계인과 인간 사이에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외계인과 인간은 생물학적 종이 다르다.

: 외계인은 외계인 종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외계인 종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를 받을 가치가 없다.

(2) 외계인과 인간은 외적 모습이 다르다.

: 외계인은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외계인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덕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

(3) 외계인과 인간은 지능이 다르다.

: 외계인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외계인에 비해 훨씬 낮은 지능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를 받을 가치가 없다.

-마크 롤랜즈 『동물 권리』, p.8-30-

◎ 우리는 인간을 길러서 잡아먹는 관습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외계인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1. 외계인에게 인간을 외계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논증하려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도덕적 권리란 무엇인가?
2) 외계인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있는가?
3) 외계인 집단의 구성원들은 도덕적 권리를 갖고, 인간 집단의 구성원은 도덕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옳은가?

2. 남자와 여자를 도덕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옳은가?

1) 외계인=남자, 인간=여자로 생각해보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로 제시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차이가 도덕적으로 적절한가?
2) 남자에게 도덕적 권리를 주고, 여자에게 도덕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옳은가?

3.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옳은가?

1) 외계인=인간, 인간=동물로 생각해보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로 제시되는 기준은 타당한가?
2) 인간에게 도덕적 권리를 주고,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옳은가?
3) 1,2,와 3의 경우에 논리적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활동은 논리적인 증명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롤랜즈가 『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에서 제시한 외계인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차별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 대신 외계인으로, 동물 대신 인간으로 치환하여 논증을 전개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을 위한 논증은 동물을 위한 논증이 된다. 만약 어떤 개인을 대우하는 방식이 또 다른 개인을 대우하는 방식과 다름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려면, 두 개인 간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차이로 제시된 여러 속성들이 이 논증에 의해 기각된다. 생활과 윤리를 학습하는 학생은 이 논증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직접 편견을 기각하는 논증을 구성하면서 연역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또한 이 활동은 생활 속에서 인간이 동물을 차별대우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하여 도덕적 성찰을 유도한다. 윤리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수용했던 차별대우가 자신이 가진 편견임을 인지하게 한다. 이는 더욱더 타당성 있는 도덕관념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이 활동은 직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것을 윤리적으로 성찰하여 반성적 평형에 이르도록 하는데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 등의 타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배경이론으로 참조하고 평등에 대한 윤리원칙들을 비교하고 조정하면서 평형에 이르도록 유도한다. 이는 윤리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 통합적 사고인데 일상생활 속 문제는 교과 구분 없이 종합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나에게 돌아올 영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성하는 책임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

3) 윤리와 사상 에서 '채식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활용한 종합적 이해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윤리와 사상은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학습함으로써 도덕적인 삶과 이상 사회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들을 비교·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성찰하며, 궁극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과목이다. 목표로 “윤리적 앎을 심화하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활과 윤리에서 주제 중심으로 제시한 동물권 논쟁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심화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주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에서처럼 서양윤리사상 영역에서 각 사상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동물권 관련 논쟁을 활용할 수 있다. 각 윤리 사상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하는 이유를 서로 다르게 제시하면서 각 사상의 이론적 특징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과서 내용은 공리주의 사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공리주의적 동물윤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론과 의무론의 확장으로 롤랜즈의 계약론적 접근에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를 논의하는 근거를 비교한다면 계약론에 대한 심화적 이해와, 사회이론을 윤리이론으로 차용한 창의적 발상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는 동물권을 주제로 한 공리주의, 의무론, 계약론적 접근 까지 비교 대조하는 활동을 통해 서양 윤리 사상의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1)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설정

윤리와 사상 에서는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큰 틀에서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물관련 윤리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계약론적 윤리 역시 일정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양 윤리 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의무론, 결과론뿐만 아니라 계약론적 윤리를 비교 학습하는 내용요소를 추가하였다.

[표13] 윤리와 사상 내용체계 –서양윤리사상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서양 윤리 사상	성실 배려 정의 책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론의 입장과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결과론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옳고 그름의 기준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① 의무론과 칸트주의 ② 결과론과 공리주의 ③ 여러 가지 윤리이론의 비교	ㅇ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 서양윤리사상 이해하기 • 사상의 관점 비교·성찰하기 • 삶의 의미와 지향 설정하기 • 윤리적 실천 방안 제시하기

관련 성취기준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탐구활동 예시

[표14] 『윤리와 사상』 내용 예시 – 서양윤리사상 영역

[윤리와 사상]	
영역	서양윤리사상
내용 요소	6. 옳고 그름의 기준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① 의무론과 칸트주의 ② 결과론과 공리주의 ③ 여러 가지 윤리이론의 비교
성취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기준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ㅇ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 서양윤리사상 이해하기 • 사상의 관점 비교·성찰하기 • 윤리적 실천 방안 제시하기

[표15] 교과서 탐구활동 예시

동물을 사육하여 먹는 관습은 매우 오래되었다. 오래전 사냥의 관습에서 시작하여 포유류를 가축화하고 최근에는 동물을 대량으로 키우는 공장식 축산이 생겨났다. 공장식 축산은 낮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동물을 가두어 키우면서 동물들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윤리적 쟁점은 동물에게 잔인한 사육환경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A: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용도를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다. (아퀴나스) B: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이다. (칸트) C: 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유발한다. 동물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은 그들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한 것이 아니다.(싱어) 그렇다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기르고 죽인다면 동물을 먹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없을까? 두 번째 윤리적 쟁점은 동물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D: 소와 돼지 같은 포유류는 삶의 주체이므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

서 존중으로 대우되어야 할 권리와 해입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포유동물을 기르고 죽이고 먹는 것은 그들을 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유류를 기르고 죽이고 먹어서는 안된다. (리건)

E: 내가 인간일지 동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키운 후 덜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인간이라면 싼값에 고기를 얻지 못하지만 고기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고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동물이라면 정상적 환경에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명을 잃는 것이 영양분과 미각의 즐거움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이다.(롤랜즈)

1. A, B는 육식에 찬성하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C와 D,E의 입장이 각각 가지는 동물의 지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2. 만약 죽임이나 고통을 당하는 동물의 개체수를 최소화한다면 인간이 얻는 이익을 최대화한다면 육식은 옳은가? A~E 각 입장에서 결론을 생각해보자.

3. 나는 A~E의 의견 중 어떤 입장에 동의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이 활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 윤리이론이 제기하는 논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채식이라는 논쟁적 주제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며, 찬성과 반대의견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식을 주장하는 근거가 각 윤리 이론마다 다름을 학습한다. 각 윤리 이론은 동물 이용 사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논쟁이 많은 주제에 대해 각 이론마다 제시하는 서로 다른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과서 내용은 적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이론의 자세한 논증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활동은 윤리문제에 대한 각 이론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이론을 심화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이 어떤 이론의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비판적 성찰을 거치는 교수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교수학습활동은 학생들이 윤리이론들 간의 논쟁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고 어떤 이론이 정합적인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위해 설정하였다.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 그대로를 교실로 가지고 와서 토론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아닌, 서로 다른 윤리학적 기반을 가진 이론 간에 타당성을 판단하고 토론하는 논쟁 수업을 제안한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롤랜즈(Mark Rowlands)의 계약론적 동물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도덕교육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그의 저서『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를 중심으로 롤랜즈의 주장을 검토하였는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롤랜즈 이론의 근간이 되는 칸트식 계약론은 약자인 노인, 유아, 정신지체자와 더불어 비인간동물을 도덕적 고려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성은 합리성과 합당성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홉스는 이성을 합리성으로, 칸트는 합당성으로 해석했다. 논리적으로 합리성에 근거한 계약은 약자를 배제할 수 있으나, 합당성에 근거한 계약은 약자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

둘째,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응분의 원리를 '무지의 베일'로 구현하였는데, 응분의 원리를 적용하면 생물학적 종과 이성의 여부도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져야 한다. 칸트식 계약론에 해당하는 롤스의 이론은 계약 이전에 도덕을 수립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조건에서 계약을 한다. 정당한 조건에서 도출한 계약은 정당성이 보장된다. 롤스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계약 조건을 무지의 베일로 실현했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므로 공평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 뒤에서 원칙을 선택하는 계약은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판별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무지의 베일' 개념이 전제하는 평등은 응분이다. 응분에 따르면 우연히 소유하게 된 자질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성별과 인종을 무지의 베일 뒤에 감춘 채 도덕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롤랜즈는 '생물학적 종'이나 '이성 여부' 역시 우연히 소유하게 된 자질이므로 무지의 베일 뒤에 감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초적 입장을 수정한 '공평한 입장'을 제안했다.

셋째, 롤스 계약론의 핵심은 계약 자체 보다 계약을 공정하게 만드는 조건의 조성에 있다. 롤스의 계약론은 무지의 베일과 계약으로 이루어져있

는데, 롤랜즈는 이를 직관적 평등논변과 사회계약논변이라고 명명한다. '계약'은 사회계약논변에서 이루어지지만 계약이 합당하기 위해 직관적 평등논변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계약론 안에 두 논변이 포함된다. 롤랜즈의 논의가 계약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사회계약논변만을 계약론으로 보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롤랜즈는 계약론 안에서 도덕적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직관적 평등논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특히 사회계약논변이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계약론의 핵심을 직관적 평등논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롤랜즈의 이론이 계약론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넷째, 롤스는 인간중심적 종차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론적 정의론에서 동물을 배제했다. 롤스가 전개한 직관적 평등논변에 의거한다면, 사회계약에서 동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롤랜즈는 직관적 평등논변을 일관되게 전개한다면 무지의 베일 뒤에 종, 이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사회계약논변에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즉, 직관적 평등논변은 사회계약논변에서 동물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롤랜즈는 직관적 평등논변에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는데 주력하여 비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일관적이지 않고 종에 따라 임의적인 기준은 결국 종차별주의적 편견이 개입된 결과였다.

사실 종차별주의적 발상은 매우 오래되고 자동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덕교육의 역할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도덕교육은 자동적 사고와 편견에 따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반성적 사고를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편견 없이 타당한 판단을 도출하는 도덕적 사고의 과정이며, 자기가 가진 신념이 타당한지 끊임없이 되묻는 반성의 과정이다. 그러나 반성과 검토는 자동적 사고의 오류를 줄이지만,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행동 실행에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반성적 검토를 바탕으로 수립한 옳은 결정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이 과정에서 도덕교육의 역할을 이러하다. 먼저, 기존 신념을 시스템Ⅱ에 의해 검토하면서 학습자의 주변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 다음으로, 시스템Ⅱ에 의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을 시스템Ⅰ에 반영하여 자동화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발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Ⅰ의 직관과 시스템Ⅱ의 반성적 추론 사이에 '공평한 입장'을 교육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즉각적 판단과 행동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반성적 검토의 과정을 간소화해야하기 때문이다. 공평한 입장은 반성적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판단 도구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공평한 입장을 통한 판단은 신속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옳은 행동을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유용하다.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라는 윤리 주제는 학습자의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발견도 판단의 행동 발휘도 실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주제와 관련된 오랜 관습적 신념이 존재하여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판단에서 반성과 검토를 학습하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롤랜즈의 이론은 오랜 관습과 자동적 사고에 의한 신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도덕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싱어나 리건의 연역적 논증에 비해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귀납적 판단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어와 리건의 이론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교과에서 롤랜즈의 이론을 교육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롤랜즈의 저작

Rowlands(2002),『동물도 우리처럼: 학대받는 모든 동물을 위한 성찰』, 윤영삼 역(2018), 파주: 달팽이출판.

Rowlands(2009),『Animal Rights: Moral Theory and Practice』 (Second Edition ed.),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Rowlands(2013), 『Animal Rights: All that matters』, Hachette UK.

Rowlands(2015), 『Can animals be mo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관련 논문

1) 국내 논문

김기복(2013), “정의 (Justice) 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리쾨르 (P. Ricoeur) 의 롤즈 (J. Rawls) 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33, 97-126.

김명식(2008), “반성적 평형과 동물의 지위”, 환경철학, 7, 195-223.

김명식(2013),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환경철학, 15, 1-30.

김은하(2006),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169-193.

김은희(2017), “롤즈의 해석은 칸트 윤리학을 왜곡하는가: 롤즈의 [도덕철학사

강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18, 143-175.
김진석(2006),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가 아니면 적인가?", 문학과 환경, 5(1), 115-144.
김하연(2016), "대안적 교사교육 접근으로서 반성적 실천주의가 갖는 함의 탐색", 교육연구, 65, 197-225.
김현철(2014), "권리, 효용, 공공가치", 법학논집, 18(4), 251-267.
나종석(2003), "정언명법과 칸트 윤리학의 기본특성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62, 93-112.
노영란(2012), "응용윤리에 대한 덕윤리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 철학, 113, 349-380.
맹주만(2009), "동물의 고통과 식물의 감각", 철학탐구, 26, 245-272.
목광수(2013). "윌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173-204.
박선화(2017), "도리스 레싱의 [노파와 고양이] 에서의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동자", 현대영미소설, 24(2), 135-154.
박수환(2020), "반성적 평형에 대한 실용주의적 해석", 철학연구, 93-118.
박의섭(2008),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이타주의 윤리의 목적과 초등도적 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26, 223.
박정순(1991), "계약론적 윤리학의 딜레마", 철학과 현실, 248-265.
박종준(2017), "사회계약론의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회계약론의 자연화", 철학연구, 165-188.
변문숙(2013), "계약론적 윤리설과 동물 윤리", 철학사상, 48, 235-264.
신상규(2019),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와 관계론적 접근", 철학연구, 243-273.
유동미 모효정(2014), "동물실험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7(3), 331-348.
이관후(2015),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 동의, 정의, 토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8(2), 97-123.
이은아(2015),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6(4), 235-255.

이종은(2013), “롤스와 응분”, 한국정치연구, 22(1), 237-258.
이종은(2015),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롤스의 계약론”, 사회과학연구, 27(2), 87-112.
이충진(2011), “칸트와 헤겔: 칸트 윤리학의 옹호-나종석의 비판에 대한 반론”, 헤겔연구, 30, 11-31.
정대영(201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동물해방론 비판”,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140-170.
정상모(2009), “유전자와 도덕 사이: 이타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1, 2009, 49-81.
정창우(2019), “미래 지향적인 도덕과교육의 설계와 실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08, 1-17.
정태창(2020), “반성적 평형과 이성의 공적 사용”, 철학연구, 128, 173-199.
차홍석(2018), “이타성에 대한 이기주의 해석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2(2), 225-248.
최경석(2008), “생명의료윤리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판단력”, 법철학연구, 11(1), 65.
최병두(2005),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4), 476-496.
최훈(2010), “감응력 이론 다시 보기”, 철학탐구, 27, 119-137.
최훈(2013a), “간접적 도덕적 지위 이론 비판”, 철학연구, 102, 219-244.
최훈(2013b), “롤스, 계약론, 동물”, 환경철학, 15, 31-59.

2)해외 논문

Bernstein(1997), “Contractualism and animals”,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86*(1), 49-72.

Callicott(1980), “Animal liberation: A triangular affair”, *Environmental ethics, 2*(4), 311-338.

Carruthers(2011), “Animal mentality: Its character, extent, and moral significance”, *The Oxford handbook of animal ethics*, 373-406.

Kant(1989), “Duties in regard to animals”, In Tom Regan & Peter Singer (eds.),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s. 23-24.

Katzner(1980), “The original position and the veil of ignorance”. *John Rawls' Theory of Social Justice.* Ohio University Press. 42-70.

Russow, L. M. (1988). “Regan on inherent value”, *Between the Species,* 4(1), 12.

Schweitzer(1936), “The ethics of reverence for life”, *Christendom, 1*(2), 225-239.

Taylor(2003), “The ethics of respect for nature”, *Environmentalism: Critical Concepts, 1*(3), 61.

Vernon(1995), “Contractarianism”, in Lipset ed. , 306~308.

3. 단행본

1) 국내본

김진석(2005), 『동물의권리와복지』 건국대학교출판부.

이형주(2016), 『사향고양이의 눈물을 마시다 : 나의 선택이 세계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 책공장더불어.

최훈(2019), 『동물 윤리 대논쟁 : 동물을 둘러싼 열 가지 철학 논쟁』, 고양: 사월의책.

Beauchamp & Childress(2001),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박찬구, 최경석, 김수정, 인선호, 조선우, 추정완 역(2017),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Bentham(1789),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고정식 역(2011),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파주 : 나남.

Descartes(1637), Discours de la methode;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Principia philosophiae; Les passions de l'âme;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소두영 역(2007),『방법서설 성찰 철학의 원리 정념론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 서울 : 동서문화사.

Kahneman(2011), Thinking, Fast and Slow, 이창신 역(2018), 『생각에 관한 생각 :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파주: 김영사.

Singer(1993), Practical Ethics, 황경식, 김성동 역(1997),『실천 윤리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Singer(2009), Animal Liberation, 김성한 역(2012),『동물해방』, 서울 : 연암서가.

Singer(2011), The expanding circle : ethics, evolution, and moral progress, 김성한 역(2014),『사회생물학과 윤리』, 서울 : 연암서가.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1985), 『사회정의론』, 서울 : 서광사.

Rawls(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1998),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Rawls(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 Kelly(ed.), 김주휘 역(2016),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이학사

Vozzola(2014), Moral Development, 정창우 역(2018),『(도덕·인성교육, 상담, 사회복지, 특수교육 분야에서) 도덕 발달의 이론과 적용』, 서울 : 울력.

2) 해외본

Bernstein(1998), *On moral considerability: An essay on who morally matters*: Oxford University Press.

Carruthers(1992), *The animals issue: Moral theory in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stoyevsky(2004), *The idiot*, London New York : Penguin Books.

Hursthouse(2000), *Ethics, humans and other animals: An introduction with readings*: Routledge.

Kant(1997), *Lectures on eth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opold(1968), *A Sand County almanac: With other essays on conservation from Round River*: Outdoor Essays & Reflections.

Nussbaum(2006),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egan(2004),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 of California Press.

Ricoeur(2000), *The Just*, trans. David Pellau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Press.

Sandel & Anne(1998),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ruton(2006), *Animal rights and wrongs*: A&C Black.

Watson(1979), *Lifetide*: Sceptre.

4.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7-74호 [별책 6].

강성률, 박정수, 나윤숙, 최경미, 박기호, 이형식, 남대호, 최광철, 박소연, 김경섭, 박선미, 김경석, 허유리, 송진아(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리베르스쿨.

김국현, 강수정, 김동창, 최상권, 박보람, 안영순, 배병대, 문경호, 이상희, 이병기(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비상교육.

노영준, 고영옥, 김권환, 임춘희, 정상조, 조기식, 조성태, 조항민, 허정탁(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동아출판.

이호중, 김경혜, 김범묵, 김상기, 김은애, 김이상, 박상욱, 박승철, 박시영, 박진호, 박춘애, 손동수, 손혜정, 이광연, 이보라, 이상헌, 임덕준, 정종삼, 정창규, 황인술(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해냄에듀.

정창우, 노영란, 정희태, 박성춘, 문일호, 김성관, 김정민, 정병석, 김성태, 이수빈, 이주은, 이지연, 정나나(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미래엔.

차우규, 양정석, 황보근영, 김상희, 허은영, 이형주, 오진혁, 이지훈, 허꽃별(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금성출판사.

추병완, 이정렬, 박학래, 정탁준, 조주현, 추정완, 김신아, 박윤희, 유성주, 조성민, 박혜영(2020), 중학교 도덕②』, 서울: 지학사.

변순용, 이희평, 윤영돈, 김철순, 이승주, 김오섭, 이은규, 이대우, 전순규, 강혜원, 한보라(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천재교과서.

정창우, 홍석영, 문일호, 정선우, 김창훈, 이상일, 이수빈(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엔.

정탁준, 장동익, 조주현, 추정완, 박임희, 안번기, 노유리, 신방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지학사.

차우규, 이재헌, 이진희. 권윤호, 윤인철, 안인선(2019),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금성출판사.

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ABSTRACT

Mark Rowlands's Contractarian Approach to Animal Rights: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Ryu Kiry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upon Rowlands's contractarian approach to animal ethics, this paper aims at finding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Rowlands's arguments in *Animal Rights : Moral Theory and Practice (2009)* and analyzes contents about animals in ethics official curriculum and textbooks including *Ethics*, *Life and Ethics*, *Ethics and Thoughts.*

In his *Animal Rights : Moral Theory and Practice*, Rowlands extends and revises Rawlsian thought experiment of the veil of ignorance to make a compelling case for animals' moral rights. Specifically, Rowlands proposes the notion of the impartial position in efforts to argue that a conscious sentient beings, biologically continuous with humans, has interests that cannot be simply disregarded and that a Rawlsian theory of justice can be legitimately be applied to animals. In his view, not knowing whether a contracting party is human or an animal possibly raised by humans for food, it would be irrational and immoral to choose a world in which

humans use animals for food. Rowlands's contractarian approach to animal ethics offers some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First, it provides a rationale for why animals have direct moral status by expanding a range of moral agents. Second,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view familiar moral judgements with a critical eye. On the basis of such critical reviews, I propose some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techniques that can be utilized ethics education classes.

Student Number: 2018-24535

Key Words: Mark Rowlands, contractarianism, impartial position, animal rights, equality, Ethics Education